대한민국 여행자 세관 신고 안내
관세법과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2019-10-06 경남과학고등학교 오유신 작성

#면세한도와 구입한도(구매한도)

- 관세에 있어 면세한도란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1)2)]
-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이므로, 미국에서 구매 이후 세금까지 다 붙어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미화 600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매 당시 미국에서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던 세금을 제한 가격이 기준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이므로, 미국에서 구매 이후 세금까지 다 붙어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미화 600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매 당시 미국에서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던 세금을 제한 가격이 기준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 술, 담배, 향수의 경우 특수하게, 위의 미화 600달러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서 아래의 면세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3)4)]

품목	면세한도
술	1병(1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 유형의 전자담배는 110g 이하, 그 외의 담배는 250g 이하 -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만 면세됨
향수	60mL

-
-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경우, 술과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5)]
- 면세품의 면세한도는 국내외 물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과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국내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재반입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출국 시에 들고 갔던 물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출국 시에 들고가지 않았고 면세점에서 구매했거나, 해외에서 새로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6)7)]
- 관세에 있어 구입한도(구매한도)란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의 구매 금액의 총 한도로서,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8)]

---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문화/여가생활,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2019-10-06 방문.
http://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7&onhunqueSeq=3745&recommandType=1&pagingType=default&sortType=RETRI&targetRow=31&retrieveType=&sch=
2)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8.30., 일부개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2항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문화/여가생활.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4)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8.30., 일부개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3항
5)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8.30., 일부개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3항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문화/여가생활.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7)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8.30., 일부개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2항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문화/여가생활.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세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여행 중 구매한 물건이(면세점 포함)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과세가격) 총 미화 600달러를 넘는 경우
- 술, 담배, 향수에 관한 별도의 면세한도의 기준을 초과하여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 세관신고서에 상기의 사항이 있다고 표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세 납부의 방법

- **일반적으로 관세는 현장에서 여행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납세고지서가 세대주에게 송달됩니다.[9)10)]

#세관 신고시 혜택

- 세관 신고 대상자가 세관을 올바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감면액이 한화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관세 납부 금액의 최대 3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11)]

#세관 미신고시 벌칙

- 위의 **세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세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래 징수해야 하는 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을 제한 부족세액의 40%에 동조 제1항에 따라 부족세액의 10%와 부족세액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0.025%의 이자율을 곱한 값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12)13)]

#품목별 과세율

- 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품목별 과세율은 대한민국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14)]에 따른 품목별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행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15)]
- **간이세율의 경우, 관세율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간이세율표[16)]가 적용**됩니다.[17)] 단, 관세가 관세율표에 따라 **무세가 되는 경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8)] - 일반적인 경우는 단일세율(20%)를 적용합니다.

---

9)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10)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11)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제2항
12)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2조(가산세) 제1항 및 제2항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13) 해당 법률의 조항을 보면 이보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합니다(관련 대통령령 참고). 다만,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14) "별첨 1" 참고.
15)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16) "별첨 2" 참고
17)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1항
18)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2항

#추신

- 위의 모든 안내나 정보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하여 잘 모르시겠는 분께서는 세무서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직 부족하고 사법고시도 Pass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도움은 드릴 수 있는 오유신(stevenoh0908@gmail.com, 카카오톡 id: ous0908)로 문의해주시면 나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행자를 위한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작성에 관련한 정보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경남과학고등학교 오유신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 CC BY 4.0으로 배포합니다.

별표 1

대한민국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별표] <개정 2016. 12. 20.>

관세율표(제 50 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 1 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 3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 2 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

(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 1 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이 포함된다.

   가. 제 0301 호·제 0306 호·제 0307 호·제 0308 호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나. 제 3002 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 9508 호의 동물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0101	2	말	
0101	21	번식용	
		1. 농가 사육용	무세
		2. 기타	8
0101	29	기타	8
0101	30	당나귀	8
0101	90	기타	8
0102		살아 있는 소	
0102	2	축우(畜牛)	
0102	21	번식용	
		1. 젖소	무세
		2. 육우(肉牛)	무세

		3. 기타	무세
0102	29	기타	
		1. 젖소	20
		2. 육우(肉牛)	20
		3. 기타	무세
0102	3	버팔로	
0102	31	번식용	
		1. 젖소	무세
		2. 육우(肉牛)	무세
		3. 기타	무세
0102	39	기타	
		1. 젖소	20
		2. 육우(肉牛)	20
		3. 기타	무세
0102	90	기타	
		1. 번식용	
		가. 젖소	무세

		나. 육우(肉牛)	무세
		다. 기타	무세
		2. 기타	
		가. 젖소	20
		나. 육우(肉牛)	20
		다. 기타	무세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	10	번식용	무세
0103	9	기타	
0103	91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0103	92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	10	면양	
		1. 번식용	무세
		2. 기타	8
0104	20	산양	8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오리·거위·칠면조·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5	1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	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1. 번식용	무세
		2. 기타	9
0105	12	칠면조	9
0105	13	오리	
		1. 번식용	무세
		2. 기타	18
0105	14	거위	9
0105	15	기니아새	9
0105	9	기타	
0105	94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1. 번식용	무세
		2. 기타	9
0105	99	기타	

		1. 오리	
		가. 번식용	무세
		나. 기타	18
		2. 칠면조	9
		3. 기타	9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0106	1	포유동물	
0106	11	영장류	8
0106	1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8
0106	13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8
0106	14	토끼	
		1. 번식용	무세
		2. 기타	8
0106	19	기타	
		1. 여우	
		가. 번식용	무세

		나. 기타	8
		2. 밍크	
		가. 번식용	무세
		나. 기타	8
		3. 기타	8
0106	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8
0106	3	조류	
0106	31	맹금류	8
0106	32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0106	33	타조와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8
0106	39	기타	8
0106	4	곤충류	
0106	41	벌	8
0106	49	기타	8
0106	90	기타	8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0201 호부터 제 0208 호까지·제 0210 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나. 동물의 장·방광·위(제 0504 호), 동물의 피(제 0511 호나 제 3002 호)

다. 제 0209 호의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제 15 류)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	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30
0201	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30
0201	30	뼈 없는 것	30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30
0202	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30

0202	30	뼈 없는 것	30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1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	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0203	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5
0203	19	기타	22.5
0203	2	냉동한 것	
0203	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0203	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0203	29	기타	25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1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0204	2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0204	2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0204	23	뼈 없는 것	22.5
0204	3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0204	4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4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0204	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0204	43	뼈 없는 것	22.5
0204	50	산양의 고기	22.5
0205	00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0206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1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6	2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21	혀	18
0206	22	간	18
0206	29	기타	18
0206	3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6	4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41	간	18
0206	49	기타	18
0206	8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6	9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	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7	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0207	13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18
		2. 설육(屑肉)	
		가. 간	22.5
		나. 기타	27
0207	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20

		2. 설육(屑肉)	
		가. 간	22.5
		나. 기타	27
0207	2	칠면조의 것	
0207	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7	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7	26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18
		2. 설육(屑肉)	
		가. 간	22.5
		나. 기타	27
0207	27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18
		2. 설육(屑肉)	
		가. 간	22.5
		나. 기타	27
0207	4	오리의 것	

0207	4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7	4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7	4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0207	4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18
		2. 설육(屑肉)	
		가. 간	22.5
		나. 기타	27
0207	4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18
		2. 설육(屑肉)	
		가. 간	22.5
		나. 기타	27
0207	5	거위의 것	
0207	5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7	5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0207	5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0207	5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18
		2. 설육(屑肉)	
		가. 간	22.5
		나. 기타	27
0207	5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18
		2. 설육(屑肉)	
		가. 간	22.5
		나. 기타	27
0207	60	기니아새의 것	
		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3.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절단육	18
		나. 설육(屑肉)	
		1) 간	22.5

		2) 기타	27
		4.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절단육	18
		나. 설육(屑肉)	
		1) 간	22.5
		2) 기타	27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10	토끼의 것	22.5
0208	30	영장류의 것	18
0208	4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0208	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0208	6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18
0208	90	기타	
		1. 사슴의 것	27
		2. 기타	
		가. 해양동물의 것	30

		나. 기타	18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10	돼지의 것	3
0209	90	기타	3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0210	1	돼지고기	
0210	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0210	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0210	19	기타	25
0210	20	쇠고기	27
0210	9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	91	영장류의 것	22.5
0210	9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0210	93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0210	99	기타	22.5

제 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0106 호의 포유동물

   나. 제 0106 호의 포유동물의 육(제 0208 호나 제 0210 호)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간, 어란(魚卵) 및 어백(魚白)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 5 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펠릿(pellet)(제 2301 호)

   라.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제 1604 호)

2.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품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301		활어	

0301	1	관상용	
0301	11	민물의 것	10
0301	19	기타	10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0301	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1. 실뱀장어(한 마리당 0.3 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 그램 초과 50 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5
		3. 기타	10
0301	9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10

0301	94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0301	95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0301	99	기타	
		1. 돔	
		가.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나. 기타	10
		2. 농어	
		가.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나. 기타	10
		3. 기타	10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2	1	연어과.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	1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0302	13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20
0302	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0302	19	기타	20
0302	2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	2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20
0302	2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20
0302	23	서대[솔레아(*Solea*)종]	20
0302	24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20
0302	29	기타	20
0302	3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	

		니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	3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20
0302	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20
0302	33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20
0302	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20
0302	3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20
0302	3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20
0302	39	기타	20
0302	4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 [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 [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종], 꽁치 [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 [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	

		(*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 [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	4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0302	42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20
0302	4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20
0302	4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20
0302	45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20
0302	4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20
0302	4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0302	49	기타	20
0302	5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	5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0302	5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20
0302	5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20
0302	5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20
0302	5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0
0302	56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20
0302	59	기타	20
0302	7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	7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0
0302	7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20
0302	7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20
0302	74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20
0302	79	기타	20
0302	8	그 밖의 어류.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	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0302	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0
0302	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
0302	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20
0302	85	돔[스파리대(*Sparidae*)과]	20
0302	89	기타	20

0302	9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2	91	간·어란(魚卵)·어백(魚白)	20
0302	92	상어 지느러미	20
0302	99	기타	20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1	연어과.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10
0303	12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10
0303	13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0303	14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0303	19	기타	10
0303	2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2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0303	24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0303	25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10
0303	26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10
0303	29	기타	10

0303	3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3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10
0303	3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0
0303	33	서대[솔레아(*Solea*)종]	10
0303	34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10
0303	39	기타	10
0303	4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4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10
0303	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0
0303	43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10
0303	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0
0303	4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10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303	4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0303	49	기타	10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 [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 [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종], 꽁치 [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 [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 [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 [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0303	5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10

0303	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10
0303	55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10
0303	5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0
0303	5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0303	59	기타	10
0303	6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63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0303	64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0303	65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0303	66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10
0303	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0303	68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0
0303	69	기타	10
0303	8	그 밖의 어류.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0
0303	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10
0303	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0303	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10
0303	89	기타	10
0303	9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3	91	간·어란(魚卵)·어백(魚白)	10
0303	92	상어 지느러미	10
0303	99	기타	10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4	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	

		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	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0
0304	3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20
0304	3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20
0304	39	기타	20
0304	4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	4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0304	4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20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4	43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20
0304	44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0304	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0304	46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
0304	47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0304	48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0
0304	49	기타	20
0304	5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304	5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	20

		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304	52	연어과	20
0304	53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0304	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0304	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
0304	56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0304	57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0
0304	59	기타	20
0304	6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	

		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	6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0304	6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0304	6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10
0304	69	기타	10
0304	7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	7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0304	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0304	7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0304	7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10
0304	7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0304	79	기타	10
0304	8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	8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0304	8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0304	83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10
0304	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0304	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0304	86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0304	87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10
0304	88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10

0304	89	기타	10
0304	9	그 밖의 냉동한 것	
0304	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0304	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0304	9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10
0304	94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0304	95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10
0304	96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0
0304	97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10

0304	99	기타	10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1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0305	20	어류의 간·어란(魚卵)·어백(魚白)(건조한 것·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0305	3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	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0
0305	32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0305	39	기타	20
0305	4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	4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0305	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0305	43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0305	4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	20

		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	49	기타	20
0305	5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	5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0305	52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0
0305	53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0305	54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	20

		[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 [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 [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종], 꽁치 [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 [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 [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 [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0305	59	기타	20
0305	6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	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0305	62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0305	63	멸치[엔그로리스(*Engraulis*)종]	20
0305	6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	20

		(*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	69	기타	20
0305	7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5	71	상어 지느러미	20
0305	72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20
0305	79	기타	20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	1	냉동한 것	
0306	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20
0306	1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20

0306	14	게	20
0306	1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20
0306	16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20
0306	17	그 밖의 새우류	20
0306	1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0306	3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6	3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20
0306	3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20
0306	33	게	20
0306	34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20
0306	35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20
0306	36	그 밖의 새우류	20
0306	39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20
0306	9	기타	

0306	9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20
0306	9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20
0306	93	게	20
0306	94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20
0306	95	새우류	20
0306	99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20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1	굴	
0307	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1. 굴 치패(稚貝)	
		가. 종패용	무세
		나. 기타	5
		2. 기타	20

0307	12	냉동한 것	20
0307	19	기타	20
0307	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	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307	22	냉동한 것	20
0307	29	기타	20
0307	3	홍합[미틸루스(*Mytilus*)종·페르나(*Perna*)종]	
0307	3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307	32	냉동한 것	20
0307	39	기타	20
0307	4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	42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1. 갑오징어	
		가.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	10
		나. 기타	20

		2. 오징어	
		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10
		나. 기타	20
0307	43	냉동한 것	
		1. 갑오징어	
		가.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	10
		나. 기타	20
		2. 오징어	
		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10
		나. 기타	20
0307	49	기타	
		1.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가.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10

		나. 기타	20
		2. 훈제한 것	20
0307	5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0307	5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307	52	냉동한 것	20
0307	59	기타	20
0307	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0
0307	7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Arcticidae*)과·카르디대(*Cardiidae*)과·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리대(*Hiatellidae*)과·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마이이대(*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솔레니대(*Solenidae*)과·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베네리대(*Veneridae*)과]	
0307	7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1. 피조개	
		가. 종패용	무세
		나. 기타	20
		2. 기타	20

0307	72	냉동한 것	20
0307	79	기타	20
0307	8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과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 종]	
0307	81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0
0307	82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0
0307	83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0
0307	84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0
0307	87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0
0307	88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0
0307	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	9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1. 진주조개	
		가. 종패용	무세
		나. 기타	20
		2. 기타	20
0307	92	냉동한 것	20

0307	99	기타	20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1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로이대(*Holothurioidea*)]	
0308	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308	12	냉동한 것	20
0308	19	기타	20
0308	2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종·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0308	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308	22	냉동한 것	20
0308	29	기타	20
0308	3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20
0308	90	기타	

		1. 우렁쉥이(멍게)	
		가. 종묘(種苗)	무세
		나. 기타	20
		2. 기타	20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밀크”란 전유(全乳)나 탈지(脫脂)유[일부 탈지(脫脂)나 완전 탈지(脫脂)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제 0405 호에서

   가. “버터”란 오로지 밀크에서 얻은 천연버터, 유장(乳漿)버터, 환원 버터(신선한 것, 소금을 첨가한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 100 분의 95 이하이고, 무지 유(無脂 乳) 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인체에 무해한 유산균 배양체를 함유하기도 한다.

   나.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spreadable emulsion)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9 이상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 0406 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 100 분의 85 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4.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 표시한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제 1702 호)

나. 하나 이상의 천연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을 다른 물질(예: 올레 지방)로 대체함으로써 밀크로부터 얻어진 물품(제 1901 호 또는 제 2106 호)

다.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 3502 호)]과 글로불린(globulin)(제 3504 호)

소호주:

1. 소호 제 0404.10 호에서 “변성유장”이란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예: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2. 소호 제 0405.10 호의 “버터”는 탈수한 버터나 버터기름이 포함되지 않는다(소호 제 0405.90 호).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	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36

0401	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36
0401	4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36
0401	5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36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	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20
0402	2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	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40
0402	29	기타	40
0402	9	기타	
0402	9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40
0402	99	기타	40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	10	요구르트	36

0403	90	기타	
		1. 버터밀크	40
		2. 기타	36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유장	2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 농축 단백질	20
		2) 기타	40
		나. 기타	40
0404	90	기타	36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	10	버터	40
0405	2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8

0405	90	기타	40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	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36
0406	2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0406	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6
0406	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36
0406	90	그 밖의 치즈	36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7	1	부화용 수정란	
0407	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0407	19	기타	27
0407	2	그 밖의 신선란	
0407	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0407	29	기타	27
0407	90	기타	27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27
0408	19	기타	27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27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30
		2. 기타	27
0409	00	천연꿀	20
0410	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8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 액체 상태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는 제외한다)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 05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 0511 호에 해당하는 생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 41 류 제 43 류).

다. 동물성 방직용 섬유재료[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 11 부)

라.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제 9603 호)

2. 사람 머리카락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 0501 호에서의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해마·일각고래·산돼지의 엄니, 서각과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ivory)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의 털”이란 마속동물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제 0511 호는 특히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층상으로 하였는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501	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3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	1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3
0502	90	기타	
		1. 염소털	3
		2. 기타	3
0504	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	1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3
0505	90	기타	
		1. 깃털 가루	5
		2. 기타	5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	1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
0506	90	기타	

		1. 뼈	
		가. 소의 것	9
		나. 기타	3
		2. 뼛가루	5
		3. 기타	3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	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8
0507	90	기타	
		1. 녹용과 녹각[가루와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20
		2. 기타	8
0508	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8
0510	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동결·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보존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8

		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	10	소의 정액	무세
0511	9	기타	
0511	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1. 부화용 알	8
		2. 어류의 웨이스트(waste)	5
		3. 기타	8
0511	99	기타	
		1. 동물의 피	8
		2.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3. 수정란	
		가. 소의 것	무세
		나. 돼지의 것	무세
		다. 기타	무세
		4.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5.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층상으로 하였는지,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가. 말의 털	3
		나.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3
		6. 동물성 해면	8
		7. 기타	8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제 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주:

1. 이 류에서는 제 0601 호의 후단 외에는 통상 육묘·육종 업자나 판매업자가 재배용이나 장식용으로 공급하는 살아 있는 수목이나 상품(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 7 류의 감자·양파·쪽파·마늘이나 기타의 물품은 제외한다.

2. 제 0603 호나 제 0604 호에 열거한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나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 9701 호의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은 제외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	1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1. 백합의 것	4
		2. 기타	8
0601	2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8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	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8
0602	20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0602	3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0602	4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0602	90	기타	8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3	1	신선한 것	
0603	11	장미	25
0603	12	카네이션	25
0603	13	난	25
0603	14	국화	25
0603	15	백합[릴리움(*Lilium*)종]	25
0603	19	기타	25
0603	90	기타	25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	20	신선한 것	8
0604	90	기타	8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주:

1. 이 류에서 제 1214 호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2. 제 0709 호·제 0710 호·제 0711 호·제 0712 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
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
(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
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오리가늄 마요라나
(*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3. 제 0712 호는 제 0701 호부터 제 0711 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
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제 0713 호)

   나.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제 1105 호)

   라. 제 0713 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 1106 호)

4.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
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 0904 호).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	10	종자용	무세
0701	90	기타	30
0702	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10	양파와 쪽파	
		1. 양파	50
		2. 쪽파	27
0703	20	마늘	50
0703	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27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1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27
0704	2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0704	90	기타	27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1	상추	
0705	11	결구(結球) 상추	45
0705	19	기타	45
0705	2	치커리(chicory)	
0705	21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8
0705	29	기타	8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10	당근과 순무	
		1. 당근	30% 또 134 원/k 양자 중 고액(율
		2. 순무	27
0706	90	기타	
		1. 무	30

		2. 기타	27
0707	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0708	2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27
0708	9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27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2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7
0709	30	가지(에그플랜트)	27
0709	4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27
0709	5	버섯과 송로(松露)	
0709	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30
0709	59	기타	
		1. 송로(松露)	27
		2. 기타	30
0709	6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50

0709	70	시금치류	27
0709	9	기타	
0709	91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27
0709	92	올리브	27
0709	93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27
0709	99	기타	
		1. 고사리	30
		2. 기타	27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10	감자	27
0710	2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	21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0710	22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27
0710	29	기타	27
0710	30	시금치류	27
0710	40	스위트콘	30
0710	80	그 밖의 채소	

		1. 고사리	30
		2. 기타	27
0710	90	채소류의 혼합물	27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	20	올리브	27
0711	40	오이류	30
0711	5	버섯과 송로(松露)	
0711	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30
0711	59	기타	
		1. 송로(松露)	27
		2. 기타	30
0711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1. 그 밖의 채소	
		가.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30
		나. 죽순과 고비	27

		다. 기타	27
		2. 채소류의 혼합물	27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20	양파	50
0712	3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송로(松露)	
0712	3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1. 양송이버섯	30
		2. 기타	30% 또는 1,218 원/ kg 양자 중 고액(율)
0712	32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30% 또는 1,218 원/ kg 양자 중 고액(율)
0712	33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30% 또는 1,218 원/ kg 양자 중 고액(율)

0712	39	기타	
		1. 버섯	
		가. 송이버섯	30
		나. 표고버섯	30% 또는 1,625 원/ kg 양자 중 고액(율)
		다. 영지버섯	30% 또는 842 원/k 양자 중 고액(율)
		라. 느타리버섯	30
		마. 팽이버섯	30
		바. 기타	30% 또는 1,218 원/ kg 양자 중 고액(율)
		2. 송로(松露)	27
0712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1. 그 밖의 채소	
		가. 마늘	50
		나. 고사리	30% 또는 1,807 원/ kg 양자 중 고액(율)
		다. 파	30% 또는 1,159 원/ kg 양자 중 고액(율)
		라. 당근	30% 또는 864 원/k 양자 중 고액(율)
		마. 무, 호박, 양배추, 토란줄기, 고구마줄기, 더덕	30
		바. 스위트콘	30
		사. 감자	27
		아. 고비	30% 또는 1,446 원/ kg 양자 중 고액(율)

		자. 기타	30
		2. 채소류의 혼합물	27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	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1. 사료용	무세
		2. 기타	27
0713	2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27
0713	3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713	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30
0713	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30
0713	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27
0713	34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27
0713	35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27
0713	39	기타	27

0713	40	렌즈콩	27
0713	5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27
0713	6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27
0713	90	기타	27
0714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1. 신선한 것	20
		2. 건조한 것	
		가. 칩(chip)	20
		나. 펠릿(pellet)	7
		다. 기타	20
		3. 냉장한 것	20
		4. 냉동한 것	45
0714	20	고구마	

		1. 신선한 것	20
		2. 건조한 것	20
		3. 냉장한 것	20
		4. 냉동한 것	45
0714	30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1. 냉동한 것	45
		2. 기타	20
0714	40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1. 냉동한 것	45
		2. 기타	20
0714	50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1. 냉동한 것	45
		2. 기타	20
0714	90	기타	
		1. 칡 뿌리	
		가. 냉동한 것	45
		나. 기타	18

		2. 기타	
		가. 냉동한 것	45
		나. 기타	20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1	1	코코넛	
0801	11	말린 것	30
0801	12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30
0801	19	기타	30
0801	2	브라질너트	
0801	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0801	22	껍데기를 벗긴 것	30
0801	3	캐슈너트(cashew nut)	
0801	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0801	32	껍데기를 벗긴 것	8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1	아몬드	
0802	1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0802	12	껍데기를 벗긴 것	8
0802	2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종]	

0802	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0802	22	껍데기를 벗긴 것	8
0802	3	호두	
0802	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5
0802	32	껍데기를 벗긴 것	30
0802	4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0802	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0
0802	42	껍데기를 벗긴 것	50
0802	5	피스타치오(pistachio)	
0802	5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0802	52	껍데기를 벗긴 것	30
0802	6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0802	6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0802	62	껍데기를 벗긴 것	30
0802	7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30
0802	80	빈랑자(areca nut)	30
0802	90	기타	30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10	플랜틴(plantain)	30
0803	90	기타	30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10	대추야자	30
0804	20	무화과	30
0804	30	파인애플	30
0804	40	아보카도(avocado)	30
0804	50	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	30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10	오렌지	50
0805	2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	21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50
0805	22	클레멘타인(clementine)	50

0805	29	기타	50
0805	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30
0805	5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30
		2.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가.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30
		나.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50
0805	90	기타	50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10	신선한 것	45
0806	20	건조한 것	21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1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	11	수박	45
0807	19	기타	45
0807	20	포포(papaw)[파파야(papaya)]	30
0808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10	사과	45
0808	30	배	45
0808	40	마르멜로(quince)	45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10	살구	45
0809	2	체리	
0809	21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24
0809	29	기타	24
0809	3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5
0809	40	자두와 슬로(sloe)	45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10	초본류 딸기	45
0810	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45

0810	3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45
0810	4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45
0810	50	키위프루트(kiwifruit)	45
0810	60	두리안(durian)	45
0810	70	감	
		1. 단감	45
		2. 기타	50
0810	90	기타	
		1. 대추와 매실	50
		2. 기타	45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	10	초본류 딸기	30
0811	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30
0811	90	기타	30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	

		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	10	체리	30
0812	90	기타	30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	10	살구	45
0813	20	프룬(prune)	18
0813	30	사과	45
0813	40	그 밖의 과실	
		1. 감과 대추	50
		2. 기타	45
0813	5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0814	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제 9 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주:

1. 제 0904 호부터 제 0910 호까지의 물품의 혼합물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다른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제 0910 호로 분류한다.

   제 0904 호부터 제 0910 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 2103 호로 분류한다.

2. 이 류에서 제 1211 호의 쿠베브 페퍼(Cubeb pepper)[파이퍼 쿠베바(Piper cubeba)]와 기타의 물품은 제외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0901	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0901	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
0901	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0901	90	기타	
		1.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2.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8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	1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0902	2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0902	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0902	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40
0903	00	마테(mate)	25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	1	후추	
0904	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904	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04	2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	21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0
0904	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0
0905		바닐라	
0905	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905	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	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	11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8
0906	19	기타	8
0906	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07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0907	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907	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소두구(小荳蔻)	

0908	1	육두구(肉荳蔻)	
0908	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908	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08	2	메이스(mace)	
0908	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908	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08	3	소두구(小荳蔻)	
0908	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908	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iander)·커민(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	2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0909	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909	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09	3	커민(cumin)의 씨	
0909	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909	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09	6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캐러웨이(caraway)·회향(茴香)	

		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	6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0909	6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0910	1	생강	
0910	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0
0910	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0
0910	20	사프란(saffron)	8
0910	30	심황[강황(薑黃)]	8
0910	9	그 밖의 향신료	
0910	91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910	99	기타	8

제 10 류

곡물

주:

1.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 1006 호로 분류한다.

2. 제 1005 호에서는 스위트콘은 제외한다(제 7 류).

소호주:

1. “듀럼종 밀(durum wheat)”이란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
종간교잡(種間交雜)에 의하여 생긴 잡종 중에서 염색체수가 트리티컴 듀럼(*Triticu*
durum)종과 같은 것(28)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1	1	듀럼종 밀(Durum wheat)	
1001	11	종자	3
1001	19	기타	3
1001	9	기타	
1001	91	종자	
		1. 메슬린(meslin)	3
		2. 기타	1.8

1001	99	기타	
		1. 사료용	
		가. 메슬린(meslin)	3
		나. 기타	무세
		2. 제분용	
		가. 메슬린(meslin)	3
		나. 기타	1.8
		3. 기타	
		가. 메슬린(meslin)	3
		나. 기타	1.8
1002		호밀	
1002	10	종자	3
1002	90	기타	3
1003		보리	
1003	10	종자	
		1. 맥주보리	30
		2. 겉보리	5
		3. 쌀보리	5

		4. 기타	5
1003	90	기타	
		1. 맥주보리	30
		2. 겉보리	5
		3. 쌀보리	5
		4. 기타	5
1004		귀리	
1004	10	종자	3
1004	90	기타	3
1005		옥수수	
1005	10	종자용	무세
1005	90	기타	
		1. 사료용	3
		2. 팝콘	3
		3. 기타	3
1006		쌀	
1006	10	벼	5

1006	20	현미	
		1. 메현미	5
		2. 찰현미	5
1006	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1. 멥쌀	5
		2. 찹쌀	5
1006	40	쇄미(broken rice)	5
1007		수수	
1007	10	종자	3
1007	90	기타	3
1008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008	10	메밀	3
1008	2	밀리트(millet)	
1008	21	종자	
		1. 조	3
		2. 기타	3
1008	29	기타	

		1. 조	3
		2. 기타	3
1008	30	카나리시드(canary seed)	3
1008	4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3
1008	5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3
1008	60	라이밀(triticale)	3
1008	90	그 밖의 곡물	3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 0901 호·제 2101 호)

나. 제 1901 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다. 제 1904 호의 콘플레이크와 그 밖의 물품

라. 제 2001 호, 제 2004 호, 제 2005 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마. 의료용품(제 30 류)

바.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 33 류)

2. 가. 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 2302 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조게 부순 것은 항상 제 1104 호로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이나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 1101 호나 제 1102 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 1103 호나 제 1104 호로 분류한다.

곡물명 (1)	전 분 함유량 (2)	회 분 함유량 (3)	체를 통과하는 비율	
			315 마이크론(4)	500 마이크론(5)
밀과 호밀	45%	2.5%	80%	-
보리	45%	3%	80%	-
귀리	45%	5%	80%	-
옥수수와 수수	45%	2%	-	90%
쌀	45%	1.6%	80%	-
메밀	45%	4%	80%	-

3. 제 1103 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는 2 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 분의 95 이상인 것

나. 그 밖의 곡물은 1.25 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 분의 9
이상인 것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101	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 밀가루	3
		2. 메슬린(meslin) 가루	5
1102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	20	옥수수가루	5
1102	90	기타	
		1. 보릿가루	5
		2. 쌀가루	5
		3. 호밀가루	5
		4. 기타	5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1103	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	11	밀로 만든 것	5

1103	13	옥수수로 만든 것	5
1103	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1. 보리로 만든 것	5
		2. 귀리로 만든 것	5
		3. 쌀로 만든 것	5
		4. 기타	5
1103	20	펠릿(pellet)	
		1. 밀로 만든 것	5
		2. 쌀로 만든 것	5
		3. 보리로 만든 것	5
		4. 기타	5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4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	12	귀리로 만든 것	5
1104	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1. 쌀로 만든 것	5

		2. 보리로 만든 것	5
		3. 기타	5
1104	2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1104	22	귀리로 만든 것	5
1104	23	옥수수로 만든 것	5
1104	2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1. 율무로 만든 것	5
		2. 보리로 만든 것	5
		3. 기타	5
1104	3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5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105	1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8
1105	2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8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1106	1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1106	20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1106	30	제 8 류 물품의 것	8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	10	볶지 않은 것	30
1107	20	볶은 것	
		1. 훈연(熏煙)한 것	30
		2. 기타	27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1	밀로 만든 것	8
1108	12	옥수수로 만든 것	8
1108	13	감자로 만든 것	8
1108	14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8
1108	19	그 밖의 전분	8
1108	20	이눌린(inulin)	8
1109	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1. 제 1207 호에는 특히 팜너트(palm nut)와 핵(核)·목화씨·피마자·참깨·겨자씨·잇꽃씨·양귀비씨·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가 포함된다. 제 0801 호나 제 0802 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제 7 류나 제 20 류)는 제외한다.

2. 제 1208 호에는 탈지(脫脂)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이나 탈지한 것의 전체나 일부분에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 다만, 제 2304 호부터 제 2306 호까지의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제 1209 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vetches)의 종자[비시아 파바(*Vicia faba*)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제 1209 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채두류(菜豆類)와 스위트콘(제 7 류)

   나. 제 9 류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다. 곡물(제 10 류)

   라. 제 1201 호부터 제 1207 호까지나 제 1211 호의 물품

4. 제 1211 호에는 바질(basil)·보리지(borage)·인삼·히솝(hyssop)·감초·민트류·로즈마리·루우(rue)·세이지(sage)·쓴쑥(wormwood)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 1211 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30 류의 의약품

   나. 제 33 류의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

다. 제 3808 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5. 제 1212 호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2102 호의 죽은 단세포미생물

나. 제 3002 호의 미생물배양체

다. 제 3101 호나 제 3105 호의 비료

소호주:

1. 소호 제 1205.10 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미만의 비휘발성 기름과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 함유량이 그램당 30 마이크로몰 미만인 고형(固形)성분을 만들어 내는 유채(rape, colza)씨를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10	종자	
		1. 콩나물용	3
		2. 기타	3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3

		2. 사료용	3
		3. 콩나물용	3
		4. 기타	3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30	종자	40
1202	4	기타	
1202	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0
1202	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40
1203	00	코프라(copra)	3
1204	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	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1.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무세
		2. 기타	10
1205	90	기타	
		1.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무세
		2. 기타	10

1206	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5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1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3
1207	2	목화씨	
1207	21	종자	3
1207	29	기타	
		1. 사료용	2
		2. 기타	3
1207	30	피마자	3
1207	40	참깨	40
1207	50	겨자씨	3
1207	6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3
1207	70	멜론 종자	3
1207	9	기타	
1207	91	양귀비씨	3
1207	99	기타	

		1. 들깨	40% 또는 410 원/k 양자 중 고액(율
		2.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3
		3. 기타	3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	10	대두로 만든 것	3
1208	90	기타	3
1209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	
1209	10	사탕무 종자	무세
1209	2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	21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무세
1209	22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무세
1209	23	페스큐(fescue) 종자	무세
1209	24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무세
1209	25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무세

1209	29	기타	
		1. 루핀(lupine) 종자	무세
		2.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무세
		3.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무세
		4.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무세
		5. 기타	무세
1209	3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무세
1209	9	기타	
1209	91	채소 종자	
		1. 파속 채소의 종자	
		가. 양파 종자	무세
		나. 기타	무세
		2. 무 종자	무세
		3. 기타	무세
1209	99	기타	
		1. 삼림수의 종자	
		가. 참나무	무세

		나. 기타	무세
		2. 과수목의 종자	무세
		3. 담배 종자	무세
		4. 잔디 종자	무세
		5. 기타	무세
1210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210	1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30
1210	2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30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	20	인삼	
		1.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20
		2 .인삼 가루(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가. 백삼으로 만든 것	18
		나. 홍삼으로 만든 것	20

		3. 인삼잎과 줄기·종자(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20
		4. 기타	
		가.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20
		나. 기타	45
1211	30	코카잎	
		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2. 기타	3
1211	40	양귀비줄기	
		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2. 기타	3
1211	50	마황(麻黃)	
		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2. 기타	3
1211	90	기타	
		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2. 기타	
		가. 식용에 적합한 것	45

		나. 기타	3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2	2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	21	식용	
		1. 냉동한 것	
		가. 김	10
		나. 기타	50
		2. 기타	20
1212	29	기타	
		1. 냉동한 것	
		가. 김	10
		나. 기타	50
		2. 기타	20
1212	9	기타	

1212	91	사탕무	3
1212	92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20
1212	93	사탕수수	3
1212	94	치커리(chicory) 뿌리	8
1212	99	기타	
		1. 구약구(kuyaku) 뿌리	8
		2. 꽃가루	8
		3. 살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의 핵(核)	8
		4. 기타	8
1213	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
1214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1. 사료용	1
		2. 기타	10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20
		2. 기타	
		가.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1) 사료용	1
		2) 기타	18
		나. 기타	20

제 13 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주:

1. 제 1302 호에는 감초 추출물(extract)·제충국 추출물(extract)·홉(hop) 추출물(extract)
알로에 추출물(extract)과 아편이 포함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감초 추출물(extract)로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
는 것이나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 1704 호)

나. 맥아 추출물(extract)(제 1901 호)

다.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제 2101 호)

라.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extract)로서 알코올음료에 사용되는 것(제 22 류)

마. 제 2914 호나 제 2938 호의 장뇌·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 기타의 물품

바.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줄기 농축물(제 2939 호)

사. 제 3003 호·제 3004 호의 의약품과 제 3006 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아. 유연용 추출물(extract)과 염색용 추출물(extract)(제 3201 호·제 3203 호)

자. 정유(essential oil), 콘크리트, 앱설루트(absolute),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또는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제 33 류)

차.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제 4001 호)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	20	아라비아 검	3
1301	90	기타	
		1. 올레오레진(oleoresin)	3
		2. 락(lac)	
		가. 쉘락(shellac)	3

		나. 기타	3
		3. 기타	3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	1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	11	아편	8
1302	12	감초로 만든 것	8
1302	13	홉(hop)으로 만든 것	30
1302	14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8
1302	19	기타	
		1. 인삼의 수액과 추출물(extract)	20
		2.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	8
		3. 생칠(生漆)	8
		4. 기타	8
1302	2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8
1302	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	31	한천	8

1302	32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8
1302	39	기타	8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제 11 부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와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방직용 섬유재료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그 밖의 식물성 재료는 제외한다.

2. 제 1401 호에는 대나무(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연마하거나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쪼개 버드나무 가지(osier)·갈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나무의 심(core), 등나무를 뽑아서 늘리거나 쪼갠 것이 포함되며, 칩우드(chipwood)는 제외한다(제 4404 호).

3. 제 1404 호에는 목모(木毛)(제 4405 호)·비·브러시 제조용으로 묶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제외한다(제 9603 호).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	

		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	10	대나무	8
1401	20	등나무	8
1401	90	기타	8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	20	면(綿) 린터(linter)	3
1404	90	기타	
		1. 조각용 종자·껍질·너트(예: 상아야자)	3
		2. 나무껍질	
		가.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3
		나. 기타	3
		3.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잎	
		가. 떡갈잎	5
		나. 청미래덩굴잎	5
		다. 기타	5
		4.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식물성 헤어·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3

		5.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 그라스(couch-grass)·이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3
		6. 염색용·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	
		가. 오배자(五倍子)	3
		나. 아몬드 헐(almond hull)	3
		다. 기타	3
		7. 기타	3

제 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 15 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0209 호의 돼지나 가금(家禽)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제 1804 호)

다. 제 0405 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통상 제 21 류)

라. 수지박(粕)(제 2301 호)이나 제 2304 호부터 제 2306 호까지의 박(粕)류

마. 지방산·조제 납(蠟)·의약품·페인트·바니시(varnish)·비누·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황산화유나 그 밖의 제 6 부의 물품

바.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 4002 호)

2. 제 1509 호에서는 용제로 올리브에서 추출하여 얻은 기름은 제외한다(제 1510 호).

3. 제 1518 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지방이나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은 제외하며, 이들은 변성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4. 소프 스톡(soap-stock)·기름의 잔재·스테아린피치(stearin pitch)·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울그리스(wool grease) 잔유물은 제 1522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1514.11 호와 제 1514.19 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또는 colza oil)"란 에루크산(eruc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 기름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	10	라드(lard)	
		1.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2. 기타	3
1501	2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3
1501	90	기타	3
1502		소·면양·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10	탤로우(tallow)	
		1. 소의 것	
		가.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나. 기타	2
		2. 기타	3
1502	90	기타	
		1. 소의 것	2
		2. 기타	3
1503	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 라드유(lard oil)	3
		2. 기타	3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	10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1.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3
		2. 기타	3
1504	2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3
1504	3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1.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3
		2. 기타	3
1505	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1.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3
		2. 기타	3
1506	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3

		2. 기타	3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1507	90	기타	
		1. 정제유(精製油)	5
		2. 기타	5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	10	조유(粗油)	27
1508	90	기타	27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	10	버진(virgin)	5
1509	90	기타	5
1510	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5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	10	조유(粗油)	3

1511	90	기타	
		1. 팜 올레인(palm olein)	2
		2.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2
		3. 기타	2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1	조유(粗油)	
		1. 해바라기씨유	5
		2. 잇꽃유	5
1512	1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	5
		나. 잇꽃유	5
		2. 기타	
		가. 해바라기씨유	5
		나. 잇꽃유	5
1512	2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	21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1512	2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5
		2. 기타	5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	1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	11	조유(粗油)	3
1513	1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3
		2. 기타	3
1513	2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	21	조유(粗油)	8
1513	29	기타	8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	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	11	조유(粗油)	5
1514	19	기타	5
1514	9	기타	
1514	91	조유(粗油)	
		1.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2. 겨자유	5
1514	9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나. 겨자유	5
		2. 기타	5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1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	11	조유(粗油)	5
1515	19	기타	5
1515	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	21	조유(粗油)	5

1515	29	기타	5
1515	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
1515	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40
1515	90	기타	
		1.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2. 기타	
		가.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5
		나.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다.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8
		라.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8
		마. 기타	5
1516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	1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8
1516	2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 땅콩기름·해바라기씨유·유채유(rape oil, colza oil)·들기	36

		름·참기름의 것	
		2. 기타	8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	1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8
1517	90	기타	8
1518	00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 탈수피마자유	8
		2.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8
		3. 기타	
		가. 사료용	5
		나. 기타	8
1520	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8
1521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	

		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	10	식물성 납(蠟)	8
1521	90	기타	8
1522	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8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주:

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제 2 류·제 3 류나 제 0504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을 초

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 16 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 1902 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 2103 호나 제 2104 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호주:

1. 소호 제 1602.10 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 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 1602 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제 1604 호나 제 1605 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 3 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601	00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 소시지	18
		2. 기타	30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2	10	균질화한 조제품	30
1602	2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30
1602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 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	31	칠면조로 만든 것	30
1602	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30
1602	39	기타	30
1602	4	돼지로 만든 것	
1602	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2. 기타	27
1602	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1.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2. 기타	27
1602	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2. 기타	27

1602	50	소로 만든 것	30
1602	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30
1603	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30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	1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	11	연어	20
1604	12	청어	20
1604	13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20
1604	14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20
1604	15	고등어	20
1604	16	멸치	20
1604	17	뱀장어	20
1604	18	상어 지느러미	20
1604	19	기타	20
1604	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0

1604	3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	31	캐비아	20
1604	32	캐비아 대용물	20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	10	게	20
1605	2	새우류	
1605	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1605	29	기타	20
1605	30	바닷가재	20
1605	40	그 밖의 갑각류	20
1605	5	연체동물	
1605	51	굴	20
1605	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0
1605	53	홍합	20
1605	54	갑오징어와 오징어	20
1605	55	문어	20
1605	56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20

1605	57	전복	20
1605	58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0
1605	59	기타	20
1605	6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	61	해삼	20
1605	62	성게	20
1605	63	해파리	20
1605	69	기타	20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 1806 호)

   나. 제 2940 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糖類)[자당(蔗糖)·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
   과당은 제외한다]와 기타 물품

   다. 제 30 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소호주:

1. 소호 제 1701.12 호, 제 1701.13 호, 제 1701.14 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 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2. 소호 제 1701.13 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 도 이상 93 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정형인 천연 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미세결정들은 당밀(糖蜜)과 그 밖의 사탕수수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국내주:

1. 제 1701 호에서 당(糖)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1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	12	사탕무당	
		1.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3
		2.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1701	13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

1701	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3
		2.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
1701	99	기타	30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	1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	11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20
1702	19	기타	20
1702	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8
1702	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702	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8

1702	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1702	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8
1702	9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1. 인조꿀	20
		2. 캐러멜당	8
		3. 맥아당	8
		4. 기타	8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	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3
1703	90	기타	3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	1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1704	90	기타	8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제 0403 호·제 1901 호·제 1904 호·제 1905 호·제 2105 호
제 2202 호·제 2208 호·제 3003 호·제 3004 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2. 제 1806 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 1 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801	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볶지 않은 것	2
		2. 볶은 것	8
1802	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8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	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5
1803	2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5
1804	00	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	5
1805	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	1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806	20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806	3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	3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8
1806	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8
1806	90	기타	
		1.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 분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영유아·어린이용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가) 조제 분유	36
		나) 기타	40
		2) 기타	8
		나. 제 1905 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8
		다. 기타	
		1)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30
		2)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36
		3) 기타	8
		3.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 모양인 곡물의 것(옥수수는 제외한다)	
		가.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5.4
		나. 기타	8
		4. 기타	8

제 19 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1902 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제 16 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그 밖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조제 사료(제 2309 호

   다. 제 30 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2. 제 1901 호에서

   가. "부순 알곡"이란 제 11 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한다.
   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 11 류의 곡물의 고운가루·곡물의 거친 가루와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 0712 호의 건조한 채소, 제 1105 호의 감자, 제 1106 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제 1904 호에는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 1806 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제외한다(제 1806 호).

4. 제 1904 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 10 류와 제 11 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	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가. 조제 분유	36
		나. 기타	40
		2. 기타	8
1901	2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8
1901	90	기타	
		1. 맥아 추출물(extract)	30
		2.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36

		3. 기타	8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	1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11	새의 알을 넣은 것	5
1902	19	기타	
		1. 국수	5
		2. 당면	8
		3. 냉면	5
		4. 기타	5
1902	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902	30	그 밖의 파스타	5
1902	40	쿠스쿠스(couscous)	5
1903	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난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8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	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5.4
1904	2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1.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45
		2. 기타	5.4
1904	30	불거 밀(bulgur wheat)	8
1904	90	기타	8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	10	귀리빵	8
1905	2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1905	3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1905	31	스위트 비스킷	8

1905	32	와플과 웨이퍼	8
1905	4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8
1905	90	기타	
		1. 베이커리 제품	
		가. 비스킷, 쿠키, 크래커	5
		나. 기타	8
		2. 기타	8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7 류·제 8 류·제 11 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
견과류

나.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 16 류

다. 베이커리 제품과 그 밖의 제 1905 호의 제품

라. 제 2104 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 제 2007 호와 제 2008 호에서는 설탕과자(제 1704 호)나 초콜릿과자(제 1806 호) 모양의 과실젤리·과실 페이스트(paste)·설탕을 입힌 아몬드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3. 제 2001 호·제 2004 호·제 2005 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 7 류나 제 1105 호·제 1106 호(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 1 호가 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

4.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 이상인 것은 제 2002 호로 분류한다.

5. 제 2007 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6. 제 2009 호에서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주스"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주스를 말한다(제 22 류의 주 제 2 호 참조).

소호주:

1. 소호 제 2005.10 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 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 2005 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소호 제 2007.10 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 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과실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 2007 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3. 소호 제 2009.12 호, 제 2009.21 호, 제 2009.31 호, 제 2009.41 호, 제 2009.61 호, 제 2009.71

호에서 “브릭스(Brix) 값” 이란 브릭스(Brix)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糖)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 도나 섭씨 20 도가 아니라면 섭씨 20 도로 보정(補正)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국내주: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 2008 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	10	오이류	30
2001	90	기타	30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	1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8
2002	90	기타	
		1.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 분의 24 이	5

		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8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	1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20
2003	90	기타	20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	10	감자	18
2004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30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10	균질화한 채소	20
2005	20	감자	20
2005	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2005	5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2005	51	껍데기를 벗긴 콩	20
2005	59	기타	20
2005	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2005	70	올리브	20

2005	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2005	9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	91	죽순	20
2005	99	기타	20
2006	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1. 마롱 글라세(marrons glace), 파인애플, 생강, 연 뿌리	30
		2.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올리브, 죽순	20
		3.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4. 기타	
		가. 그 밖의 채소	20
		나. 기타	30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	10	균질화한 조제품	30

2007	9	기타	
2007	91	감귤류의 과실	30
2007	99	기타	30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1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	11	땅콩	50
2008	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 밤	50
		2. 기타	45
2008	20	파인애플	45
2008	30	감귤류 과실	45
2008	40	배	45
2008	50	살구	45
2008	60	체리	45
2008	7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1.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2. 기타	45
2008	80	초본류 딸기	45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1	팜 하트(palm heart)	45
2008	93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45
2008	97	혼합물	
		1. 과실 칵테일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나. 기타	45
		2. 기타	45
2008	99	기타	45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1	오렌지주스	
2009	11	냉동한 것	50

2009	1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2009	19	기타	50
2009	2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	2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30
2009	29	기타	30
2009	3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	3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2009	39	기타	50
2009	4	파인애플주스	
2009	4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2009	49	기타	50
2009	50	토마토주스	30
2009	6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	61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2009	69	기타	45
2009	7	사과주스	
2009	7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2009	79	기타	45
2009	8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9	8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50
2009	89	기타	
		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이외의 과실주스	50
		2. 채소 주스	30
2009	90	혼합 주스	
		1. 채소로 만든 것	30
		2. 기타	50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0712 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제 0901 호)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 0902 호)

라. 제 0904 호부터 제 0910 호까지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마. 제 2103 호나 제 2104 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
(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
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제 16 류)

바. 제 3003 호나 제 3004 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사. 제 3507 호의 조제한 효소

2. 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에 열거한 볶은 커피 대용물의 추출물(extract)은 제 2101 호로
분류한다.

3. 제 2104 호에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 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
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101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	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8
2101	12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2101	20	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0
2101	30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8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	10	활성 효모	8
2102	20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8
2102	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	10	간장	8

2103	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8
2103	3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8
2103	90	기타	8
2104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	10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1. 어류로 만든 것	30
		2. 기타	18
2104	2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30
2105	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8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	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8
2106	90	기타	
		1.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8
		2.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 인삼제품류	8
		4. 조제한 식용 해초류	8

		5. 기타	
		가. 커피크리머	8
		나.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다.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라.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8
		마. 향미(香味)용 조제품	8
		바. 도토리 가루	8
		사.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아.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자. 기타	8

제 22 류

음료·주류·식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 2209 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

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 2103 호)

나. 바닷물(제 2501 호)

다. 증류수·전도수(傳導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 2853 호)

라.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으로 한정한다)(제 2915 호)

마. 제 3003 호와 제 3004 호의 의약품

바. 조제향료나 화장용품(제 33 류)

2. 제 20 류·제 21 류·제 22 류에서 "알코올의 용량"이란 섭씨 20 도에서의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3. 제 2202 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 2203 호부터 제 2206 호까지나 제 2208 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2204.10 호에서 "발포성(發泡性) 포도주"란 밀폐용기에서 섭씨 20 도가 유지되었을 때의 압력이 3 바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	10	광천수와 탄산수	8
2201	90	기타	8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	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8
2202	9	기타	
2202	91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8
2202	99	기타	8
2203	00	맥주	30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	1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30
2204	2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	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30
2204	22	2 리터 초과 10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30
2204	29	기타	30
2204	30	그 밖의 포도즙	30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	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30
2205	90	기타	30
2206	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30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10
		2. 기타	30
2207	2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8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	2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30
2208	30	위스키류	30
2208	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30
2208	50	진(gin)과 제네바(geneva)	30

2208	60	보드카	30
2208	7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30
2208	90	기타	30
2209	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8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주:

1. 제 2309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
제외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2306.41 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제 12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301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1	1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1.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5
		2. 수지박	5
2301	2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1.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5
		2. 기타	5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	10	옥수수에서 나온 것	5
2302	30	밀에서 나온 것	2
2302	40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1. 쌀에서 나온 것	5
		2. 기타	5
2302	5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	

		(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무세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2303	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1. 사료용	2
		2. 기타	5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8
2305	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2306	20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2306	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2306	4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	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무세

2306	49	기타	무세
2306	5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2306	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2306	90	기타	
		1. 참깨에서 나온 것	5
		2. 들깨에서 나온 것	5
		3.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5
		4. 기타	5
2307	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5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도토리	5
		2. 마로니에 열매	5
		3. 목화씨 껍질	5
		4. 기타	5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

2309	90	기타	
		1. 배합사료	
		가. 양돈용	4.2
		나. 양계용	4.2
		다. 어류용	5
		라. 축우용	4.2
		마. 기타	
		1) 대용유(代用乳)	5
		2) 기타	5
		2. 보조사료	5
		3. 사료 첨가제	
		가.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나.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다.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5
		라. 기타	5
		4. 기타	5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주:

1. 이 류에서 의약용 궐련은 제외한다(제 30 류).

소호주:

1. 소호 제 2403.11 호에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란 워터파이프(water pipe)로 흡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담배(담배와 글리세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를 말하며 방향성(芳香性) 기름·추출물(extract)과 당밀(糖蜜)이나 당(糖)을 함유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향을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를 통하여 흡연하기 위한 물품으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것은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	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401	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2401	30	담배 부산물	20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	10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2402	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2402	90	기타	40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2403	1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	11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0
2403	19	기타	40
2403	9	기타	
2403	91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1. 판상엽(板狀葉)	32.8
		2. 기타	40
2403	99	기타	4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주: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 4 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煆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抗粉劑)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제 2802 호)

   나.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어스컬러(earth colour)(제 2821 호)

   다. 제 30 류의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제 33 류)

   마. 포석(鋪石)·연석(緣石)·판석(板石)(제 6801 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 6802 호), 지붕용·외장용(facing)·방습층용 슬레이트(제 6803 호)

바. 귀석과 반귀석(제 7102 호나 제 7103 호)

사. 제 3824 호의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의 배양한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 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으
로 제조한 광학용품(제 9001 호)

아. 당구용 초크(제 9504 호)

자. 필기용·도화용 초크나 재단사용 초크(제 9609 호)

3. 제 2517 호에도 해당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하는 물품은 제 2517 호로 분류한다

4. 제 2530 호에는 팽창되지 않은 질석(蛭石)·진주암(眞珠巖)·녹니석(綠泥石), 어스컬러
(earth colour)[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천연의 운
모(雲母) 모양 산화철, 해포석(海泡石)(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박(琥珀), 판(板
모양·막대(rod, 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시킨 해포석(海泡石)과 응결
시킨 호박(琥珀)(성형한 후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아나이트
(strontianite)[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산화스트론튬은 제외한다], 도자(陶瓷)
벽돌이나 콘크리트 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501	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1. 암염(岩鹽)과 천일염(정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암염(岩鹽)	1

		나. 천일염	1
		2. 기타	8
2502	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2503	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2504		천연 흑연	
2504	1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1. 인상(鱗狀)흑연	3
		2. 토상(土狀)흑연	3
		3. 기타	3
2504	90	기타	
		1. 인상(鱗狀)흑연	3
		2. 토상(土狀)흑연	3
		3. 기타	3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	10	규사	2
2505	90	기타	
		1. 공업용 모래	

		가. 점토사	3
		나. 장석사(長石砂)	3
		다. 기타	3
		2. 기타	3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	10	석영	
		1.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3
		2.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 100분의 0.1 이하인 것	3
		3.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3
2506	20	규암	3
2507	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고령토	
		가.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3
		나. 기타	3
		2.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	3

		정한다]	
		3. 기타	3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	10	벤토나이트(bentonite)	3
2508	30	내화(耐火)점토	3
2508	40	그 밖의 점토	
		1. 산성백토	3
		2.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3
		3. 기타	3
2508	50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1. 홍주석(紅柱石)	3
		2. 남정석(藍晶石)	3
		3. 규선석(硅線石)	3
2508	60	멀라이트(mullite)	3
2508	70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1. 샤모트(chamotte)	3

		2.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3
2509	00	초크	3
2510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	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1. 천연 인산칼슘	무세
		2. 기타	1
2510	20	잘게 부순 것	
		1. 천연 인산칼슘	3
		2.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3
		3. 기타	3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	1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3
2511	2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3
2512	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	10	부석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3
		2. 기타	3
2513	2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	
		가. 금강사(金剛砂)	3
		나. 천연 커런덤(corundum)	3
		다. 천연 석류석	3
		라. 기타	3
		2. 기타	
		가. 금강사(金剛砂)	3
		나. 천연 커런덤(corundum)	3
		다. 천연 석류석	3
		라. 기타	3
2514	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2. 기타	3
2515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	1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	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1. 대리석	3
		2. 트래버틴(travertine)	3
2515	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1. 대리석	3
		2. 트래버틴(travertine)	3
2515	2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석고(alabaster)	3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6	1	화강암	
2516	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2516	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2516	20	사암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2516	90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2. 기타	3
2517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	10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자갈	3

		2. 쇄석(碎石)	3
		3. 기타	3
2517	2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2517	3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3
2517	4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	41	대리석으로 만든 것	3
2517	49	기타	
		1. 현무암으로 만든 것	3
		2. 화강암으로 만든 것	3
		3. 기타	3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	1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3
2518	2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3
2518	3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3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	

		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	1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2519	90	기타	
		1. 용융(溶融)·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3
		2. 천연 산화마그네슘	3
		3. 기타	3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	10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1. 석고	5
		2. 무수(無水)석고	5
2520	20	플라스터(plaster)	5
2521	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1. 석회석	3
		2. 기타	3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	10	생석회(生石灰)	3
2522	20	소석회(消石灰)	3
2522	30	수경성(水硬性) 석회	3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	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2523	2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	21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523	29	기타	5
2523	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8
2523	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1. 슬래그(slag) 시멘트	5
		2. 기타	5
2524		석면	
2524	10	청(靑)석면	5
2524	90	기타	

		1. 갈(褐)석면	5
		2. 백(白)석면	5
		3. 기타	5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	1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3
2525	20	운모 가루	3
2525	30	운모 웨이스트(waste)	3
2526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	1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1.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2. 기타	3
2526	20	부수거나 가루인 것	5
2528	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천연 붕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2. 붕산칼슘	3
		3. 염화붕산마그네슘	3
		4. 천연 붕산	3
		5. 기타	3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閃長巖), 형석(螢石)	
2529	10	장석(長石)	3
2529	2	형석(螢石)	
2529	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1. 가루	2
		2. 기타	2
2529	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1. 가루	2
		2. 기타	2
2529	3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1. 백류석(白榴石)	2

		2. 하석(霞石)	2
		3.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2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	10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질석(蛭石)	3
		2.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3
2530	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3
2530	90	기타	
		1. 천연 황화비소	3
		2.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3
		3.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3
		4. 주사(朱沙)	3
		5. 납석(蠟石)	3
		6. 불석(沸石)	3
		7. 명반석(明礬石)	3
		8. 규회석(硅灰石)	3

		9. 기타	
		가. 도석(陶石)	3
		나. 견운모(絹雲母)	3
		다. 어스컬러(earth colour)	8
		라.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마.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3
		바. 기타	3

제 26 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슬래그(slag)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제 2517 호)

나.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2519 호)

다. 주로 석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 저장탱크에서 나온 슬러지(sludge)(제 2710 호

라. 제 31 류의 염기성 슬래그(slag)

마.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이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wool)(제 6806 호)

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 7112 호)

사. 제련공정에서 생산되는 구리·니켈·코발트의 매트(mat)(제 15 부)

2. 제 2601 호부터 제 2617 호까지에서 "광(鑛)"이란 수은, 제 2844 호의 금속, 제 14 부나 제 15 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冶金)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을 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 채취용에 실제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제 2601 호부터 제 2617 호까지에는 야금(冶金)공업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제 2620 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 2621 호)은 제외한다.

나. 비소를 함유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다른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비소나 다른 금속 채취용이나 이들 화합물 제조용의 것

소호주:

1. 소호 제 2620.21 호에서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란 유연(有鉛) 가솔린과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예: 테트라에틸납)의 저장탱크에서 얻는 슬러지(sludge)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납, 납 화합물과 산화철로 구성되어 있다.

2.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은 소호 제 2620.60 호로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1	1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	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 적철광	무세
		2. 자철광	무세
		3. 기타	무세
2601	12	응결시킨 것	
		1. 적철광	무세
		2. 자철광	무세
		3. 기타	무세
2601	2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1
2602	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무세
2603	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04	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05	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06	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07	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08	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09	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10	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11	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1. 흑중석(wolframite)	무세
		2. 회중석(scheelite)	무세
		3. 기타	무세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	1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12	2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	10	배소(焙燒)한 것	무세
2613	90	기타	무세

2614	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1. 금홍석(rutile)	무세
		2. 기타	무세
2615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	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15	90	기타	
		1. 니오븀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 탄탈륨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3. 바나듐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	10	은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16	90	기타	
		1. 금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 백금광과 그 정광(精鑛)[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무세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	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617	90	기타	
		1. 수은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2.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3.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4. 기타	무세
2618	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
2619	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1. 슬래그(slag)	
		가. 용광로 슬래그(slag)	2
		나. 기타	2
		2. 드로스(dross)	2
		3. 스케일링(scaling)	2
		4. 기타	2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0	1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	11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2

2620	19	기타	2
2620	2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	21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2
2620	29	기타	2
2620	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2
2620	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2620	6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2
2620	9	기타	
2620	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
2620	99	기타	2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	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2621	90	기타	2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 2711 호로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은 제
   외한다)

   나. 제 3003 호나 제 3004 호의 의약품

   다. 제 3301 호, 제 3302 호, 제 3805 호의 혼합 불포화탄화수소

2. 제 2710 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
   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
   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 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 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 39 류).

3. 제 2710 호에서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란 주로 이 류의 주 제 2 호에 따른 석유와
   역청유를 함유하는 폐유(廢油)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
   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된다.

   가.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
   (油壓油)와 절연유(絶緣油)]

   나. 석유 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로서 석유와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되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다. 유출된 오일, 저장탱크 청소나 기계 작동을 위한 절삭유(切削油)와 같이 물에 유화
   (乳化)되거나 물과 혼합된 오일

소호주:

1. 소호 제 2701.11 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 2701.12 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4 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 킬로그램당 5,833 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3. 소호 제 2707.10 호, 제 2707.20 호, 제 2707.30 호, 제 2707.40 호에서 “벤조올(벤젠)”·“톨루올(톨루엔)”·“크실롤(크실렌)”·“나프탈렌”은 각각 벤젠·톨루엔·크실렌·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소호 제 2710.12 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에스·오(ISO) 3405 방법 [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 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 도에서 전 용량의 100 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5. 제 2710 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2701	1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	11	무연탄	무세

2701	12	유연탄	
		1.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무세
		2. 그 밖의 코크스용 탄	무세
		3. 기타	무세
2701	19	그 밖의 석탄	무세
2701	2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1. 연탄	1
		2. 조개탄(ovoid)	1
		3. 기타	1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	1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1
2702	20	응결시킨 갈탄	1
2703	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
		2. 응결시킨 것	1
2704	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	

		(retort carbon)	
		1.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나. 기타	3
		2. 반성(半成) 코크스	3
		3.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3
2705	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2706	00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1. 콜타르(coal tar)	5
		2. 기타	5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	10	벤조올(벤젠)	3
2707	20	톨루올(톨루엔)	3
2707	30	크실롤(크실렌)	3
2707	40	나프탈렌	5

2707	5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아이·에스·오(ISO) 3405 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 의 방법과 동등}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5
2707	9	기타	
2707	91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2707	99	기타	
		1.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5
		2. 안트라센(anthracene)	5
		3. 페놀(석탄산)	8
		4. 기타	5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	10	피치(pitch)	5
2708	20	피치코크스(pitch cokes)	5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3
		나.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3

		다.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3
		라.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3
		마.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3
		바.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3
		사.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3
		아.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3
		자. 기타	3
		2. 역청유(瀝青油)	3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	1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	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 자동차 휘발유	3

		2. 항공 휘발유	3
		3.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4. 나프타	무세
		5. 엔지엘(NGL)	무세
		6. 기타	5
2710	19	기타	
		1. 그 밖의 휘발유와 그 조제품	
		가. 제트 연료유	5
		나. 기타	5
		2. 등유와 그 조제품	
		가. 등유	3
		나. 제트 연료유	3
		다. 노르말-파라핀(*n*-paraffin)	5
		라. 기타	5
		3. 경유	3
		4. 중유	
		가.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3

		나. 중유(벙커비유)	3
		다. 벙커시유	3
		라. 기타	5
		5. 조유(粗油)와 윤활유 기유(基油)	7
		6. 신전유(extender oil)	8
		7. 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7
		8. 그리스	8
		9. 기타	8
2710	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1.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가. 자동차 휘발유	5
		나. 항공 휘발유	5
		다.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라. 나프타	무세
		마. 엔지엘(NGL)	무세
		바. 기타	5

		2. 기타	
		가. 그 밖의 휘발유와 그 조제품	
		1) 제트 연료유	5
		2) 기타	5
		나. 등유와 그 조제품	
		1) 등유	5
		2) 제트 연료유	5
		3) 노르말-파라핀(*n*-paraffin)	5
		4) 기타	5
		다. 경유	5
		라. 중유	
		1)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5
		2) 중유(벙커비유)	5
		3) 벙커시유	5
		4) 기타	5
		마. 조유(粗油)와 윤활유 기유(基油)	7
		바. 신전유(extender oil)	8
		사. 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7

		아. 그리스	8
		자. 기타	8
2710	9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	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1. 휘발유와 그 조제품	
		가.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3
		나.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무세
		다. 기타	5
		2. 등유와 그 조제품의 것	
		가.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나. 기타	5
		3. 경유의 것	3
		4. 중유의 것	
		가.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3
		나. 기타	5

		5.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6. 기타	8
2710	99	기타	
		1. 휘발유와 그 조제품의 것	
		가.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3
		나.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무세
		다. 기타	5
		2. 등유와 그 조제품의 것	
		가.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나. 기타	5
		3. 경유의 것	3
		4. 중유의 것	
		가.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3
		나. 기타	5
		5.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6. 기타	8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3
2711	12	프로판	3
2711	13	부탄	3
2711	14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부타디엔	
		1. 에틸렌	5
		2. 프로필렌	5
		3. 부틸렌	5
		4. 부타디엔	5
2711	19	기타	5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3
2711	29	기타	5
2712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 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	10	석유젤리	8

2712	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2712	90	기타	8
2713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青)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2713	1	석유코크스	
2713	11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5
2713	12	하소(煆燒)한 것	5
2713	20	석유역청(瀝青)	5
2713	9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5
2714		천연의 역청(瀝青)·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	10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5
2714	90	기타	
		1. 천연의 역청(瀝青)과 아스팔트	5
		2. 아스팔타이트	5
		3. 아스팔트질의 암석	5
2715	00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青), 석유 역청(瀝青),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1. 컷백(cut-back)	5
		2. 아스팔트·역청(瀝靑)·피치(pitch)·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5
		3. 매스틱(mastic)	5
		4. 기타	5
2716	00	전기에너지	5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1. 가. 제 2844 호나 제 2845 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방사성 광물은 제외한다)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나. 가목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 2843 호, 제 2846 호, 제 2852 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이 부의 주 제 1 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 3004 호·제 3005 호·제 3006 호·제 3212 호·제 3303 호·제 3304 호·제 3305 호·제 3306 호·제 3307 호·제 3506 호·제 3707 호·제 3808 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3.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 6 부나 제 7 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
할 것은 제 6 부나 제 7 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

다. 가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나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
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에 동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러한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는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제 2831 호),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제 2836 호),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제 2837 호),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티오시안산염(제 2842 호), 제 2843 호부터 제 2846 호까지와 제 2852 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탄화물(제 2849 호)을 분류하며, 탄소화합물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분류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시안화수소·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과 그 밖의 단일의 시아노착산이나 시아노겐착산(제 2811 호)

나.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제 2812 호)

다. 이황화탄소(제 2813 호)

라.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과 그 밖의 시안산착염(제 2842 호)

마. 요소로 고체화한 과산화수소(제 2847 호), 산화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시안아미드와 그 금속유도체(제 2853 호)(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칼슘시안아미드는 제외한다)(제 31 류)

3. 제 6 부의 주 제 1 호의 것은 해당 호에 따르고,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염화나트륨·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제 5 부의 기타 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주 제 2 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 제 31 류의 주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물품

라. 제 3206 호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제 3207 호의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알갱이,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한정한다]

마. 인조흑연(제 3801 호), 제 3813 호의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 3824 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로서 한 개의 중량이 2.5 그램 이상인 제 3824 호의 배양한 결정(culture crystal)(광학소자는 제외한다)

바.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의 더스트(dust)와 가루(제 7102 호부터 제 7105 호까지)와 제 71 류의 귀금속이나 귀금속의 합금

사. 제 15 부의 금속(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금속합금이나 금속 서멧(cermet)[소결(燒結)한 금속 카바이드(carbide)를 포함하되, 금속을 혼합하여 소결(燒結)한 금속 카바이드(carbide)로 한정한다]

아. 광학소자(제 9001 호, 예: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

4. 제 2 절의 비(非)금속산과 제 4 절의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한 착산은 제 281 호로 분류한다.

5. 제 2826 호부터 제 2842 호까지는 금속의 염, 암모늄염, 페록시염에만 적용한다. 겹염이나 착염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 2842 호로 분류한다.

6. 제 2844 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테크네튬(원자번호 43)·프로메튬(원자번호 61)·폴로늄(원자번호 84)과 원자번호가 84 보다 큰 모든 원소

나. 천연이나 인조의 방사성 동위원소[제 14 부와 제 15 부의 귀금속이나 비금속(卑金屬)인 것을 포함하며,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가목과 나목의 원소,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합금·분산물[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위의 가목과 나목의 원소·동위원소나 이들의 무기-유기화합물로서 그램당 비방사능이 74 베크렐(0.002 마이크로퀴리)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원자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바. 방사성 잔재물(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주 제 6 호와 제 2844 호, 제 2845 호에서 “동위원소”란 다음을 말한다.

– 단일의 핵종(核種)(천연에서 단일 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제외한다)

– 어느 한 원소의 동위원소들과 해당 원소의 혼합물로서 해당 동위원소의 하나
몇 개를 농축한 것(천연의 동위원소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변성한 것을 말한다

7. 제 2853 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인화동[인동(燐銅
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
가공하지 않은 모양·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웨
이퍼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 3818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2852.10 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란 제 28 류 주 제 1 호의 가목부터 다
목까지나 제 29 류 주 제 1 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기나 무기의
수은화합물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제 1 절 원소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2801	10	염소	8
2801	20	요드	8
2801	30	플루오르와 브롬	8
2802	0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1. 승화황(昇華黃)	5
		2. 침강황(沈降黃)	5
		3. 콜로이드황	5
2803	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1. 아세틸렌 블랙	8
		2. 기타	
		가. 카본 블랙(carbon black)	
		1) 이차전지 제조용	5
		2) 기타	8
		나. 기타	8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	10	수소	8
2804	2	희가스(rare gas)	

2804	21	아르곤	8
2804	29	기타	8
2804	30	질소	8
2804	40	산소	8
2804	50	붕소와 텔루르	8
2804	6	규소	
2804	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2804	69	기타	5
2804	70	인	
		1. 황린	5
		2. 기타	8
2804	80	비소	8
2804	90	셀렌	8
2805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2805	1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	11	나트륨	8

2805	12	칼슘	8
2805	19	기타	8
2805	3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2805	40	수은	8
		제 2 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	10	염화수소(염산)	8
2806	20	클로로황산	8
2807	00	황산과 발연황산	8
2808	00	질산과 황질산	8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	10	오산화인	8
2809	20	인산과 폴리인산	8
2810	0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8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	1	그 밖의 무기산	

2811	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8
2811	12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8
2811	19	기타	8
2811	2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	21	이산화탄소	8
2811	22	이산화규소	8
2811	29	기타	8
		제 3 절 비(非)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	1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2812	11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2812	12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2812	13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2812	14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2812	15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
2812	16	설퍼 디클로라이드	5
2812	17	티오닐 클로라이드	5
2812	19	기타	5

2812	90	기타	8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813	10	이황화탄소	8
2813	90	기타	8
		제 4 절 무기염기, 금속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	10	무수(無水)암모니아	1
2814	20	암모니아수	2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	1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	11	고체	8
2815	12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8
2815	2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8
2815	3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8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6	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8
2816	4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8

2817	00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8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	10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선별된 알갱이 모양	3
		2. 기타	3
2818	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1
2818	30	수산화알루미늄	8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	10	삼산화크로뮴	8
2819	90	기타	8
2820		산화망간	
2820	10	이산화망간	5
2820	90	기타	8
2821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	10	산화철과 수산화철	8
2821	20	어스컬러(earth colour)	8
2822	00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1. 산화코발트	
		가. 산화제이코발트	8
		나. 기타	
		1) 이차전지 제조용	3
		2) 기타	8
		2. 수산화코발트	8
2823	00	산화티타늄	8
2824		산화납·연단(鉛丹)·오렌지납	
2824	1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8
2824	90	기타	8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2825	1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8
2825	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1. 산화리튬	8
		2. 수산화리튬	5
2825	3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1. 오산화바나듐	1

		2. 기타	3
2825	4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8
2825	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1. 산화구리	8
		2. 수산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825	6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8
2825	7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1. 산화몰리브덴	3
		2. 수산화몰리브덴	8
2825	80	산화안티모니	8
2825	90	기타	
		1. 금속의 산화물	
		가. 산화칼슘	8
		나. 산화텅스텐	1
		다. 산화석	8

		라. 기타	8
		2. 금속의 수산화물	8
		3. 금속과산화물	8
		4. 기타	8
		제 5 절 무기산과 금속의 염·과산화염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6	1	플루오르화물	
2826	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8
2826	19	기타	8
2826	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8
2826	90	기타	8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2827	10	염화암모늄	8
2827	20	염화칼슘	8
2827	3	그 밖의 염화물	
2827	31	마그네슘 염화물	8

2827	32	알루미늄 염화물	8
2827	35	니켈 염화물	8
2827	39	기타	8
2827	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	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1. 산화염화구리	8
		2. 수산화염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827	49	기타	8
2827	5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	51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8
2827	59	기타	8
2827	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8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하이포아브롬산염	
2828	1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8

2828	90	기타	8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29	1	염소산염	
2829	11	염소산나트륨	8
2829	19	기타	8
2829	90	기타	8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	10	황화나트륨	8
2830	90	기타	8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	10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8
2831	90	기타	8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	10	아황산나트륨	8
2832	20	그 밖의 아황산염	8
2832	30	티오황산염	8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1	황산나트륨	
2833	11	황산이나트륨	8
2833	19	기타	8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1	황산마그네슘	8
2833	22	황산알루미늄	
		1. 이차전지 제조용	5
		2. 기타	8
2833	24	황산니켈	5
2833	25	황산구리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833	27	황산바륨	8
2833	29	기타	
		1. 황산철	8
		2. 황산코발트	

		가. 이차전지 제조용	5
		나. 기타	8
		3. 황산망간	
		가. 이차전지 제조용	5
		나. 기타	8
		4. 기타	8
2833	30	명반	8
2833	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8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	10	아질산염	8
2834	2	질산염	
2834	21	질산칼륨	8
2834	29	기타	8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	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8
2835	2	인산염	

2835	22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8
2835	24	인산칼륨	8
2835	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8
2835	26	그 밖의 인산칼슘	8
2835	29	기타	8
2835	3	폴리인산염	
2835	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8
2835	39	기타	8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	20	탄산이나트륨	3
2836	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8
2836	40	탄산칼륨	8
2836	50	탄산칼슘	8
2836	60	탄산바륨	8
2836	9	기타	
2836	91	탄산리튬	5

2836	92	탄산스트론튬	8
2836	99	기타	
		1. 탄산망간	
		가. 이차전지 제조용	5
		나. 기타	8
		2. 기타	8
2837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	
2837	1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	11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8
2837	19	기타	8
2837	20	시안착염	8
2839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39	1	규산나트륨	
2839	11	메타규산나트륨	8
2839	19	기타	8
2839	90	기타	8
284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0	1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840	11	무수물(無水物)	5
2840	19	기타	5
2840	20	그 밖의 붕산염	5
2840	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	30	중크롬산나트륨	8
2841	5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8
2841	6	아망간산염·망간산염·과망간산염	
2841	61	과망간산칼륨	8
2841	69	기타	8
2841	70	몰리브덴산염	8
2841	8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
2841	90	기타	8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	1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8
2842	90	기타	8

		제 6 절 기타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3	10	콜로이드 귀금속	8
2843	2	은 화합물	
2843	21	질산은	8
2843	29	기타	8
2843	30	금 화합물	8
2843	90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8
284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	1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천연 우라늄	무세
		2.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3. 기타	무세
2844	2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	

		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무세
		2.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3. 기타	무세
2844	3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2. 기타	무세
2844	40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1. 방사성원소	무세
		2. 방사성동위원소	무세
		3. 분산물(分散物)(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4. 기타	무세
2844	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무세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	1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무세
2845	90	기타	
		1. 중수소	무세
		2. 탄소의 동위원소	무세
		3. 기타	무세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2846	10	세륨화합물	5
2846	90	기타	5
2847	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	10	탄화칼슘	8
2849	20	탄화규소	5
2849	90	기타	8

2850	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8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	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8
2852	90	기타	
		1. 소호 제 3501.90 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20
		2. 기타	8
2853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8
	90	기타	8

제 29 류

유기화학품

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 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 27 류)은 제외한다]

다. 제 2936 호부터 제 2939 호까지의 물품, 제 2940 호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 2941 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마.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芳香性) 물질을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아. 아조(azo)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 농도로 희석한 물품[디아조늄염과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coupler)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으로 한정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1504 호의 물품이나 제 1520 호의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글리세린)

나. 에틸알코올(제 2207 호나 제 2208 호)

다. 메탄이나 프로판(제 2711 호)

라. 제 28 류의 주 제 2 호의 탄소화합물

마. 제 3002 호의 면역물품

바. 요소(제 3102 호나 제 3105 호)

사. 식물성·동물성 착색제(제 3203.00 호), 합성 유기착색제,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제 3204 호),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
그 밖의 착색제(제 3212 호)

아. 효소(제 3507 호)

자.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잉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연료,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
라이터 충전용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
액체 연료와 액화가스 연료(제 3606 호)

차. 제 3813 호의 소화기용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 3824 호의 소매용기에 ㄴ
은 잉크 제거제

카. 광학소자(제 9001 호, 예: 주석산에틸렌디아민의 것)

3.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제 2904 호부터 제 2906 호까지, 제 2908 호부터 제 2911 호까지, 제 2913 호부터 제 292
호까지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에는 술포
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술폰화유도체·니트로술포할로겐화유도
를 포함한다. 니트로나 니트로소기는 제 2929 호에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
다. 제 2911 호, 제 2912 호, 제 2914 호, 제 2918 호, 제 2922 호에서 "산소관능"이란 제
2905 호부터 제 2920 호까지에서 열거한 관능(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5. 가. 제 1 절부터 제 7 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나. 에틸알코올과 제 1 절부터 제 7 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 다음에 열거한 염은 제 6 부의 주 제 1 호와 제 28 류의 주 제 2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제 1 절부터 제 10 절까지, 제 2942.00 호의 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의 화합물이나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해당 유기화합물에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

2) 제 1 절부터 제 10 절까지나 제 2942.00 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그 염이 형성된 염기나 산(페놀관능화합물이나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 배위화합물(제 11 절이나 제 294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 29 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라. 금속알코올레이트는 이를 구성하는 알코올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에탄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제 2905 호).

마.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르복시산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6. 제 2930 호와 제 2931 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 제 2930 호(유기황화합물)와 제 2931 호(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질소 외의 술폰화유도체나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가지는 황이나 할로겐만의 것은 제외한다.

7. 제 2932 호·제 2933 호·제 2934 호에서는 3 원고리의 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 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다가페놀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다염기산의 아미드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가 여기에 열거된 환관능기나 관능기에서 생긴 것에만 적용한다.

8. 제 2937 호에서

가. “호르몬”에는 호르몬 분비·촉진 인자,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방지제(항 호르몬)를 포함한다.

나.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이란 호르몬 효과를 얻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호의 제품을 합성 중간체로서 주로 사용되는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에도 적용한다.

소호주:

1. 이 류의 각 호에서 화합물의 유도체(또는 화합물의 원자단)는 그 유도체가 어떠한 다른 소호에 명백하게 분류되지 아니하고 관련 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또는 화합물 원자단)과 동일한 소호로 분류한다.

2. 제 29 류의 주 제 3 호는 이 류의 소호의 분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제 1 절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	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1. 부탄	5
		2. 헥산	5
		3. 헵탄	5
		4. 기타	5
2901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	21	에틸렌	5
2901	22	프로펜(프로필렌)	5
2901	23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5
2901	24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1. 1,3-부타디엔	5
		2. 이소프렌	5
2901	29	기타	
		1. 헥센	5
		2. 옥텐	5
		3. 기타	5
2902		환식탄화수소	
2902	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	

2902	11	시클로헥산	5
2902	19	기타	5
2902	20	벤젠	3
2902	30	톨루엔	3
2902	4	크실렌	
2902	41	오르토-크실렌	5
2902	42	메타-크실렌	5
2902	43	파라-크실렌	3
2902	44	혼합크실렌 이성체	3
2902	50	스티렌	8
2902	60	에틸벤젠	5
2902	70	큐멘	3
2902	90	기타	
		1. 나프탈렌	5
		2. 메틸나프탈렌	5
		3. 메틸스티렌	5
		4. 기타	5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	11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8
2903	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8
2903	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8
2903	14	사염화탄소	8
2903	15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2903	19	기타	8
2903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	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8
2903	22	삼염화에틸렌	8
2903	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8
2903	29	기타	8
2903	3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요드화유도체	
2903	31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8
2903	39	기타	8
2903	7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	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8
2903	7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8
2903	73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8
2903	74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8
2903	7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8
2903	7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8
2903	77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8
2903	78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8
2903	79	기타	8
2903	8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	8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8
2903	82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8
2903	83	미렉스(ISO)	8
2903	89	기타	8
2903	9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	91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8

2903	92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8
2903	93	펜타클로로벤젠(ISO)	8
2903	94	헥사브로모비페닐	8
2903	99	기타	8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	1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8
2904	20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8
2904	3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과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2904	31	과불화옥탄술폰산	8
2904	32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8
2904	33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8
2904	34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8
2904	35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8
2904	36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8

2904	9	기타	
2904	91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8
2904	99	기타	8
		제 2 절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1	포화 1 가알코올	
2905	11	메탄올(메틸알코올)	2
2905	1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8
2905	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2905	14	그 밖의 부탄올	8
2905	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8
2905	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8
2905	19	기타	
		1. 헵틸알코올	8
		2. 노닐알코올	8

		3. 이소노닐알코올	3
		4.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8
		5. 기타	
		가.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나. 2-프로필 헵틸 알코올	5
		다. 이소데실 알코올	3
		라. 기타	5
2905	2	불포화 1 가알코올	
2905	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5
2905	29	기타	5
2905	3	2 가알코올	
2905	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
2905	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8
2905	39	기타	8
2905	4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	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8
2905	42	펜타에리트리톨	8

2905	43	만니톨	8
2905	44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2905	45	글리세롤	8
2905	49	기타	8
2905	5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51	에스클로비놀(INN)	8
2905	59	기타	8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6	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	
2906	11	멘톨	8
2906	12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디메틸시클로헥산올	8
2906	13	스테롤과 이노시톨	8
2906	19	기타	8
2906	2	방향족(芳香族)	
2906	21	벤질알코올	8
2906	29	기타	8

		제 3 절 페놀·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	1	1 가페놀	
2907	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8
2907	12	크레졸과 그 염	8
2907	13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1. 옥틸페놀	8
		2. 노닐페놀	5
		3. 기타	8
2907	15	나프톨과 이들의 염	8
2907	19	기타	8
2907	2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	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8
2907	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8
2907	23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8
2907	29	기타	8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8	1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	11	펜타클로로페놀(ISO)	5
2908	19	기타	
		1.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5
		2.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3. 트리브로모페놀	5
		4. 기타	5
2908	9	기타	
2908	91	디노셉(ISO)과 그 염	8
2908	92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8
2908	99	기타	8
		제 4 절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3 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1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11	디에틸에테르	8
2909	19	기타	8
2909	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8
2909	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1. 아니솔, 아네톨, 디페닐 에테르, 앰브렛 머스크,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09	4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8
2909	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8
2909	44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8
2909	49	기타	8

2909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8
2909	60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8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0	1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2910	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8
2910	3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8
2910	40	디엘드린(ISO, INN)	8
2910	50	엔드린(ISO)	8
2910	90	기타	8
2911	00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8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2	1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	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8
2912	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8
2912	19	기타	8
2912	2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	21	벤즈알데히드	8
2912	29	기타	8
2912	4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2912	41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2912	42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8
2912	49	기타	8
2912	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8
2912	60	파라포름알데히드	8
2913	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8
		제 6 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291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1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	11	아세톤	8
2914	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
2914	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8
2914	19	기타	8
2914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	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1. 시클로헥사논	5
		2. 메틸시콜로헥사논	5
2914	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1. 이오논	5
		2. 메틸이오논	5
2914	29	기타	
		1. 자스몬	5
		2. 기타	5
2914	3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	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8
2914	39	기타	8
2914	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8
2914	5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8
2914	6	퀴논	
2914	61	안트라퀴논	8
2914	62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8
2914	69	기타	
		1.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8
		2. 기타	8
2914	7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1	클로르데콘(ISO)	5
2914	7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5
		제 7 절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1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	11	포름산	8
2915	12	포름산의 염	8
2915	13	포름산의 에스테르	8
2915	2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	21	초산	8
2915	24	무수(無水)초산	8
2915	29	기타	8
2915	3	초산에스테르	
2915	31	초산에틸	8
2915	32	초산비닐	8
2915	33	초산노르말부틸	8
2915	36	초산디노셉(ISO)	8
2915	39	기타	8

2915	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8
2915	5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8
2915	6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8
2915	70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8
2915	90	기타	8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11	아크릴산과 그 염	8
2916	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8
2916	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8
2916	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8
2916	15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8
2916	16	비나파크릴(ISO)	8
2916	19	기타	8
2916	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16	3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1. 벤조산, 벤조산나트륨, 벤조산벤질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16	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8
2916	34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8
2916	39	기타	
		1. 계피산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	

		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1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	11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8
2917	12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8
2917	13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8
2917	14	무수말레산	8
2917	19	기타	8
2917	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8
2917	3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	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8
2917	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8
2917	34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8
2917	35	무수프탈산	8
2917	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1. 테레프탈산	3

		2. 기타	8
2917	37	테레프탈산디메틸	8
2917	39	기타	8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1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	11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8
2918	12	타르타르산	8
2918	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8
2918	14	시트르산	8
2918	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8
2918	16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8
2918	17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8
2918	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8
2918	19	기타	8
2918	2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	21	살리실산과 그 염	8
2918	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8
2918	23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8
2918	29	기타	8
2918	30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18	9	기타	
2918	91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8
2918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제8절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8
2919	90	기타	
		1. 인산에스테르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 인산에스테르의 염	8
		3. 기타	8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0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0	2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21	디메틸 포스파이트	8
2920	22	디에틸 포스파이트	8
2920	23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8
2920	24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8
2920	29	기타	8
2920	30	엔도설판(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제 9 절 질소관능화합물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1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11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8
2921	12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8
2921	13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8
2921	14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8
2921	19	기타	8
2921	2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8
2921	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8
2921	29	기타	5
2921	30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8
2921	4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41	아닐린과 그 염	8
2921	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1	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1	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8
2921	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8
		2. 기타	
		가.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
		나.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8
		다.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
		라. 기타	8
2921	46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8
2921	4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1	5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8
2921	59	기타	8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1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	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8
2922	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8
2922	14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8
2922	15	트리에탄올아민	3
2922	16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8
2922	17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8
2922	18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8
2922	19	기타	8
2922	2	아미노나프톨·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	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1.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8
		2.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3

		염	
		3.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8
		4. 기타	8
2922	29	기타	8
2922	3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	31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8
2922	39	기타	8
2922	4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	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8
2922	42	글루탐산과 그 염	
		1. 글루탐산	5
		2. 글루탐산 나트륨	8
		3.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8
2922	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8
2922	44	틸리딘(INN)과 그 염	8
2922	49	기타	8
2922	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	

		화합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	10	콜린과 그 염	8
2923	2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8
2923	3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8
2923	4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8
2923	90	기타	8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11	메프로바메이트(INN)	8
2924	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8
2924	19	기타	
		1.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24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4	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8
2924	24	에치나메이트(INN)	8
2924	25	알라클로르(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4	29	기타	
		1. 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8
		2.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5
		3. 기타	

		가. 염산리도카인	8
		나.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헥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무세
		다.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	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11	사카린과 그 염	8
2925	12	구루테치미드(INN)	8
2925	19	기타	
		1. 프탈아미드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25	2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21	클로르디메포름(ISO)	8

2925	29	기타	
		1. 디페닐구아니딘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10	아크릴로니트릴	8
2926	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8
2926	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8
2926	40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8
2926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27	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8
2928	0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	2

		로 한정한다)	
		2. 기타	8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	10	이소시아네이트	8
2929	90	기타	8
		제 10 절 유기-무기화합물·헤테로고리화합물·핵산과 이들의 염, 술폰아미드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	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1. 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30	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8
2930	40	메티오닌	8
2930	6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8

2930	7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 [티오디글리콜(INN)]	8
2930	8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8
293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	10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8
2931	20	트리부틸틴 화합물	8
2931	3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	
2931	3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8
2931	32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8
2931	33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8
2931	34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8
2931	35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8
2931	36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8
2931	37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8

2931	38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8
2931	39	기타	8
293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	1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1	테트라히드로푸란	8
2932	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8
2932	13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8
2932	14	수크랄로스	8
2932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2	20	락톤	
		1. 쿠마린·메틸쿠마린·에틸쿠마린	5

		2. 노나락톤	5
		3. 운데카락톤	5
		4. 부티로락톤	5
		5. 산토닉	5
		6. 페놀프탈레인	5
		7. 글루쿠로노락톤	5
		8.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9. 아세틸케텐(디케텐)	5
		10.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5
2932	9	기타	
2932	91	이소사프롤	8
2932	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8
2932	93	피페로날	8
2932	94	사프롤	8

2932	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8
2932	99	기타	
		1. 디옥산·벤조푸란(쿠마론)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1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3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3	2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8
2933	29	기타	
		1. 리시딘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33	3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31	피리딘과 그 염	8
2933	32	피페리딘과 그 염	8
2933	33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8
2933	3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3	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	41	레보파놀(INN)과 그 염	8
2933	49	기타	
		1. 피비니움파모에이트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33	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8
2933	53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8
2933	54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8
2933	55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8
2933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	2

		로 한정한다)	
		2. 기타	8
2933	6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1	멜라민	8
2933	69	기타	
		1. 염화시아눌	3
		2. 헥사메틸렌테트라민	8
		3. 기타	
		가.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8
		나.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3	7	락탐	
2933	71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
2933	72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8
2933	79	그 밖의 락탐	8
2933	9	기타	

2933	91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8
2933	92	아진포스-메틸(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3	99	기타	
		1. 인돌과 그 유도체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1.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8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934	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4	30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2934	9	기타	
2934	91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8
2934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35		술폰아미드	
	1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8
	2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8
	30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8
	40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8
	5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8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제 11 절 프로비타민·비타민·호르몬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6	2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	21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8
2936	22	비타민 B_1 과 이들의 유도체	8
2936	23	비타민 B_2 와 이들의 유도체	8

2936	24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_3 나 비타민 B_5)과 이들의 유도체	8
2936	25	비타민 B_6 와 이들의 유도체	8
2936	26	비타민 B_{12} 와 이들의 유도체	8
2936	27	비타민 C 와 이들의 유도체	8
2936	28	비타민 E 와 이들의 유도체	8
2936	29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8
2936	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8
2937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37	1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	11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2937	12	인슐린과 그 염	8
2937	19	기타	8
2937	2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	21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8
2937	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8
2937	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8
2937	29	기타	8
2937	5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2937	90	기타	8
		제 12 절 글리코시드와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8	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8
2938	90	기타	8
2939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9	1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	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테바인, 이들의 염	8

2939	19	기타	8
2939	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8
2939	30	카페인과 그 염	8
2939	4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	41	에페드린과 그 염	8
2939	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8
2939	43	캐친(INN)과 그 염	8
2939	44	놀에페드린과 그 염	8
2939	49	기타	8
2939	5	테오피린·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	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8
2939	59	기타	8
2939	6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	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8
2939	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8
2939	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8
2939	69	기타	8

2939	7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	71	코카인·엑고닌·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8
2939	79	기타	8
2939	80	기타	
		1. 비리디카틴, 루구로바신 에이, 스포리데스민 에이, 사이토칼라신 비, 테올로시딘 비 4, 페니트렘 디, 로퀘포르틴, 사만다린, 에파비티딘, 카스토라민, 무스코피리딘, 코시넬린, 피라진, 다나이돈, 글로메린, 에필라크네네, 서브코시넬라 24-푼크타타, 바라신, 만자민, 콘볼루타민 디, 유디스토민, 프로시아닌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2. 히스트리노코톡신, 테트로도톡신	무세
		3. 기타	8
		제 13 절 그 밖의 유기화합물	
2940	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2941		항생물질	
2941	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8
2941	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41	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8
2941	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8
2941	50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8
294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2942	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8

제 30 류

의료용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
광천수). 다만, 정맥 투여용 영양제는 제외한다(제 4 부).

나.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예: 정제(tablet)·추잉껌·패치(피부투여 ㅂ
식)](제 2106 호나 제 3824 호)

다.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煅燒)하거나 곱게 부순 플라스터(plaster)(제 2520 호)

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
(aqueous solution)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 3301 호)

마. 제 3303 호부터 제 3307 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

바. 제 3401 호의 비누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의약품을 첨가한 것

사.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제 3407 호)

아.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제 3502 호)

2. 제 3002 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
(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 2937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항체(MAB
monoclonal antibody), 항체 프라그먼트(fragment), 항체 콘쥬게이트(conjugate), 항체
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fragment conjugate), 인터류킨(interleukin), 인터페론(IFN
interferon), 케모킨(chemokine),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tumor necrosis factor
성장인자(GF: growth factor), 조혈소, 집락촉진인자(CSF: colony stimulating factor

3. 제 3003 호·제 3004 호와 이 류의 주 제 4 호라목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가. 혼합하지 않은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혼합하지 않은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2) 제 28 류나 제 29 류의 모든 물품

3) 제 1302 호의 단일인 식물성 추출물(extract)로서 단순히 표준화하거나 용매에 용해한 것(용매의 종류는 상관없다)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추출물(extract)

3) 천연의 광천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4.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 3006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않은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이나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
성의 화학조제품

자.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
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차. 폐(廢)의료용품[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한 의
용품]

카.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결장루(結腸瘻), 회장
(回腸瘻), 요루 주머니와 이들의 접착 웨이퍼(wafer)·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

소호주:

1. 제 3002.13 호와 제 3002.14 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혼합하지 않은 물품, 순수한 물품으로 본다.

나. 다음은 혼합된 물품으로 본다.

1) 가목에 언급된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용해된 것

2) 가목 및 나목 1)의 물품에 보존이나 운반에 필요한 안정제를 첨가한 것

3) 가목, 나목 1) 및 나목 2)의 물품에 그 밖의 다른 첨가제를 첨가한 것

2. 제 3003.60 호와 제 3004.60 호는 그 밖의 의약적 활성성분과 결합된 경구 섭취용 아르
미시닌(INN)을 함유하는 의약품, 또는 다음에 열거된 활성성분(그 밖의 의약적 활성
분과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포함한다.

아모디아퀸(INN), 아르텔린산과 그 염, 아르테니몰(INN), 아르테모틸(INN), 아르테메테르(INN), 아르테수네이트(INN), 클로로퀸(INN), 디히드로아르테미시닌(INN), 루메판트린(INN), 메플로퀸(INN), 피페라퀸(INN), 피리메타민(INN), 술파독신(INN).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	20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8
3001	90	기타	
		1.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2. 기타	8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	1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	11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무세
3002	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1.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8
		2. 기타	
		가. 면역혈청	무세
		나.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8
		다. 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	8
		라.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무세
		마. 기타	무세
3002	13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1. 소호 제 2925.29 호, 제 2933.29 호, 제 2934.99 호, 제 2937.90.1000 호, 제 3002.90.3010 호, 제 3907.20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8
		2. 기타	무세

3002	14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1. 소호 제 2925.29 호, 제 2933.29 호, 제 2934.99 호, 제 2937.90.1000 호, 제 3002.90.3010 호, 제 3907.20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8
		2. 기타	무세
3002	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8
3002	19	기타	
		1. 소호 제 2925.29 호, 제 2933.29 호, 제 2934.99 호, 제 2937.90.1000 호, 제 3002.90.3010 호, 제 3907.20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8
		2. 기타	무세
3002	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3002	30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1. 구제역 백신	무세
		2. 기타	무세
3002	90	기타	
		1. 사람의 피	무세

		2.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3. 독소, 톡소이드(toxoid), 크리프독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가. 색시톡신(saxitoxin)	8
		나. 리신(ricin)	8
		다. 기타	무세
		4. 미생물 배양체	무세
		5.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무세
		6. 살균소	무세
		7. 제 2933.29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8
		8. 제 3002.12 호 제 1 목·제 3002.12 호 제 2 목의 나·제 3002.12 호 제 2 목의 다의 것	8
		9. 기타	무세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제 3005 호·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3	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3003	20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003	3	기타(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3	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3003	39	기타	8
3003	4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3003	41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3003	42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3003	43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3003	49	기타	8
3003	6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8
3003	90	기타	8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제 3005 호·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	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8

		함유한 것	
3004	20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004	3	기타(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	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3004	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3004	39	기타	8
3004	4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4	41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3004	42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3004	43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3004	49	기타	8
3004	50	기타(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004	6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8
3004	90	기타	8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3005	1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8
3005	90	기타	8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	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3006	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8
3006	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8
3006	4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8
3006	50	구급상자와 구급대	8
3006	60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8
3006	7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8
3006	9	기타	

3006	91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8
3006	92	폐(廢)의료용품	
		1. 제 3001 호의 것	
		가.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나. 기타	8
		2. 제 3002 호의 것	
		가.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8
		나.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8
		다. 색시톡신(saxitoxin)과 리신(ricin)	8
		라. 기타	무세
		3. 제 3003 호와 제 3004 호의 것	8
		4. 제 3005 호와 제 3006 호의 것	8
		5. 소호 제 3824.84 호부터 제 3824.88 호까지, 제 3824.91 호, 제 3824.99 호의 것	8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0511 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류의 주 제 2 호가목·제 3 호가목·제 4 호가목·주 제5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제 3824 호의 배양한 염화칼륨결정(한 개의 중량이 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
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소자(제 9001 호)

2. 제 3102 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 3105 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을 하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혼합물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혼합물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인지 또는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다. 염화암모늄이나 가목·나목에 열거한 물품에 초크·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라. 가목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3. 제 3103 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 3105 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염기성 슬래그(slag)

2) 제 2510 호의 천연 인산염으로서 하소(煆燒)한 것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3) 과인산석회나 중과인산석회

4)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건조 무수물(無水物)의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 분의 0.2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플루오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 가목·나목에 열거한 물품(플루오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에 초크·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4. 제 3104 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 3105 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가공하지 않은 천연 칼륨의 염류[예: 카아널라이트(carnallite), 카이나이트

(kainite), 실바이트(sylvite)]

2)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주 제 1 호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3) 황산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5.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은 제 3105 호로 분류한다.

6. 제 3105 호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101	00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8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2
		2. 기타	8

3102	2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3102	21	황산암모늄	8
3102	29	기타	8
3102	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3102	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102	50	질산나트륨	8
3102	60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8
3102	8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102	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8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	1	과인산석회	
3103	11	오산화인(P_2O_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8
3103	19	기타	8
3103	90	기타	8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	20	염화칼륨	무세

3104	30	황산칼륨	
		1.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2 이하인 것	1
		2. 기타	8
3104	90	기타	
		1. 황산마그네슘칼륨	
		가.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1
		나. 기타	8
		2. 기타	1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1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8
3105	2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8
3105	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8
3105	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8

3105	5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5	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8
3105	59	기타	8
3105	6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8
3105	90	기타	8

제 32 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제 3203 호·제 3204 호의 물품, 루미노
   (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제 3206 호), 제 3207 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
   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유리, 제 3212 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는 제외한다]

   나. 제 2936 호부터 제 2939 호까지, 제 2941 호, 제 3501 호부터 제 3504 호까지에 해당
   는 물품의 탄닌산염이나 그 밖의 탄닌 유도체

   다. 아스팔트로 만든 매스틱(mastic)이나 그 밖의 역청질의 매스틱(mastic)(제 2715 호

2. 제 3204 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
   커플러(coupler)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 3203 호·제 3204 호·제 3205 호·제 3206 호에는 착색제[제 3206 호의 경우에는 제 2530
   호나 제 28 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extender)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distemper) 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되지 않는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 박(箔)"이란 인쇄에 사용하는 엷은 시트(sheet)의 것(예: 색적 표지나 모자띠)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속의 가루(귀금속의 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에 부착시킨 것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1	1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8
3201	2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8

3201	90	기타	8
320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	10	합성 유기유연제	8
3202	90	기타	8
3203	00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4
		2. 기타	8
3204	12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3204	13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3204	14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3204	15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3204	16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3204	17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3204	19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9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8
3204	2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8
3204	90	기타	
		1.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	
		가.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나. 기타	8
		2. 기타	8
3205	00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 3203 호·제 3204 호·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8
3206	19	기타	8

3206	2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8
3206	4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	41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3206	42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8
3206	49	기타	8
3206	5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8
3207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	1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8
3207	20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8
3207	30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8
3207	4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320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	1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3208	2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3208	90	기타	8
3209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	1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3209	90	기타	8
3210	00	그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8
3211	00	조제 드라이어	8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	10	스탬프용 박(箔)	8
3212	90	기타	8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	10	세트인 것	8

3213	90	기타	8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	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8
3214	90	기타	8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	1	인쇄용 잉크	
3215	11	흑색	8
3215	19	기타	8
3215	90	기타	8

제 33 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천연 올레오레진(oleoresin)이나 제 1301 호·제 1302 호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

나. 비누나 제 3401 호의 기타 물품

다.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나 제 3805 호의 기타 물품

2. 제 3302 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 3301 호의 물질, 제 3301 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

3. 제 3303 호부터 제 3307 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하였는지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

4. 제 3307 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제품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3301	1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	12	오렌지유	5
3301	13	레몬유	5
3301	19	기타	5
3301	2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3301	24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5
3301	25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5
3301	29	기타	5
3301	30	레지노이드(resinoid)	8
3301	90	기타	
		1.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8
		2.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가. 아편에서 추출한 것	8
		나. 감초에서 추출한 것	8
		다. 홉(hop)에서 추출한 것	30
		라.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8

		마. 인삼에서 추출한 것	20
		바.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8
		사.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8
		아. 기타	8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	10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1. 식품공업용	5
		2. 음료공업용	
		가. 음료제조용 조제품	
		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30
		2) 기타	8
		나. 기타	5
3302	90	기타	8
3303	00	향수와 화장수	8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8
3304	20	눈화장용 제품류	8
3304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8
3304	9	기타	
3304	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3304	99	기타	8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	10	샴푸	5
3305	2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5
3305	30	헤어 래커(hair lacquer)	5
3305	90	기타	5
3306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	10	치약	8
3306	2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8
3306	90	기타	8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	10	면도용 제품류	8
3307	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8
3307	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8
3307	4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	41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8
3307	49	기타	8
3307	90	기타	8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

합물과 조제품(제 1517 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다.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foam)·목욕용 조제품(제 3305 호·제 3306 호·제 3307 호)

2. 제 3401 호에서 “비누”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 3401 호의 기타 물품에는 소독제·연마가루·충전제·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가루를 함유한 물품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여 제 3401 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은 제 3405 호의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 3402 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 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 분의 0.5 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 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 뉴턴(센티미터당 45 다인) 이하로 낮출 것

4. 제 3403 호에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란 제 27 류의 주 제 2 호의 물품을 말한다.

5. 제 3404 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가. 제 1516 호·제 3402 호·제 3823 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 1521 호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왁스(정제한 것인지 또는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광물성 왁스나 제 2712 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 3405 호나 제 3809 호 등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1	1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1	11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8
3401	19	기타	8

3401	2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8
3401	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1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11	음이온성	8
3402	12	양이온성	8
3402	13	비이온성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3402	19	기타	8
3402	20	소매용 조제품	
		1. 조제 세제	5
		2. 기타	8
3402	90	기타	
		1. 조제 세제	5

		2. 기타	8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	1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3403	1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8
3403	19	기타	8
3403	9	기타	
3403	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8
3403	99	기타	8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	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8
3404	90	기타	8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	1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8

3405	2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8
3405	3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8
3405	4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8
3405	90	기타	8
3406	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3407	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8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효모(제 2102 호)

   나. 제 30 류의 혈액 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 조제품(제 3202 호)

라. 효소계의 조제 침지제(沈漬劑), 조제 세제, 제 34 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 단백질(제 3913 호)

바. 인쇄공업용 젤라틴제품(제 49 류)

2. 제 3505 호에서 “덱스트린”이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 분해물품(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 1702 호로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501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	10	카세인(casein)	
		1. 커피 크리머 제조용	8
		2. 기타	20
3501	90	기타	
		1. 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가. 카세인산염(caseinate)	

		1) 커피 크리머 제조용	8
		2) 기타	20
		나.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20
		2. 카세인 글루(casein glue)	2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8
3502	19	기타	8
3502	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
3502	90	기타	8
3503	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8
3504	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8
3505	20	글루(glue)	8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	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3506	9	기타	
3506	91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8
3506	99	기타	8
3507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	1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8
3507	90	기타	8

주:

1. 이 류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주 제2호가목이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 “가연성 재료의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모양으로 포장한 것(예: 둥글넓적한(tablet) 모양,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연료와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한정한다)

나.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다. 수지 토치(torch)·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601	00	화약	8
3602	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8
3603	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8
3604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	10	불꽃제품	8
3604	90	기타	8
3605	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8
3606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	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8
3606	90	기타	8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주:

1. 이 류에서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주:

1. 영화필름 중 네거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포함한다.

2.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 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 미터로 하고, 50 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3. “합작영화”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	10	엑스선용	8
3701	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8
3701	3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도체 제조용	8
		2. 기타	
		가.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	8
		나. 기타	
		1)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3
		2) 기타	8

3701	9	기타	
3701	9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8
3701	99	기타	
		1. 반도체 제조용	3
		2. 기타	8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	10	엑스선용	8
3702	3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702	3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1. 영화필름	6.5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32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영화필름	6.5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39	기타	

		1. 영화필름	6.5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4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702	41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1. 영화필름	6.5
		2. 기타	8
3702	42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1. 영화필름	6.5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43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1. 영화필름	6.5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44	폭이 105 밀리미터 초과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 영화필름	6.5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5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2	52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 영화필름	6.5
		2. 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53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8
3702	54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1. 영화필름	6.5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55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1. 영화필름	6.5
		2. 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56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 영화필름	6.5
		2. 인쇄제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9	기타	
3702	96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1. 영화필름	6.5
		2. 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97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1. 영화필름	6.5
		2. 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2	98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 영화필름	6.5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8
3703		사진 인화지·판지·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	10	롤 모양(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3703	20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8
3703	90	기타	8
3704	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가. 영화용	무세
		나.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캘린더 제작용으	8

		로 한정한다)	
		다. 반도체 제조용	8
		라. 기타	무세
		2. 사진 인화지·판지·직물	8
3705	00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1. 오프셋 복사용	
		가.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8
		나. 기타	무세
		2. 기타	
		가. 반도체 제조용	3
		나. 기타	무세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	1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240 원/미터
		2. 뉴스용	6 원/미터
		3. 합작영화	

		가. 편집용 필름(rush)	35 원/미터
		나.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600 원/미터
		다.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100 원/미터
		4.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35 원/미터
		5.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 40 밀리미터 이하인 것	
		가. 네거티브	1,160 원/미터
		나. 포지티브	240 원/미터
		6. 폭이 4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가. 네거티브	2,040 원/미터
		나. 포지티브	340 원/미터
3706	90	기타	
		1.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12 원/미터
		2. 뉴스용	6 원/미터
		3. 합작영화	

		가. 편집용 필름(rush)	35 원/미터
		나.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600 원/미터
		다.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100 원/미터
		4.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35 원/미터
		5. 폭이 20 밀리미터 이하인 것	
		가. 네거티브	60 원/미터
		나. 포지티브	12 원/미터
		6. 폭이 20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미만인 것	
		가. 네거티브	1,160 원/미터
		나. 포지티브	240 원/미터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	10	감광유제	8
3707	90	기타	
		1.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가. 반도체 제조용	8
		나.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다. 기타	8
		2. 기타	8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인조 흑연(제 3801 호)

2) 제 3808 호에 열거한 방식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 3813 호)

4) 주 제 2 호의 보증된 참조물질

5) 주 제 3 호가목이나 다목의 물품

나.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
물(일반적으로 제 2106 호)

다.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제 26 류(제 2620 호)의 주 제 3 호가목이나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찌꺼기를 포함하며 하수 찌꺼기는 제외한다]

라. 의약품(제 3003 호·제 3004 호)

마. 비금속(卑金屬) 추출용이나 비금속(卑金屬) 화학혼합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촉매(제 2620 호),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이미 사용한 촉매(제 7112 호), 금속·금속합금으로 구성된 촉매(예: 미세하게 분리된 가루나 직조 거즈의 모양)(제 14 부나 제 15 부)

2. 가. 제 3822 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나. 제 28 류나 제 29 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 3822 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3. 제 3824 호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나. 퓨젤유(fusel oil)와 디펠유(dippel oil)

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라.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그 밖의 수정액·수정테이프(제 9612 호의 것은 제외한다)

마.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예: 세겔콘(Seger cone)]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건설 쓰레기와 해체 쓰레기를 말하며, 생활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음식물 등 다양한 재료와 부서진 가구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과 폐전지 등과 같은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나. 산업 폐기물

다. 제 30 류의 주 제 4 호차목의 폐(廢)의료용품

라. 주 제 6 호가목의 감염성 폐기물

5. 제 3825 호에서 “하수 찌꺼기”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전(前)처리된 폐기물·오물·안정화 되지 않은 찌꺼기를 포함한다(제 31 류의 비료로 사용되는 안정화된 찌꺼기는 제외한다).

6. 제 3825 호의 “그 밖의 폐기물”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 2710 호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감염성 폐기물[의학연구, 검진, 치료, 그 밖의 내과·외과·치과·수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폐기물을 말하며, 병원균과 의약물질을 함유하므로 특수 처리과정이 필요한 것(예: 오염된 의류, 사용한 장갑·주사기)을 말한다]

나. 폐(廢)유기용제

다.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7. 제 3826 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3808.52 호와 제 3808.59 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 3808 호의 물품
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앨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톡사핀), 캡타폴(IS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
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
[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
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
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
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
(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
(ISO)(메틸-파라티온), 펜타- 및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펜타클로로페놀(ISO)과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
닐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
소호 제 3808.59 호에는 또한 베노밀(ISO), 카보퓨란(ISO), 타이람(ISO)의 혼합물을
유하는 분제(粉劑) 제형(劑形)도 포함된다.

2. 소호 제 3808.61 호부터 제 3808.69 호까지는 알파-사이퍼메트린(ISO), 벤디오카
(ISO), 비펜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사이플루트린(ISO), 델타메트린(INN
ISO), 에토펜프록스(INN), 페니트로티온(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말라티
(ISO), 피리미포스-메틸(ISO) 또는 프로폭수르(ISO)를 함유하는 제 3808 호의 물품
을 포함한다.

3. 소호 제 3824.81 호부터 제 3824.88 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
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
[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
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 술폰산,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

미드,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 또는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로모디페닐 에테르.

4. 소호 제 3825.41 호와 제 3825.49 호에서 “폐유기용제”는 주로 유기성 용제를 함유하지만 더 이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폐기물이다(용제(溶劑)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4
		2. 기타	8
3801	2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8
3801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8
3801	90	기타	8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	10	활성탄	8
3802	90	기타	8
3803	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3804	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8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	10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	8
3805	90	기타	8
3806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	10	로진(rosin)과 수지산	8
3806	20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8
3806	30	에스테르 검(ester gum)	8
3806	90	기타	8
3807	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	5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3808	52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 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8
3808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3808	6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물품	
3808	61	순중량이 300 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3808	62	순중량이 300 그램 초과 7.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3808	6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3808	9	기타	
3808	91	살충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3808	92	살균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2. 기타	8
3808	93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8
3808	94	소독제	8
3808	99	기타	8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	1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3809	9	기타	

3809	91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8
3809	92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8
3809	93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8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	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8
3810	90	기타	8
3811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1	1	안티녹(anti-knock)제	
3811	11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3811	19	기타	8
3811	2	윤활유 첨가제	
3811	21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5
3811	29	기타	5

3811	90	기타	8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	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8
3812	20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8
3812	3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	31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8
3812	39	기타	8
3813	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8
3814	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nish) 제거제	8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5	1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	11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8
3815	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8
3815	19	기타	8
3815	90	기타	8

3816	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3817	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3818	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8
3819	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3820	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8
3821	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8
3822	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002 호·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1. 진단용 시약	8
		2. 실험실용 시약	8
		3. 보증된 참조물질(이 류의 주 제 2 호가목에 따른 것으로서 제 4 류, 제 13 류, 제 15 류, 제 17 류, 제 22 류, 제 25 류부터 제 27 류까지, 제 30 류부터 제 41 류까지, 제 68 류부터 제 81 류까지에 해당하는 물질)	
		가.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무세

		나. 이 표에서 세율이 1%인 것	1
		다. 이 표에서 세율이 2%인 것	2
		라. 이 표에서 세율이 3%인 것	3
		마. 이 표에서 세율이 4%인 것	4
		바. 이 표에서 세율이 5%인 것	5
		사. 이 표에서 세율이 5.4%인 것	5.4
		아. 이 표에서 세율이 6.5%인 것	6.5
		자. 이 표에서 세율이 7%인 것	7
		차. 이 표에서 세율이 8%인 것	8
		카. 이 표에서 세율이 10%인 것	10
		타. 이 표에서 세율이 20%인 것	20
		파. 이 표에서 세율이 27%인 것	27
		하. 이 표에서 세율이 30%인 것	30
		거. 이 표에서 세율이 36%인 것	36
		너. 이 표에서 세율이 40%인 것	40
		더. 이 표에서 세율이 50%인 것	50
		러. 소호 제3706.10호의 1, 소호 제3706.10호의 5의 나, 소호 제3706.90호의 6의 나의 것	240원/미터

		머. 소호 제3706.10호의 2, 소호 제3706.90호의 2의 것	6원/미터
		버. 소호 제3706.10호의 3의 가, 소호 제3706.10호의 4, 소호 제3706.90호의 3의 가, 소호 제3706.90호의 4의 것	35원/미터
		서. 소호제3706.10호의 3의 나, 소호 제3706.90호의 3의 나의 것	600원/미터
		어. 소호 제3706.10호의 3의 다, 소호 제3706.90호의 3의 다의 것	100원/미터
		저. 소호 제3706.10호의 5의 가, 소호 제3706.90호의 6의 가의 것	1,160원/미터
		처. 소호 제3706.10호의 6의 가의 것	2,040원/미터
		커. 소호 제3706.10호의 6의 나의 것	340원/미터
		터. 소호 제3706.90호의 1, 소호 제3706.90호의 5의 나의 것	12원/미터
		퍼. 소호 제3706.90호의 5의 가의 것	60원/미터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	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	11	스테아린산	8
3823	12	올레인산	8
3823	13	톨유(tall oil) 지방산	8

3823	19	기타	8
3823	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1. 세틸 알코올	5
		2. 스테아릴 알코올	5
		3. 올레일 알코올	5
		4. 라우릴 알코올	3
		5.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5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1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8
3824	3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3824	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8
3824	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8
3824	6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8

		다)	
3824	7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	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3824	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8
3824	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8
3824	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3824	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8
3824	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8
3824	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8
3824	78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3824	79	기타	8
3824	8	이 류의 소호주 제3호의 물품	
3824	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8
3824	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	8

		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3824	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8
3824	84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8
3824	85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8
3824	86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8
3824	87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8
3824	88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8
3824	9	기타	
	91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8
	99	기타	
		1. 크롬광 배소물	5

		2.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나. 기타	8
		3. 기타	8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	10	생활폐기물	8
3825	20	하수 찌꺼기	8
3825	30	감염성 폐기물	8
3825	4	폐유기용제	
3825	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8
3825	49	기타	8
3825	5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8
3825	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3825	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8
3825	69	기타	8
3825	90	기타	8

3826	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 6 부나 제 7 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한 것은 제 6 부나 제 7 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한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 3918 호나 제 3919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 49 류로 분류한다.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 11 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2710 호나 제 3403 호의 조제 윤활유

나. 제 2712 호나 제 3404 호의 왁스

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 29 류)

라. 헤파린과 그 염(제 3001 호)

마.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제 3208 호)과 제 3212 호의 스탬프용 박(箔)

바. 제 3402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

사. 런검(run gum)이나 에스테르검(ester gum)(제 3806 호)

아.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의 것(제 3811 호)]

자. 폴리글리콜·실리콘이나 그 밖의 제 39 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유압액(제 3819 호)

차.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실험용 시약을 붙인 것(제 3822 호)

카. 제 40 류의 합성고무나 이들의 제품

타. 안장과 굴레(제 4201 호), 제 4202 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

파. 제 46 류의 조물·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이나 그 밖의 물품

하. 제 4814 호의 벽 피복재

거. 제 11 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너. 제 12 부의 물품(예: 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더. 제 7117 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러. 제 16 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

머. 제 17 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

버. 제 90 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

서. 제 91 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어. 제 92 류의 물품(예: 악기류나 이들의 부분품)

저. 제 94 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처.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커. 제 96 류의 물품[예: 브러시·단추·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빗·흡연용 파이프의 마우스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나 이와 유사한 것·보온병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및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제 3901 호부터 제 3911 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가. 섭씨 300 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 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제 3901 호·제 3902 호)

나.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 수지(제 3911 호)

다. 평균 5 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 3910 호)

마. 레졸(resol)(제 3909 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

4.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 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5.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7. 제 3915 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

8. 제 3917 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
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
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 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
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
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

9. 제 3918 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 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
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grain)장식·엠보싱
(embossing)장식·착색·디자인인쇄나 그 밖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10. 제 3920 호와 제 3921 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제 54 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랙
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11. 제 3925 호는 제 2 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나. 마루·벽·칸막이·천장·지붕 등의 건축용 재료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라.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마.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과 이와 유사한 장벽

바.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과 연결구류

사. 조립용과 영구시설용 대형선반(예: 상점용·작업장용·창고용)

아. 장식용 건축물[예: 플루팅(fluting)·둥근 지붕·비둘기장]

자. 건물의 문·창·계단·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와 설비품[예: 노브(knob)·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switch 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

소호주:

1.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 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소호 제 3901.30 호·제 3901.40 호·제 3903.20 호·제 3903.30 호·제 3904.30 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 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

3)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해당 물품이 다른 소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로 분류한다.

4) 위의 1)·2)·3)에 해당하지 않는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나. 동일 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1)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2)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의 적절한 소호로 분류한다.

※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2. 소호 제 3920.43 호에서 “가소제”에는 2 차 가소제를 포함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제 1 절 일차제품(primary form)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8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8
3901	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8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8

3901	90	기타	8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10	폴리프로필렌	8
3902	20	폴리이소부틸렌	8
3902	30	프로필렌 공중합체	8
3902	90	기타	8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	1	폴리스티렌	
3903	11	발포성의 것	8
3903	19	기타	8
3903	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8
3903	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8
3903	90	기타	8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3904	2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	21	가소화하지 않은 것	8
3904	22	가소화한 것	8
3904	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8
3904	4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8
3904	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8
3904	6	플루오르 중합체	
3904	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8
3904	69	기타	8
3904	90	기타	8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	1	폴리(초산비닐)	
3905	12	물에 분산된 것	8
3905	19	기타	8
3905	2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	21	물에 분산된 것	8

3905	29	기타	8
3905	3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3905	9	기타	
3905	91	공중합체(共重合體)	8
3905	99	기타	8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	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8
3906	90	기타	8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10	폴리아세탈수지	8
3907	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8
3907	30	에폭시수지	8
3907	40	폴리카보네이트	8
3907	50	알키드수지	8
3907	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	61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8
3907	69	기타	8

3907	70	폴리(락트산)	8
3907	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3907	91	불포화의 것	8
3907	99	기타	8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	10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8
3908	90	기타	8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	10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8
3909	20	멜라민수지	8
3909	3	그 밖의 아미노수지	
3909	31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8
3909	39	기타	8
3909	40	페놀수지	8
3909	50	폴리우레탄	8

3910	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8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	10	석유수지·쿠마론·인덴·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	8
3911	90	기타	8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	1	초산셀룰로오스	
3912	11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3912	12	가소화한 것	5
3912	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8
3912	3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	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8
3912	39	기타	8
3912	90	기타	8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	10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8
3913	90	기타	8
3914	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8
		제 2 절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과 반제품·완제품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5	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15	2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15	3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15	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	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16	2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16	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	

		(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	10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8
3917	2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	
3917	21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17	22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17	23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17	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3917	3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	
3917	31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8
3917	32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3917	33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3917	39	기타	8
3917	40	연결구류	8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	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18	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	1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8
3919	90	기타	8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	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20	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20	3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20	4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	43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8
3920	49	기타	8
3920	5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0	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8
3920	59	기타	8
3920	6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	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8
3920	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8
3920	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3920	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3920	7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	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8
3920	7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8
3920	79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8
3920	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	91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8
3920	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8
3920	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8
3920	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8
3920	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항공기용	8
		2. 기타	
		가.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	4

		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나. 기타	8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1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8
3921	12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8
3921	13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3921	14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8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나. 기타	8
		2.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나. 기타	8
		3.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8
		4.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나 그 밖	8

		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 그 밖의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8
		6. 기타	8
3921	90	기타	8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	10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	8
3922	2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8
3922	90	기타	8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	2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	2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8
3923	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3923	3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	4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	5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	90	기타	8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4	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8
3924	90	기타	8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5	1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3925	2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3925	3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8
3925	90	기타	8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	1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8
3926	2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8
3926	30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8
3926	4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8

3926	90	기타	8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고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천연고무, 발라타(balata), 구타페르카(gutta-percha), 구아율(guayule), 치클(chicle),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합성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factice)와 이들의 재생품[가황(加黃)한 것인지 또는 경질(硬質)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11 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나. 제 64 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다. 제 65 류의 모자류(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라. 제 16 부의 기계류, 전기기기나 이들의 부분품(모든 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

   마. 제 90 류·제 92 류·제 94 류·제 96 류의 물품

   바. 제 95 류의 물품(운동용 장갑, 벙어리장갑과 제 4011 호부터 제 4013 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3. 제 4001 호부터 제 4003 호까지, 제 4005 호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만을 적용한다.

가. 액체 상태와 페이스트(paste)상태의 물품[라텍스 (프리-벌커나이즈드
(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 밖의 분산액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베일(bale)·가루·알갱이·부스러기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4. 이 류의 주 제 1 호와 제 4002 호에서 "합성고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
고, 섭씨 18 도와 29 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 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
고, 원래의 길이의 2 배로 늘린 후 5 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 배 이하로 되돌아
가는 불포화 합성물질(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나 가황촉진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
한 물질이 첨가되어 질 수 있다. 주 제 5 호나목의 2)와 3)에 규정된 물질은 첨가될
수 있으나, 증량제·가소제·충전제와 같이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나. 티오플라스트(thioplast)(티엠)

다. 플라스틱과 그라프팅(grafting)이나 혼합으로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解重合)된
천연고무, 포화 합성고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목의 가황·늘림·복원
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가. 제 4001 호와 제 4002 호에는 응고 전후에 다음을 배합한 고무나 고무 혼합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가황제·가황촉진제·지연제·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 라텍
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2) 안료나 그밖의 착색제(식별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3) 가소제나 증량제[유전(油展)고무의 경우에는 광유(mineral oil)는 제외한다]·충전
제·보강제·유기용제나 그 밖의 물질(나목의 물질은 제외한다)

나. 제 4001 호와 제 4002 호에는 다음을 함유하고 있는 고무나 고무 혼합물을 포함한다
(고무나 고무 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1) 유화제나 점착방지제

2) 소량의 유화분해 잔류물

3)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 고무 라텍스 제조용)·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 고무 라텍스 제조용)·산화방지제·응고제·붕해제·내동제·해교제·방부제·안
정제·점도조절제와 이와 유사한 특수 목적의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
우로 한정한다)

6. 제 4004 호에서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이란 고무의 제
조나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절단·마모나 그 밖의 이유로 명백히 고무제품으로서
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실(thread)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 4008 호의 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로 분류한다.

8. 제 4010 호의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에는 고무를 침투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cord)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9. 제 4001 호·제 4002 호·제 4003 호·제 4005 호·제 4008 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
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
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제 4008 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	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4001	2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	2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1. 알·에스·에스 1 엑스	무세
		2. 알·에스·에스 1 호	무세
		3. 알·에스·에스 2 호	무세
		4. 알·에스·에스 3 호	무세
		5. 알·에스·에스 4 호	무세
		6. 알·에스·에스 5 호	무세
4001	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무세
4001	29	기타	무세
4001	3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1. 치클검(chicle gum)	2

		2. 기타	2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	1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	11	라텍스	8
4002	19	기타	8
4002	20	부타디엔 고무(BR)	8
4002	3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이나 BIIR)	
4002	31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1. 라텍스	5
		2. 기타	5
4002	39	기타	
		1. 라텍스	5
		2. 기타	5
4002	4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	41	라텍스	8
4002	49	기타	8
4002	5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	51	라텍스	8
4002	59	기타	8
4002	60	이소프렌 고무(IR)	8
4002	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8
4002	8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8
4002	9	기타	
4002	91	라텍스	8
4002	99	기타	8
4003	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4004	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3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	1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8
4005	2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4005	9	기타	
4005	91	판·시트(sheet)·스트립	8
4005	99	기타	8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4006	1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8
4006	90	기타	8
4007	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고무실	5
		2. 고무끈	8
4008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4008	1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	11	판·시트(sheet)·스트립	8
4008	19	기타	8
4008	2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	21	판·시트(sheet)·스트립	8

4008	29	기타	8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9	1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	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4009	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4009	2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	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4009	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4009	3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	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4009	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4009	4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	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4009	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10	1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	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4010	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4010	19	기타	8
4010	3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	
4010	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010	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4010	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010	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4010	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4010	36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	8

		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4010	39	기타	8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	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5
4011	20	버스용·화물차용	5
4011	30	항공기용	5
4011	40	모터사이클용	5
4011	50	자전거용	5
4011	70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4011	80	건설용·광산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4011	90	기타	5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4012	1	재생타이어	
4012	11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4012	12	버스용·화물자동차용	8

4012	13	항공기용	5
4012	19	기타	8
4012	20	중고 공기타이어	
		1. 항공기용	5
		2. 기타	8
4012	90	기타	
		1. 항공기용	5
		2. 기타	8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	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화물차용	8
4013	20	자전거용	8
4013	90	기타	
		1. 항공기용	5
		2. 기타	8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4	10	콘돔	8
4014	90	기타	8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4015	1	장갑, 벙어리장갑	
4015	11	외과용	8
4015	19	기타	8
4015	90	기타	8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	1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8
4016	9	기타	
4016	91	바닥깔개와 매트	8
4016	92	지우개	8
4016	93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8
4016	94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4016	95	그 밖의 팽창성 제품	8
4016	99	기타	8

4017	00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8

제 8 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 원피의 페어링(paring)이나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 0511 호)

   나. 제 0505 호나 제 6701 호의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

   다.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생 것,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제 43 류). 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 마속(馬屬)동물, 면양이나 어린 양[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은 제외한다], 산양(예멘·몽고·티베트 산양은 제외한다), 돼지[페카리(peccary)를 포함한다], 샤무아(chamois), 가젤(gazelle),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순록, 엘크(elk), 사슴, 로벅(roebuck), 개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제 41 류로 분류한다.

2. 가. 제 4104 호부터 제 4106 호까지는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유연처리된(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 원피는 제외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제 4101 호부터 제 4103 호까지로 분류될 수 있다)

나. 제 4104 호부터 제 4106 호까지에서 “크러스트”는 재유연처리된 원피와 건조하기 전에 색을 입히거나 기름을 바른 원피를 포함한다.

3. 이 표에서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란 제 4115 호의 물품만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	2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무세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4101	50	전신 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가. 컨벤셔널(conventional)	
		1) 카우하이드(cow hide)	무세
		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무세
		3) 옥스하이드(ox hide)	무세
		4) 불하이드(bull hide)	무세
		5) 기타	무세
		나. 트림드(trimmed)와 후레쉬드(fleshed)	
		1) 카우하이드(cow hide)	무세
		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무세
		3) 옥스하이드(ox hide)	무세
		4) 불하이드(bull hide)	무세
		5) 기타	무세
		다. 기타	무세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4101	90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가. 버트(butt)와 벤드(bend)	무세
		나. 기타	
		1) 송아지의 원피	무세
		2) 기타	무세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	1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무세
4102	2	털을 제거한 것	
4102	21	산처리한 것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무세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4102	29	기타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무세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	20	파충류의 원피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가. 뱀의 원피	무세
		나. 악어의 원피	무세
		다. 기타	무세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4103	30	돼지의 원피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무세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4103	90	기타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가. 장어류의 원피	무세

		나. 캥거루의 원피	무세
		다.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무세
		라. 기타	무세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4	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	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4104	19	기타	3
4104	4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	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4104	49	기타	3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	1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4105	3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6	2	산양의 원피	
4106	2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4106	2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4106	3	돼지의 원피	
4106	3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4106	3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4106	40	파충류의 원피	5
4106	9	기타	
4106	9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4106	9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4107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07	1	전신 가죽	
4107	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4107	1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4107	19	기타	5
4107	9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	9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4107	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4107	99	기타	5
4112	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4113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	10	산양의 가죽	5
4113	20	돼지의 가죽	5
4113	30	파충류의 가죽	5
4113	90	기타	5

4114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	10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
4114	2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1.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2.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3.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
4115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	1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4115	2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3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가죽”은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나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제 3006 호)

   나.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외면에 모피나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 벙어리장갑은 제외한다](제 4303 호나 제 4304 호)

   다. 제품으로 된 망(제 5608 호)

   라. 제 64 류의 물품

   마. 제 65 류의 모자나 그 부분품

   바. 제 6602 호의 채찍·승마용 채찍이나 기타의 물품

   사. 커프링크(cuff-link)·팔찌나 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제 7117 호)

   아. 따로 제시되는 등자(鐙子)·비트·구리로 만든 장식품·버클과 같은 마구용 용구와 가식용품(주로 제 15 부)

   자. 현과 드럼이나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과 그 밖의 악기 부분품(제 9209 호)

차. 제 94 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 9606 호의 단추,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스냅파스너(snap-fastener), 프레스스터드(press-stud), 단추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3. 가. 제 4202 호에서는 주 제 2 호의 것 외에 다음도 제외한다.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한정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923 호)

2) 조물 재료로 만든 물품(제 4602 호)

나. 제 4202 호와 제 4203 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일부분이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진주·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된 것은 비록 이들 물품의 일부분이 부착구나 장식 이상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그 일부분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 71 류로 분류한다.

4. 제 4203 호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장갑과 벙어리장갑(운동용·보호용을 포함한다), 앞치마와 그 밖의 보호용 의류, 바지 멜빵, 의류용 벨트, 띠, 손목끈[휴대용 시곗줄(제 9113 호)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201	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8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 케이	

		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	1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	1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8
4202	1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4202	19	기타	8
4202	2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	2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8
4202	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4202	29	기타	8

4202	3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	3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8
4202	3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4202	39	기타	8
4202	9	기타	
4202	9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8
4202	9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4202	99	기타	8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	10	의류	13
4203	2	장갑류	
4203	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13
4203	29	기타	13
4203	30	벨트와 띠	13
4203	4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13

4205	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8
4206	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8

제 43 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에서 “모피”(제 4301 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
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제 0505 호나 제 6701 호)

나. 제 41 류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생 원피(제 41 류의 주 제 1 호다목 참조)

다. 가죽과 모피,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과 벙어리장갑(제 4203 호)

라. 제 64 류의 물품

마. 제 65 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3. 제 4303 호는 다른 재료를 더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 의류·의류의 부분품과 부
품, 그 밖의 제품 모양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4.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주 제 2 호의 것과 모피·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은 제 4303 호나 제 4304 호로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란 양모·동물의 털·그 밖의 섬유를 가죽·직물·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주로 제 5801 호나 제 6001 호).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제 4102 호·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	1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4301	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브로드테일(Broadtail), 카라쿨(Caracul),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4301	6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4301	80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1. 오파섬(opossum)의 것	3
		2. 라쿤(raccoon)의 것	3

		3. 코요테의 것	3
		4. 토끼의 것	3
		5. 사향뒤쥐의 것	3
		6. 기타	3
4301	90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4302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302	1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	11	밍크의 것	5
4302	19	기타	5
4302	2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밍크의 것	5
		2. 토끼의 것	5
		3. 비버(beaver)의 것	5
		4. 사향뒤쥐의 것	5

		5. 여우의 것	5
		6. 친칠라의 것	5
		7. 기타	
		가. 라쿤(raccoon)의 것	5
		나. 코요테의 것	5
		다. 기타	5
4302	3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3	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16
4303	90	기타	16
4304	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8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칩 모양, 대팻밥,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목재(제 1211 호)

   나. 주로 편조하는 데 사용되는 대나무나 목질성인 그 밖의 재료(미가공 상태로 한정하며, 쪼개거나 세로 방향으로 톱질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1401 호)

   다. 칩 모양, 대팻밥, 잘게 부순 것,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으로 사용하는 목재(제 1404 호)

   라. 활성탄(제 3802 호)

   마. 제 4202 호의 물품

   바. 제 46 류의 물품

   사. 제 64 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아. 제 66 류의 물품[예: 산류(傘類)·지팡이와 이들의 부분품]

   자. 제 6808 호의 물품

   차. 제 7117 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카. 제 16 부나 제 17 부의 물품(예: 기계 부분품, 케이스, 커버, 기기용 캐비닛, 차량품)

   타. 제 18 부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악기와 이들의 부분품)

파. 화기의 부분품(제 9305 호)

하. 제 94 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립식 건축물)

거.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너. 제 96 류의 물품(예: 흡연용 파이프류와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 그리고 일각대·이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9603 호의 제품용 목재로 된 몸체와 손잡이는 제외한다)

더. 제 97 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란 화학적·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한 것은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밀도나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 4414 호부터 제 4421 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

4. 제 4410 호·제 4411 호·제 4412 호의 물품은 제 4409 호에서 규정한 모양으로 가공한 것, 굽은 것(curved), 물결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성형한 것,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로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제 4417 호는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을 제 82 류의 주 제 1 호의 재료로 만든 공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위의 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 각 호에 열거된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그 밖의 재료가 포함된다.

소호주:

1. 소호 제 4401.31 호에서 "목재 펠릿(pellet)"이란 기계 목재가공업, 가구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팻밥, 톱밥, 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직접 압축하거

나 중량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펠릿(pellet)은 직경이 25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 밀리미터 이하인 원통형이다.

국내주:

1. 소호 제 4412.31 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rmosia)·아코(Ako)·아란(Alan)·안디로바(Andiroba)·아닌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 clair)·보세폰세(Bossé 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디벳토우(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제(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종콩(Jongkong)·카풀(Kapur)·켐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쿠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메라완(Merawan)·멜바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꾸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콜(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 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펠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퍼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토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	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4401	11	침엽수류	2
4401	12	활엽수류	2
4401	2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	21	침엽수류	2
4401	22	활엽수류	
		1. 펄프 제조용	무세
		2. 기타	2
4401	3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401	31	목재 펠릿(pellet)	2
4401	39	기타	2
4401	40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4402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	10	대나무로 만든 것	
		1. 성형 목탄	2
		2. 기타	2
4402	90	기타	
		1. 성형 목탄	2
		2. 기타	2
4403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	1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403	11	침엽수류	무세
4403	12	활엽수류	
		1. 열대산 목재	무세
		2. 기타	무세
4403	2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403	21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적송	무세

		2.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무세
		3. 기타	무세
4403	22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1. 적송	무세
		2.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무세
		3. 기타	무세
4403	23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무세
		2.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무세
4403	24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1.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무세
		2.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무세
4403	25	기타(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삼나무	무세
		2. 미송	무세

		3. 낙엽송	무세
		4.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무세
		5. 기타	무세
4403	26	기타	
		1. 삼나무	무세
		2. 미송	무세
		3. 낙엽송	무세
		4.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무세
		5. 기타	무세
4403	4	기타(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3	4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무세
4403	49	기타	
		1.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무세
		2.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티크(Teak)·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가. 티크(Teak)	무세
		나. 케루잉(Keruing)	무세
		다. 카풀(Kapur)	무세
		라. 제루통(Jelutong)	무세
		마. 기타	무세
		3.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사펠리(Sapelli)·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코레(Makoré)·이로코(Iroko)	무세
		4. 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무세
		5.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무세
		6. 기타	무세
4403	9	기타	
4403	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무세
4403	93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4403	94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4403	95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4403	96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4403	97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1. 포플러	무세
		2. 사시나무	무세
4403	98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의 것	무세
4403	99	기타	
		1. 황양(Barxylum)·화리(Rufum)·철도목(Bombay blackwood)·자단(Rosewood)·흑단(Ebony wood)·히커리(Hickory)·물푸레나무·호두나무	
		가. 자단(Rosewood)	무세
		나. 흑단(Ebony wood)	무세
		다. 물푸레나무	무세
		라. 호두나무	무세
		마. 기타	무세
		2.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무세
		3. 단풍나무·느릅나무·피나무	
		가. 단풍나무	무세

		나. 느릅나무	무세
		다. 피나무	무세
		4. 오동나무	무세
		5. 기타	무세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	10	침엽수류	
		1. 목재의 막대(stick)	5
		2. 기타	5
4404	20	활엽수류	
		1. 목재의 막대(stick)	5
		2. 기타	5
4405	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5
4406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4406	1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406	11	침엽수류	5
4406	12	활엽수류	5
4406	9	기타	
4406	91	침엽수류	5
4406	92	활엽수류	5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	1	침엽수류	
4407	11	소나무[피누스(*Pinus*)종]의 것	
		1. 적송	5
		2.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3. 기타	5
4407	12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	5
4407	19	기타	
		1. 삼나무	5
		2. 미송	5
		3.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5

		4. 낙엽송	5
		5. 편백나무	5
		6. 기타	5
4407	2	열대산의 목재의 것	
4407	21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5
4407	22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5
4407	25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5
4407	26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5
4407	27	사펠리(Sapelli)	5
4407	28	이로코(Iroko)	5
4407	29	기타	
		1.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5
		2. 티크(Teak)	5
		3.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	5

		(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4. 기타	5
4407	9	기타	
4407	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5
4407	92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5
4407	93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5
4407	94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5
4407	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5
4407	96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	5
4407	97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5
4407	99	기타	
		1. 황양(Barxylum)·화리(Rufum)·철도목(Bombay blackwood)·자단(Rosewood)·흑단(Ebony wood)·히커리(Hickory)·호두나무	
		가. 자단(Rosewood)	5
		나. 흑단(Ebony wood)	5
		다. 호두나무	5
		라. 기타	5

		2.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5
		3. 느릅나무·피나무	
		가. 느릅나무	5
		나. 피나무	5
		4. 오동나무	5
		5. 기타	5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	10	침엽수류	
		1.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2. 기타	
		가. 합판 제조용	2
		나. 무늬목	3
		다. 기타	5
4408	3	열대산 목재의 것	

4408	3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1.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2. 기타	
		가.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나.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4408	39	기타	
		1.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2. 기타	
		가. 티크(Teak)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나. 화이트라왕(White Lauan)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다. 시포(Sipo)·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아까쥬 다푸리케(Acajou d'Afrique)·사펠리(Sapelli)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라. 림바(Limba)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마. 마호가니(Mahogany)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바. 기타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4408	90	기타	
		1.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2. 기타	
		가. 황양(Barxylum)·화리(Rufum)·철도목(Bombay blackwood)·자단(Rosewood)·흑단(Ebony wood)·히커리(Hickory)·물푸레나무·호두나무·참나무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나.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다.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느릅나무·자작나무·피나무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라. 오동나무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마. 기타	
		1) 합판 제조용	2
		2) 무늬목	3
		3) 기타	5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	10	침엽수류	8
4409	2	활엽수류	
4409	21	대나무로 만든 것	8
4409	22	열대산 목재의 것	8
4409	29	기타	8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410	1	목재로 만든 것	
4410	11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4410	12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8
4410	19	기타	8
4410	90	기타	8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11	1	중밀도 섬유판(MDF)	
4411	12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4411	13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4411	14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4411	9	기타	
4411	92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8
4411	93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인 것	8
4411	94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8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10	대나무로 만든 것	8
4412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 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8
4412	33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느릅나무[울무스(*Ulmus*)종]·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히커리[카르야(*Carya*)종]·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라임[틸리아(*Tilia*)종]·단풍나무[아서(*Acer*)종]·참나무[코커스(*Quercus*)종]·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포플러와 사	8

		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	34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 4412.33 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2	3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2	9	기타	
4412	94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8
4412	99	기타	8
4413	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플레이트(plate) 모양, 스트립(strip) 모양,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4	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4415	1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8
4415	20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8

4416	00	나무로 만든 통, 배럴(barrel), 배트(vat), 텁(tub),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8
4417	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8
4418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	1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8
4418	20	문·문틀·문지방	8
4418	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8
4418	50	지붕을 이는 판자	8
4418	60	기둥과 들보	8
4418	7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	73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8
4418	74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8	75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8	79	기타	8
4418	9	기타	
4418	91	대나무로 만든 것	8

4418	99	기타	8
4419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419	1	대나무로 만든 것	
4419	11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8
4419	12	젓가락	8
4419	19	기타	8
4419	90	기타	8
4420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420	10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
4420	90	기타	8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	10	옷걸이	8
4421	9	기타	
4421	91	대나무로 만든 것	8
4421	99	기타	8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64 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 65 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50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	1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4501	90	기타	8
4502	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 판 모양,	8

		시트(sheet) 모양,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4503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503	10	마개	8
4503	90	기타	8
4504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	
4504	10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8
4504	90	기타	8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주:

1.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strip)이나 넓은 잎에서 얻은 그 밖의 스트립(strip)],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 다만,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펠트(felt)·부직포의 스트립(strip), 사람 머리카락, 말의 털,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과 실, 제 54 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4814 호의 벽 피복재

나. 끈, 배의 밧줄(cordage), 로프, 케이블(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5607 호)

다. 제 64 류나 제 65 류의 신발류·모자류와 이들의 부분품

라.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로 만든 차량과 차체(제 87 류)

마. 제 94 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3. 제 4601 호에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이란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시트(sheet) 모양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적용 섬유재료인지에 상관없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4601	2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	21	대나무로 만든 것	8

4601	22	등나무로 만든 것	8
4601	29	기타	8
4601	9	기타	
4601	92	대나무로 만든 것	8
4601	93	등나무로 만든 것	8
4601	94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8
4601	99	기타	8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4602	1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2	11	대나무로 만든 것	8
4602	12	등나무로 만든 것	8
4602	19	기타	8
4602	90	기타	8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주:

1. 제 4702 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 분의 18 이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 도에서 1 시간 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소다펄프와 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 분의 92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 분의 88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의 경우 회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701	00	기계목재펄프	
		1.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무세
4702	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3	1	표백하지 않은 것	
4703	11	침엽수류로 만든 것	무세
4703	19	활엽수류로 만든 것	무세
4703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	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무세
4703	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무세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4	1	표백하지 않은 것	
4704	11	침엽수류로 만든 것	무세
4704	19	활엽수류로 만든 것	무세
4704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	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무세
4704	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무세
4705	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무세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	1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무세

4706	2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무세
4706	30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4706	9	기타	
4706	91	기계펄프	
		1.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무세
4706	92	화학펄프	
		1.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무세
4706	93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1.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무세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7	1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무세
4707	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4707	3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무세

		유사한 인쇄물)	
4707	9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무세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종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판지(두께나 1 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30 류의 물품

   나. 제 3212 호의 스탬프용 박(箔)

   다.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 33 류)

   라. 종이나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 비누나 세척제를 침투·도포·피복한 것(제 3401 호)과 연마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것(제 3405 호)

   마. 제 3701 호부터 제 3704 호까지의 감광성 종이와 판지

   바. 진단용 시약이나 실험용 시약을 침투시킨 종이(제 3822 호)

   사.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 한 장의 종이나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이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 4814 호의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제 39 류)

아. 제 4202 호의 물품(예: 여행용구)

자. 제 46 류의 물품(예: 조물 재료의 제품)

차. 종이실(paper yarn)이나 그 직물제품(제 11 부)

카. 제 64 류나 제 65 류의 물품

타. 연마용 종이·판지(제 6805 호), 운모를 붙인 종이·판지(제 6814 호). 다만, 운모 가
를 도포한 종이나 판지는 이 류로 분류한다.

파. 종이나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箔)(일반적으로 제 14 부나 제 15 부)

하. 제 9209 호의 물품

거.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너. 제 96 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
이너]

3. 주 제 7 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며, 제 4801 호부터 제 4805 호까지는 캘린더가공·슈퍼
캘린더가공·광택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의사 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표면
사이징을 한 종이와 판지,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종
이·판지,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한다. 다만, 제 4803 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이 호들은 그 밖의 가공을 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이 류에서 “신문용지”란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 공정
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 사이징을 안 하거나 극
소량의 사이징을 한 것, 양면의 조활도(粗滑度) 파커프린트서프(Parker Print Surf)(1
메가파스칼)가 2.5 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초과,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65
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종이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28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8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5. 제 4802 호에서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 그리고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란 주로 표백펄프,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을 통해
얻은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다
만, 제 4802 호에서는 여과지·여과판지[티백(tea-bag)용지를 포함한다]·펠트지·펠트판
지는 제외한다.

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100 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서

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80 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2) 회분의 함유량이 100 분의 8 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80 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3) 회분의 함유량이 100 분의 3 초과 백색도가 100 분의 60 이상인 것

4) 회분의 함유량이 100 분의 3 초과 100 분의 8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 분의 60 미만
이며 파열강도지수가 2.5 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5) 회분의 함유량이 100 분의 3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 분의 60 이상이고 파열강도지

수가 2.5 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나.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체를 착색한 것

2) 백색도가 100 분의 60 이상으로서

가) 두께가 225 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거나

나) 두께가 225 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초과 508 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것

3) 백색도가 100 분의 60 미만이고, 두께가 254 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 분의 8 을 초과하는 것

6.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7. 그 밖의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제 4801 호부터 제 4811 호까지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은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8. 제 4803 호부터 제 4809 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9. 제 4814 호에서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이 경우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으로서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로 사용하는 데 모두 적합한 것은 제 4823 호로 분류한다.

가. 벽이나 천장의 장식에 적합하도록 폭이 45 센티미터 이상 160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종이로서 다음의 것

1)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표면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섬유플록 등으로 그 밖의 표면장식을 한 것(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목재·짚 등의 파티클(particle)을 결합하여 표면이 평탄하지 않은 것

3) 플라스틱으로 한 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플라스틱층을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나 그 밖의 장식을 한 것

4) 조물 재료(이들을 서로 평행으로 연결하였는지 또는 직조하였는지에 상관없다)로 한 면을 피복한 것

나. 종이로 만든 테와 프리즈(frieze)로서 위와 같은 처리를 하고, 벽이나 천장 장식에 적합한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다. 여러 장의 패널로 구성되는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로서 벽에 부착할 때 풍경·디자인·모티프(motif)를 가지도록 인쇄한 것

10. 제 4820 호는 특정한 크기로 절단한 루스시트(loose sheet)와 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인쇄하였는지,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11. 제 4823 호는 자카드(Jacquard)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구멍을 뚫은 종이나 판지로 만든 카드, 종이로 만든 레이스에 적용한다.

12. 제 4814 호와 제 4821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 문자·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 49 류에 해당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4804.11 호와 제 4804.19 호에서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으로서 1 제곱
미터당 중량이 115 그램을 초과하며, 아래 표에 표시된 뮤렌(Mullen) 파열강도의 최저
가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揷)이나 외
삽(外揷)의 환산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계적으로 완성가공하였거나 기계적으로 광택
가공한 롤 모양인 종이나 판지를 말한다.

평량(그램/제곱미터)	뮤렌파열강도의 최저치 킬로파스칼(kPa)
115	393
125	417
200	637
300	824
400	961

2. 소호 제 4804.21 호와 제 4804.29 호에서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
다 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 1 제곱미터의 중량
이 60 그램 이상 115 그램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롤
모양의 기계적 완성가공처리를 한 종이를 말한다.

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3.7 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서 가로 방향
의 신장율이 100 분의 4.5 를 초과하고, 세로 방향의 신장율이 100 분의 2 를 초과하
는 것

나. 인열(引裂)강도의 최저치와 인장(引張)강도의 최저치가 아래 표에 표시된 수치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揷)의 환산치
를 가지는 것

평량 (그램/제곱미터)	인열강도의 최저치 엠엔(mN)		인장강도의 최저치 케이엔/엠(kN/m)	
	세로방향	세로방향 + 가로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 가로방향
60	700	1,510	1.9	6
70	830	1,790	2.3	7.2
80	965	2,070	2.8	8.3
100	1,230	2,635	3.7	10.6
115	1,425	3,060	4.4	12.3

3. 소호 제 4805.11 호에서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란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 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표백하지 않은 활엽수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65 이상으로서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 분 후 코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 분의 50, 섭씨 23 도에서 1.8 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종이를 말한다.

4. 소호 제 4805.12 호는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스트로펄프(straw pulp)를 주로 하여 만들어진 롤 모양인 종이를 포함한다[1 제곱미터당 중량이 130 그램 이상이고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 분 후 코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 분의 50, 섭씨 23 도에서 1.4 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소호 제 4805.24 호와 제 4805.25 호는 전부나 주로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테스트라이너(testliner)는 착색된 표층이나 표백·미표백인 비재생펄프로 만든 표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들의 제품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2 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이다.

6. 소호 제 4805.30 호에서 “아황산 포장지”란 아황산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00 분의 8 이하로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1.47 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 기계적으로 광택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7. 소호 제 4810.22 호에서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란 기계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인 종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양면을 도포한 1 제곱미터의 총중량이 72 그램 이하인 종이로서 1 면당 도포량이 1 제곱미터당 15 그램 이하인 종이를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801	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8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와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	1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8
4802	20	사진 감광성, 열 감응성,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8
4802	40	벽지용 원지(原紙)	8
4802	5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	5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1. 인디아지(india paper)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2. 기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4802	55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2. 기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4802	56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2. 기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4802	57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2. 기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4802	58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2. 통계기계 카드용 종이와 판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3. 기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4802	6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	61	롤 모양인 것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2. 기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4802	62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2. 기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4802	69	기타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2. 기타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나. 기타	8
4803	00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	8

		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4	1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	11	표백하지 않은 것	8
4804	19	기타	8
4804	2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	21	표백하지 않은 것	8
4804	29	기타	8
4804	3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	31	표백하지 않은 것	8
4804	39	기타	
		1. 전기전열지와 판지	8
		2. 콘덴서지와 판지	3
		3. 포장지와 판지	8
		4. 기타	8
4804	4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	41	표백하지 않은 것	8
4804	4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8
4804	49	기타	8
4804	5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	51	표백하지 않은 것	8
4804	5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8
4804	59	기타	8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5	1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	11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8
4805	12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8
4805	19	기타	8
4805	2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4805	2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2. 기타	8
4805	25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2. 기타	8
4805	30	아황산포장지	8
4805	40	여과지와 판지	8
4805	50	펠트지와 판지	8
4805	9	기타	
4805	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2. 기타	
		가. 콘덴서지와 판지	3
		나. 기타	8
4805	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2. 기타	8

4805	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5
		2. 기타	8
4806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	10	황산지	8
4806	20	내지지(耐脂紙)	8
4806	3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8
4806	40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8
4807	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8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	1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8
4808	40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	8

		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808	90	기타	8
4809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	20	셀프복사지	8
4809	90	기타	8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	1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	13	롤 모양인 것	8
4810	14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8
4810	19	기타	8
4810	2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	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8
4810	29	기타	8
4810	3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	31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810	3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4810	39	기타	8
4810	9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	92	여러 겹의 것	8
4810	99	기타	8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	10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8

4811	4	접착지와 판지	
4811	41	셀프접착지	8
4811	49	기타	8
4811	5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	51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며 265 그램 이하인 것	8
		2. 기타	
		가.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것과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다른 한 변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인 것	
		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8
		2) 기타	5
		나. 기타	8
4811	59	기타	8
4811	6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8

4811	90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8
4812	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8
4813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3	1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8
4813	2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8
4813	90	기타	8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4	2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8
4814	90	기타	8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	20	셀프복사지	8
4816	90	기타	8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	10	봉투	8
4817	20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8
4817	3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	10	화장지	8
4818	2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8
4818	3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8
4818	50	의류와 의류 부속품	8
4818	90	기타	8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	1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4819	2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8

4819	3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8
4819	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8
4819	5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8
4819	6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	1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4820	20	연습장	8
4820	3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8
4820	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8
4820	5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8
4820	90	기타	8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	10	인쇄한 것	8

4821	90	기타	8
4822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	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8
4822	90	기타	8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	20	여과용 종이와 판지	8
4823	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8
4823	6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	61	대나무로 만든 것	8
4823	69	기타	8
4823	7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8
4823	90	기타	
		1. 구멍을 뚫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록된 통계기계용·회계기계용 카드	8
		2. 전기절연지	8
		3. 콘덴서지와 판지	

		가. 폭이 15 센티미터 초과 36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인 것(표백한 것으로서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8
		2) 기타	3
		나. 폭이 15 센티미터 초과 36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인 것(롤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8
		2) 기타	3
		다. 기타	8
		4.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8
		5. 기타	
		가. 폭이 15 센티미터 초과 36 센티미터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롤 모양으로서,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8
		2) 기타	5

		나. 기타	8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투명한 기본 재료로 된 사진용 네거티브·포지티브(제 37 류)

   나. 부조(浮彫)된 지도·설계도·지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9023 호)

   다. 제 95 류의 오락용 카드나 기타의 물품

   라.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 9702 호), 제 9704 호의 우표·수입인지·요금별납
   증지·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나 이와 유사한 것, 제 97 류의 제작 후 100 년을 초
   과한 골동품이나 기타의 물품

2. 제 49 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
   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

3.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을 종이 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의 2부
   이상을 한 장의 표지 안에 세트로 만든 것은 제 4901 호로 분류한다(광고 선전물이 포
   함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제 4901 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나 삽화
   [전지번호를 붙였는지 또는 별개의 시트(she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는 제 4911 호로
   분류한다.

가. 회화나 도면 등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 권 이상의 서적의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제본된 책자에 딸린 그림이 있는 부록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된 모양으로 한 것, 분리된 시트(sheet), 전지번호를 붙인 모양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나 일부를 구성하며, 제본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이 류의 주 제3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팸플릿(pamphlet)·리플릿(leaflet)·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상업단체와 관광회사의 연감]은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로 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 “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	10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1. 국문판	무세
		2. 기타	무세
4901	9	기타	
4901	91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1. 국문판	무세

		2. 기타	무세
4901	99	기타	
		1. 국문판	무세
		2. 기타	무세
4902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4902	1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1. 국문판	
		가. 신문	무세
		나. 기타	무세
		2. 기타	무세
4902	90	기타	
		1. 국문판	
		가. 잡지	무세
		나. 기타	무세
		2. 기타	
		가. 잡지	무세
		나. 기타	무세

4903	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무세
4904	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	10	지구의	무세
4905	9	기타	
4905	91	책자로 된 것	
		1. 지도와 해도	무세
		2. 기타	무세
4905	99	기타	무세
4906	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1. 설계도	무세
		2. 도안	무세
		3. 기타	무세
4907	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	

		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1.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2. 항공화물증권	무세
		3. 기타	무세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4908	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8
4908	90	기타	8
4909	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4910	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8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	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무세
4911	9	기타	
4911	91	서화·디자인·사진	
		1.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무세
		2. 기타	8
4911	99	기타	무세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제 0502 호), 말의 털과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제 0511 호)

나. 사람 머리카락과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 0501 호·제 6703 호·제 6704 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제 5911 호)는 제외한다.

다. 제 14 류의 면 린터(linter)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

라. 제 2524 호의 석면, 제 6812 호·제 6813 호의 석면제품이나 기타의 제품

마. 제 3005 호·제 3006 호의 물품,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제 3306 호)

바. 제 3701 호부터 제 3704 호까지의 감광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사.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시폭이 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 39 류),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편조물·직물·그 밖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 46 류)

아.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 39 류에 해당하는 것

자.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

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 40 류에 해당하는 것

차.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와 모피(제 41 류·제 43 류), 제 4303 호나 제 4304 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인조 모피와 그 제품

카. 제 4201 호나 제 4202 호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

타. 제 48 류의 물품이나 제품(예: 셀룰로오스워딩)

파. 제 64 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각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하. 제 65 류의 헤어네트·모자류와 그 부분품

거. 제 67 류의 물품

너. 연마 재료를 도포한 방직용 섬유재료(제 6805 호), 제 6815 호의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제품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바탕천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제 70 류)

러. 제 94 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

머.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망)

버. 제 96 류의 물품[예: 브러시·바느질용 여행세트·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타자기용 리본·위생 타월(패드)과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서. 제 97 류의 물품

2. 가. 제 50 류부터 제 55 류까지·제 5809 호나 제 5902 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

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제 5110 호)과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 5605 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른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서는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제 54 류와 제 55 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

4) 동일한 류나 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는 그 밖의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다. 가목과 나목은 주 제 3 호부터 주 제 6 호까지에서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3. 가. 이 부에서 다음의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은 끈·배의 밧줄(cordage)·프·케이블로 보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1)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것으로서 2 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인조섬유의 실(제 54 류의 두 가닥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 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의 것

가) 연마하거나 광택을 낸 것으로서 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

나) 연마하지도 광택을 내지도 않은 것으로서 2 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4) 코이어(coir)실로서 세 가닥 이상의 실로 된 것

5)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2 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6) 금속사로 보강한 실

나. 가목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모사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만든 실과 종이실(paper yarn)(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2) 제 55 류의 인조필라멘트 토우와 제 54 류의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 회 미만으로 꼬여 있는 멀티필라멘트사

3) 제 5006 호의 누에의 거트(gut)와 제 54 류의 모노필라멘트

4) 제 5605 호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가목의 6)에 해당하는 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5) 제 5606 호의 셔닐사(chenille yarn)·짐프사(gimped yarn)·루프웨일사(loop wale-yarn)

4. 가. 제 50 류·제 51 류·제 52 류·제 54 류·제 55 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 4 호나목의 것은 제외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말한다.

1)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 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 그램

2) 공(ball) 모양으로 감은 실이나 타래실은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3 천데시텍스 미만의 인조필라멘트사·견사·견 웨이스트사는 85 그램

나) 2 천데시텍스 미만의 그 밖의 실은 125 그램

다) 그 밖의 실은 500 그램

3) 간사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몇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은 한 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 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 그램

나. 가목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가)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것

나)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 중 표백·염색·날염을 한 것으로서 천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표백하지 않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

가) 견사나 견 웨이스트사(어떤 포장이라도 가능하다)

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실로서 타래로 감은 것(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3) 견·견 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중 표백·염색·날염을 한 것으로서 133 데시텍스 이하인 것

4)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

가) 크로스릴(cross-reel) 모양의 타래로 감은 것

나) 섬유공업에 사용하도록 실패에 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감은 것[예: 콥(cop)

연사(撚絲)용 튜브·펀(pirn)·원추형 보빈(bobbin)·스핀들(spindle)·누에고치 모
양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5. 제 5204 호·제 5401 호·제 5508 호에서 “재봉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

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 천그
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

6.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가.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단사: 60 센티뉴턴/텍스

나.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3 센티뉴턴/텍스

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 27 센티뉴턴/텍스

7.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타월·탁상보·정사각형 스
카프·모포]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풀
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목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

마.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를 한 것

바. 봉제·풀칠·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

사.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이나 특정 길이의 여러 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제 50 류부터 제 60 류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제 50 류부터 제 55 류까지와 제 60 류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 56 류부터 제 59 류까지는 주 제 7 호의 물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 50 류부터 제 55 류까지와 제 60 류는 제 56 류부터 제 59 류까지의 물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제 50 류부터 제 55 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상호 예각이나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 층은 접착제나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

10.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탄성제품은 이 부로 분류한다.

11. 이 부에서 침투에는 침지(沈漬)가 포함된다.

12. 이 부에서 폴리아미드에는 아라미드가 포함된다.

13. 이 부와 이 표에서 “탄성사”란 합성섬유로 만든 필라멘트사(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하며 텍스처드사는 제외한다)로서 원래의 길이의 3 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 배로 늘린 후 5 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 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실을 말한다.

14.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 6101 호부터 제 6114 호까지와 제 6201 호부터 제 6211 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

소호주:

1. 이 부와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표백하지 않은 실

1) 구성하는 섬유가 고유의 색상이며 표백·염색(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날염하지 않은 것

2) 가닛스톡(garnetted stock)으로 만들어진 불특정의 색상을 가진 것[생지사(生絲)]

※ 이러한 실은 무색가공제나 순간염료(비누 세탁으로 간단히 색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처리된 것도 있으며, 인조섬유는 전체적으로 염소제(예: 이산화티타늄)로 처리된 것도 있다.

나. 표백한 실

1) 표백공정을 거친 것·표백한 섬유로 제조된 것,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나 백색가공으로 처리된 것

2) 표백하지 않은 섬유와 표백한 섬유로 혼합된 것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다. 색실(염색하거나 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염색한 것(전체를 염색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백색으로 염색한 것과 일시적으로 염색한 것을 제외한다), 날염한 것, 염색하거나 날염한 섬유로 제조된 것

2) 서로 다른 색으로 염색된 섬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것,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섬유와 착색한 섬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것[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 하나 이
상의 색으로 군데군데 점의 모양으로 날염한 것

3) 날염된 슬리버(sliver)나 로빙(roving)으로 만들어진 것

4)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실·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 위 규정은 제54류에 해당하는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라. 표백하지 않은 직물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염색·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

마. 표백한 직물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
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바. 염색한 직물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

사.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

(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 날염직물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브러시나 스프레이건, 전사지(轉寫紙), 플로킹(flocking)이나 방염공정 등을 통해 모 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 머서 가공(mercerisation)은 위의 범주 내 의 실이나 직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위의 라목부터 아목까지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준용한다.

자. 평직물

직물 조직의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가는 조직을 말한다.

2. 가.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 56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 50 류부터 제 55 류까지나 제 5809 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 2 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

나.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 통칙 제 3 호에 따라 해당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데에만 고려하여야 한다.

2) 바탕천의 표면에 파일(pile)이나 고리(loop)가 조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바탕천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제 5810 호의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에서는 바탕천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은 자수사만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 50 류

견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001	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5002	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3
		나. 20 데시텍스 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3
		다.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3

		라.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3
		마.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3
		2. 옥사(doupion silk)	3
		3. 기타	8
5003	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1.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	
		가. 누에고치 웨이스트(waste)	2
		나. 풀솜	2
		다. 비수	2
		라. 생피저(生皮苧)	2
		마. 기타	2
		2. 기타	
		가. 페니	2
		나. 견 노일(부렛)	2
		다. 기타	2
5004	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3

5005	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3
5006	00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8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	10	견 노일(noil) 직물	13
5007	2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13
5007	90	기타의 직물	13

제 51 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주:

1.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양모”란 양이나 어린 양의 천연섬유를 말한다.

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란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야크·앙고라·티베탄·캐시미르(Kashimir)나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은 제외
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뒤쥐
(musk-rat)의 털을 말한다.

다. “동물의 거친 털”이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을 말하며, 브러시 제조용 동
물의 털(제 0502 호)과 말의 털(제 0511 호)은 제외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1	1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	11	깎은 양모	무세
5101	19	기타	무세
5101	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	21	깎은 양모	무세
5101	29	기타	무세
5101	30	탄화처리한 것	무세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2	1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	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무세
5102	19	기타	무세
5102	20	동물의 거친 털	무세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	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무세
5103	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무세
5103	3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무세
5104	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무세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	10	카드(card)한 양모	무세
5105	2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	21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무세
5105	29	기타	
		1. 순모울톱	무세
		2. 혼방울톱	무세
		3. 조사(roving)	무세
		4. 기타	무세

5105	3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	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무세
5105	39	기타	무세
5105	4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	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8
5106	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8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	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8
5107	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8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	10	카드(card)한 것	8
5108	20	코움(comb)한 것	8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09	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8
5109	90	기타	8

5110	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8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1	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1	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13
5111	19	기타	13
5111	2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5111	3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5111	90	기타	13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2	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2	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13
5112	19	기타	13
5112	2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5112	3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5112	90	기타	13

5113	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제 52 류

면

소호주:

1. 소호 제 5209.42 호와 제 5211.42 호에서 “데님(denim)”이란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201	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실면(實綿)	무세
		2. 기타	
		가. 섬유길이가 2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무세
		나. 섬유길이가 23.2 밀리미터 이상 25.4 밀리미터 미만인	무세

		것	
		다. 섬유길이가 25.4 밀리미터 이상 28.5 밀리미터 미만인 것	무세
		라. 섬유길이가 28.5 밀리미터 이상 34.9 밀리미터 미만인 것	무세
		마. 섬유길이가 34.9 밀리미터 이상인 것	무세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	1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무세
5202	9	기타	
5202	91	가닛스톡(garnetted stock)	무세
5202	99	기타	무세
5203	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204	1	소매용이 아닌 것	
5204	11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8
5204	19	기타	8
5204	20	소매용	8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	

		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	1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8
5205	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나. 기타	8
		2. 기타	8
5205	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8
5205	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8
5205	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8
5205	2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8
5205	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8
5205	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205	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8
5205	26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8
5205	27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8
5205	28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8
5205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8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나. 기타	8
		2. 기타	8
5205	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8

5205	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8
5205	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8
5205	4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8
5205	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8
5205	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8
5205	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8
5205	46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8
5205	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8
5205	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8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	1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	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8
5206	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8
5206	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8
5206	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8
5206	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8
5206	2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	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8
5206	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8
5206	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8
5206	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8
5206	2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8
5206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	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8
5206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8
5206	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8
5206	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8
5206	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8
5206	4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	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8
5206	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8
5206	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8
5206	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8
5206	4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8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	1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8
5207	90	기타	8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	1	표백하지 않은 것	
5208	1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1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1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08	19	그 밖의 직물의 것	10
5208	2	표백한 것	
5208	2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2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2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08	29	그 밖의 직물의 것	10

5208	3	염색한 것	
5208	3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3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3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08	39	그 밖의 직물	10
5208	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8	4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4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4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08	49	그 밖의 직물	10
5208	5	날염한 것	
5208	5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5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208	59	그 밖의 직물	10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09	1	표백하지 않은 것	
5209	11	평직물(平織物)	10
5209	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09	19	그 밖의 직물	10
5209	2	표백한 것	
5209	21	평직물(平織物)	10
5209	2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09	29	그 밖의 직물	10
5209	3	염색한 것	
5209	31	평직물(平織物)	10
5209	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09	39	그 밖의 직물	10
5209	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9	41	평직물(平織物)	10

5209	42	데님(denim)	10
5209	43	3 올이나 4 올의 그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09	49	그 밖의 직물	10
5209	5	날염한 것	
5209	51	평직물(平織物)	10
5209	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09	59	그 밖의 직물	10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0	1	표백하지 않은 것	
5210	11	평직물(平織物)	10
5210	19	그 밖의 직물	10
5210	2	표백한 것	
5210	21	평직물(平織物)	10
5210	29	그 밖의 직물	10
5210	3	염색한 것	
5210	31	평직물(平織物)	10

5210	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10	39	그 밖의 직물	10
5210	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	41	평직물(平織物)	10
5210	49	그 밖의 직물	10
5210	5	날염한 것	
5210	51	평직물(平織物)	10
5210	59	그 밖의 직물	10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1	1	표백하지 않은 것	
5211	11	평직물(平織物)	10
5211	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11	19	그 밖의 직물	10
5211	20	표백한 것	10
5211	3	염색한 것	

5211	31	평직물(平織物)	10
5211	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11	39	그 밖의 직물	10
5211	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	41	평직물(平織物)	10
5211	42	데님(denim)	10
5211	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11	49	그 밖의 직물	10
5211	5	날염한 것	
5211	51	평직물(平織物)	10
5211	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5211	59	그 밖의 직물	10
5212		그 밖의 면직물	
5212	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	11	표백하지 않은 것	10
5212	12	표백한 것	10

5212	13	염색한 것	10
5212	1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212	15	날염한 것	10
5212	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초과인 것	
5212	21	표백하지 않은 것	10
5212	22	표백한 것	10
5212	23	염색한 것	10
5212	2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212	25	날염한 것	10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	1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5301	2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5301	2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5301	29	기타	2
5301	3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1. 아마의 토우(tow)	2
		2. 아마의 웨이스트(waste)	2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	1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5302	90	기타	
		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2
		2.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가. 대마의 토우(tow)	2
		나. 대마의 웨이스트(waste)	2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	1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1. 황마	2
		2.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2
5303	90	기타	
		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가. 황마	2
		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2
		2. 기타	
		가.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5305	00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1. 코코넛[코이어(coir)]의 것	
		가. 생것	2
		나. 기타	2
		2. 아바카의 것	
		가. 생것	2
		나. 기타	2
		3.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가. 생것	2
		나. 기타	2
		4. 기타	
		가. 생것	2
		나. 기타	2
5306		아마사	
5306	10	단사	8
5306	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사	

5307	10	단사	8
5307	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8	10	코이어(coir)사	8
5308	20	대마사	8
5308	90	기타	8
5309		아마직물	
5309	1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309	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5309	19	기타	2
5309	2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309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5309	29	기타	2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	
5310	10	표백하지 않은 것	8
5310	90	기타	8

5311	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8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나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폴리올레핀·폴리우레탄)이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

나.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 섬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합성섬유”와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합성섬유: 가목에서 정의한 섬유

- 재생·반(半)합성 섬유: 나목에서 정의한 섬유

※ 제 5404 호부터 제 5405 호까지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인조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인조”, “합성”, “재생·반(半)합성 섬유”라는 용어는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제 5402 호와 제 5403 호는 제 55 류의 합성필라멘트 토우(tow)와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	10	합성필라멘트의 것	8
5401	2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8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	1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402	11	아라미드의 것	8
5402	19	기타	8
5402	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8
5402	3	텍스처드사	
5402	3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5402	32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8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2	33	폴리에스테르의 것	8
5402	34	폴리프로필렌의 것	8
5402	39	기타	8
5402	4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	44	탄성사	8
5402	45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402	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5402	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402	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402	49	기타	8
5402	5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	5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5402	52	폴리에스테르의 것	8
5402	53	폴리프로필렌의 것	8
5402	59	기타	8

5402	6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2	6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5402	62	폴리에스테르의 것	8
5402	63	폴리프로필렌의 것	8
5402	69	기타	8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1
5403	3	그 밖의 실(단사)	
5403	3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5403	32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
5403	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5403	39	기타	8
5403	4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	4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
5403	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5403	49	기타	8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4	1	모노필라멘트	
5404	11	탄성사	8
5404	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404	19	기타	8
5404	90	기타	8
5405	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5406	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8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	1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8
5407	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5407	3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8

5407	4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5407	42	염색한 것	8
5407	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407	44	날염한 것	8
5407	5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	5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5407	52	염색한 것	8
5407	5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407	54	날염한 것	8
5407	6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	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8
5407	69	기타	8
5407	7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	7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5407	72	염색한 것	8
5407	7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407	74	날염한 것	8
5407	8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407	8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5407	82	염색한 것	8
5407	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407	84	날염한 것	8
5407	9	그 밖의 직물	
5407	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5407	92	염색한 것	8
5407	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407	94	날염한 것	8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5408	2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5408	22	염색한 것	8
5408	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408	24	날염한 것	8
5408	3	그 밖의 직물	
5408	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5408	32	염색한 것	8
5408	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5408	34	날염한 것	8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주:

1. 제 5501 호와 제 5502 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tow)의 길이가 2 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 미터당 5 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

라.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는 늘림 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 배를 초과하여 늘
리지 않은 것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 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 미터 이하의
토우(tow)는 제 5503 호나 제 5504 호로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1	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5501	2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5501	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5501	4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5501	90	기타	8
5502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5502	1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5502	90	기타	8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	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	11	아라미드(aramid)의 것	8
5503	19	기타	8
5503	2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5503	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5503	4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5503	90	기타	8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1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1
		3. 기타	1
5504	90	기타	
		1. 리오셀(lyocell)의 것	2
		2. 기타	8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	10	합성섬유의 것	2
5505	2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2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6	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5506	2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5506	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5506	4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5506	90	기타	8
5507	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	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8
5508	2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8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	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	11	단사	8
5509	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5509	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	21	단사	8
5509	2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5509	3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	31	단사	8
5509	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5509	4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	41	단사	8
5509	4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5509	5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	51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5509	52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8
5509	53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
5509	59	기타	8
5509	6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	61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8
5509	62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
5509	69	기타	8
5509	9	그 밖의 실	
5509	91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8
5509	92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
5509	99	기타	8
55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	1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0	11	단사	8
5510	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5510	20	그 밖의 실(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510	30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510	90	그 밖의 실	8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	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8
5511	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8
5511	3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8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2	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	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512	19	기타	10
5512	2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512	29	기타	10
5512	9	기타	
5512	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512	99	기타	10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	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3	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513	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513	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513	19	그 밖의 직물	10
5513	2	염색한 것	
5513	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513	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513	29	그 밖의 직물	10
5513	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3	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513	39	그 밖의 직물	10
5513	4	날염한 것	
5513	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513	49	그 밖의 직물	10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4	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4	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514	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514	19	그 밖의 직물	10
5514	2	염색한 것	
5514	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514	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514	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514	29	그 밖의 직물	10
5514	3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514	4	날염한 것	

5514	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5514	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5514	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5514	49	그 밖의 직물	10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5	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	11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10
5515	12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5515	13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0
5515	19	기타	10
5515	2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	21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5515	22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0
5515	29	기타	10
5515	9	그 밖의 직물	

5515	91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5515	99	기타	10
5516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	1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6	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516	12	염색한 것	10
5516	1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516	14	날염한 것	10
5516	2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516	22	염색한 것	10
5516	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516	24	날염한 것	10
5516	3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	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516	32	염색한 것	10
5516	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516	34	날염한 것	10
5516	4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516	42	염색한 것	10
5516	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516	44	날염한 것	10
5516	9	기타	
5516	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5516	92	염색한 것	10
5516	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5516	94	날염한 것	10

제 56 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이나 조제품(예: 제 33 류의 향수나 화장품, 제 3401 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 3405 호의 광택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 3809 호의 직물 유연제)을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wadding), 펠트(felt)·부직포

   나. 제 5811 호의 섬유제품

   다.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 6805 호)

   라.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 6814 호)

   마. 금속박(箔)을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 14 부나 제 15 부)

   바. 제 9619 호의 위생타월(패드)·탐폰,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

2. 펠트(felt)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방직용 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직물[웹(web) 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해당 직물의 응집력을 높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 제 5602 호와 제 5603 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 5603 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 5602 호와 제 5603 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제 39 류나 제 40 류)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 39 류나 제 40 류)

다.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으로서 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 39 류나 제 40 류)

4. 제 5604 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통상 제 50 류부터 제 55 류까지)은 포함하지 않는다(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5601	2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	21	면으로 만든 것	8
5601	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5601	29	기타	8
5601	30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8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2	10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8
5602	2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	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5602	2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5602	90	기타	8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	1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	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8
5603	1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8
5603	1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8
5603	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8
5603	9	기타	
5603	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8
5603	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8

5603	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8
5603	9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8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	1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604	90	기타	8
5605	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606	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8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7	2	사이잘(sisal)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	21	포장용 끈	10
5607	29	기타	10
5607	4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	41	포장용 끈	10
5607	49	기타	10
5607	5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5607	90	기타	10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5608	1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	11	제품으로 된 어망	10
5608	19	기타	10
5608	90	기타	10
5609	00	실·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주: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
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
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바닥깔개의 밑받침은 제외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	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701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	1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0
5702	2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10

5702	3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	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702	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702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702	4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702	4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702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702	5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0
5702	9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	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702	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5702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	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5703	2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
5703	3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703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	1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704	2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 초과 1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704	90	기타	10
5705	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주:

1. 이 류는 제 59 류의 주 제 1 호의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제 59 류의 기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 5801 호에는 위(緯)파일(pile)직물로서 그 부사를 절단하지 않아 직립한 파일(pile)을

가지지 않은 단계인 것을 포함한다.

3. 제 5803 호에서 “거즈”란 그 조직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경사(地經絲)와 익경사(搦經絲
로 구성되며 익경사(搦經絲)가 지경사(地經絲)를 반회전, 1 회전이나 2 회 이상의 회
을 하면서 교전하거나 교착하여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loop)에 위사(緯絲)가 통
과함으로써 짜인 직물을 말한다.

4. 제 5804 호는 제 5608 호에 해당하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매듭이 있는
망직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제 5806 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
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막
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만, 직물 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細幅)직
물은 제 5808 호로 분류한다.

6. 제 5810 호에서 “자수천”이란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바탕천에 금속사나 유리섬유의 실
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얇은 조각·비드(bead)·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물품으
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motif)를 꿰매어서 아프리케(applique)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바느질한 태피스트리(tapestry)를 적용하지 않는다(제 5805 호).

7. 이 류에는 제 5809 호의 물품 외에 의류·실내장식용 직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
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의 제품을 포함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801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	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5801	2	면으로 만든 것	
5801	2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5801	2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5801	2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5801	26	셔닐(chenille)직물	13
5801	27	경(經)파일(pile)직물	13
5801	3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	3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5801	3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5801	3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5801	36	셔닐(chenille)직물	13
5801	37	경(經)파일(pile) 직물	13
5801	9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3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2	1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	11	표백하지 않은 것	8
5802	19	기타	8
5802	2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8
5802	30	터프트(tuft)한 직물	8
5803	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8
5804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	10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13
5804	2	기계로 만든 레이스	
5804	21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5804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5804	30	손으로 만든 레이스	13
5805	00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	8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806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5806	10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8
5806	2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5806	3	그 밖의 직물	
5806	31	면으로 만든 것	8
5806	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5806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5806	4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8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	10	직조한 것	8
5807	90	기타	8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	1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8
5808	90	기타	8
5809	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8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	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5810	9	그 밖의 자수천	
5810	91	면으로 만든 것	13
5810	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5810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5811	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8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주: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 50 류부터 제 55 류까지·제 5803 호·제 5806 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 5808 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제 5903 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 50 류부터 제 55 류까지·제 58 류·제 60 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2) 섭씨 15 도부터 30 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 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 39 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 39 류).

4)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 50 류부터 제 55 류까지·제 58 류·제 60 류로 분류한다)

5)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 39 류)

6) 제 5811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 5604 호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3. 제 5905 호에서 "섬유로 만든 벽 피복제"란 벽이나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 센티미
터 이상인 롤 모양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부
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호는 종이(제
4814 호)의 뒷면이나 직물(일반적으로 제 5907 호)의 뒷면에 직접 고정한 섬유로 된 플
록(flock)이나 더스트(dust)로 구성된 벽 피복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제 5906 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만,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
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 40 류), 제 5811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 그램 이하인 것

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 그램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나. 제 5604 호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다. 고무로 응결시킨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놓아 만든 직물류(제곱미터당 중량에 상
관없다)

5. 제 5907 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 50 류
부터 제 55 류까지·제 58 류·제 60 류로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디자인을 넣어 그림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는 제외한다)

다. 플록(flock)·더스트(dust)·가루 모양인 코르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부분적으로 피복함으로써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다만, 모조 파일(pile)직물은 이 호로 분류한다.

라. 전분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

마.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제 4408 호)

바.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 6805 호)

사. 응집하거나 재생한 운모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 6814 호)

아. 금속박(箔)을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 14 부나 제 15 부

6. 제 5910 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팅(belting)으로서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스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제 4010 호)

7. 제 5911 호에는 제 11 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 5908 호부터 제 5910 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2)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3) 착유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4) 복합경사나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랫(flat)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펠트(felt)·침투·도포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6)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패킹용이나 윤활용의 끈(cord)·브레이드(brai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금속으로 도포·침투·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 5908 호부터 제 5910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	1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8
5901	90	기타	8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	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8
5902	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5902	90	기타	8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	1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5903	20	폴리우레탄의 것	10
5903	90	기타	10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	10	리놀륨	8
5904	90	기타	8

5905	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8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	1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5906	9	기타	
5906	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8
5906	99	기타	8
5907	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8
5908	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8
5909	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5910	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	1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8
5911	2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8
5911	3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	3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8
5911	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8
5911	4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8
5911	90	기타	8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5804 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 58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배지(badge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제 59 류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품. 다
만,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파일(pile)직물
은 제 6001 호로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의류·실내용품·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로 만든 편물이
포함된다.

3. 이 표의 메리야스 편물과 그 제품에는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만든 물품
[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의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다.

소호주:

1. 소호 제 6005.35 호는 중량이 1 제곱미터당 30 그램 이상 55 그램 이하이며 메시(mesh
의 크기가 1 제곱센티미터당 20 홀 이상 100 홀 이하인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 또는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
(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
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이 포함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	10	롱파일(long pile) 편물	10

6001	2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	21	면으로 만든 것	10
6001	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6001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6001	9	기타	
6001	91	면으로 만든 것	10
6001	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6001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	4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6002	90	기타	10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	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6003	20	면으로 만든 것	10
6003	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6003	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6003	90	기타	10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	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6004	90	기타	10
6005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	2	면으로 만든 것	
6005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6005	22	염색한 것	10
6005	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6005	24	날염한 것	10
6005	3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	35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직물	10
6005	36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6005	37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6005	38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6005	39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6005	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5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6005	42	염색한 것	10
6005	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6005	44	날염한 것	10
6005	90	기타	10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	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6006	2	면으로 만든 것	
6006	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6006	22	염색한 것	10
6006	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6006	24	날염한 것	10
6006	3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	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6006	32	염색한 것	10
6006	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6006	34	날염한 것	10
6006	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	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6006	42	염색한 것	10
6006	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6006	44	날염한 것	10
6006	90	기타	10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주:

1.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6212 호의 물품

   나. 제 6309 호의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 9021 호)

3. 제 6103 호와 제 6104 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슈트”란 겉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소매 부분 이외의 겉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 개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고,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겉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 의류 한 점[긴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슈트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 긴 바지와 반바지(shorts), 스커트나 치마바지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성용이나 소녀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위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에 상관없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아래까지 둥근 밑단(tail)이 있는 플레인재킷(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 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뒤에는 히프 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 형태는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견이나 인조견 옷깃이 있는 것)

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 6107 호·제 6108 호·제 6109 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 6112 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4. 제 6105 호와 제 6106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좁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 센티미터 × 10 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 센티미터당 평균 10 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 6105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5. 제 6109 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6. 제 6111 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 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나. 제 6111 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 6111 호

로 분류한다.

7. 제 6112 호의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가.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8. 제 6113 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 6111 호는 제외한다) 제 6113 호로 분류한다.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10.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	20	면으로 만든 것	13
6101	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1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	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102	20	면으로 만든 것	13
6102	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2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	10	슈트	13
6103	2	앙상블(ensemble)	
6103	22	면으로 만든 것	13
6103	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03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3	3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3	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103	32	면으로 만든 것	13
6103	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03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3	4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103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103	42	면으로 만든 것	13
6103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03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	1	슈트	
6104	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04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4	2	앙상블(ensemble)	
6104	22	면으로 만든 것	13
6104	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04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4	3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	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104	32	면으로 만든 것	13
6104	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04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4	4	드레스	

6104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104	42	면으로 만든 것	13
6104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04	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6104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4	5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	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104	52	면으로 만든 것	13
6104	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04	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4	6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104	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104	62	면으로 만든 것	13
6104	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04	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5	10	면으로 만든 것	13
6105	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5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	10	면으로 만든 것	13
6106	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6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7	1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107	11	면으로 만든 것	13
6107	1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7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7	2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	21	면으로 만든 것	13
6107	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7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7	9	기타	
6107	91	면으로 만든 것	13
6107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8	1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108	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8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8	2	브리프(brief)와 팬티	
6108	21	면으로 만든 것	13
6108	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8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8	3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	31	면으로 만든 것	13
6108	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8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8	9	기타	
6108	91	면으로 만든 것	13
6108	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8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	10	면으로 만든 것	13
6109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0	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	11	양모로 만든 것	13
6110	12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13
6110	19	기타	13
6110	20	면으로 만든 것	13
6110	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10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	20	면으로 만든 것	8
6111	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6111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2	1	트랙슈트	
6112	11	면으로 만든 것	13
6112	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12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12	20	스키슈트	13
6112	3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	31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12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12	4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	41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12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13	00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	13

		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	20	면으로 만든 것	13
6114	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14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	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6115	2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	21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6115	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6115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15	3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6115	9	기타	
6115	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115	95	면으로 만든 것	13
6115	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115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	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8
6116	9	기타	
6116	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6116	92	면으로 만든 것	8
6116	93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6116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	10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13
6117	80	그 밖의 부속품	13
6117	90	부분품	13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주:

1.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6309 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나. 정형외과용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 9021 호)

3. 제 6203 호와 제 6204 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슈트"란 겉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소매 부분 이 외의 겉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 개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고,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겉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 의류 한 점[긴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슈트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 긴 바지와

짧은 바지(shorts), 스커트나 치마바지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성용이나 소녀용
은 스커트나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
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위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에 상관없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아래까지 둥근 밑단(tail)이 있는 플레인 재킷(체
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 부분
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뒤에는 히프 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 형태는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견이나 인조견 옷깃이 있는 것)

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 6207 호·제 6208 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
에는 제 6211 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4. 제 6209 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유아용 의류와 이들의 부속품"이란 신장이 86 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
다.

나. 제 6209 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 6209 호로 분류한다.

5. 제 6210 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 6209 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 6210 호로 분류한다.

6. 제 6211 호의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가.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인 스카프와 이와 유사한 물품 중 각 변의 길이가 60 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손수건(제 6213 호)으로 분류하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 6214 호로 분류한다.

8.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다

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9.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	1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	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1	12	면으로 만든 것	13
6201	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1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1	9	기타	
6201	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1	92	면으로 만든 것	13

6201	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1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	1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	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2	12	면으로 만든 것	13
6202	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2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2	9	기타	
6202	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2	92	면으로 만든 것	13
6202	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2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	

		(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3	1	슈트	
6203	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3	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3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3	2	앙상블(ensemble)	
6203	22	면으로 만든 것	13
6203	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3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3	3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	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3	32	면으로 만든 것	13
6203	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3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3	4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203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3	42	면으로 만든 것	13
6203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3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	1	슈트	
6204	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4	12	면으로 만든 것	13
6204	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4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4	2	앙상블(ensemble)	
6204	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4	22	면으로 만든 것	13
6204	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4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4	3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4	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4	32	면으로 만든 것	13
6204	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4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4	4	드레스	
6204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4	42	면으로 만든 것	13
6204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4	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6204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4	5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	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4	52	면으로 만든 것	13
6204	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4	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4	6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204	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4	62	면으로 만든 것	13
6204	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204	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	20	면으로 만든 것	13
6205	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5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6206	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3
6206	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6206	30	면으로 만든 것	13
6206	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6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7	1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	11	면으로 만든 것	13

6207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7	2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	21	면으로 만든 것	13
6207	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7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7	9	기타	
6207	91	면으로 만든 것	13
6207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8	1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	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8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8	2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	21	면으로 만든 것	13
6208	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8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8	9	기타	
6208	91	면으로 만든 것	13
6208	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08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	20	면으로 만든 것	8
6209	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6209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6210		의류(제 5602 호·제 5603 호·제 5903 호·제 5906 호·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	10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6210	2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6210	3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6210	40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13
6210	50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13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6211	1	수영복	
6211	11	남성용이나 소년용	13

6211	12	여성용이나 소녀용	13
6211	20	스키슈트	13
6211	3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	32	면으로 만든 것	13
6211	3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11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11	4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	42	면으로 만든 것	13
6211	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211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	10	브래지어	13
6212	20	거들과 팬티거들	13
6212	30	코르슬렛(corselette)	13
6212	90	기타	13

6213		손수건	
6213	20	면으로 만든 것	8
6213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6214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	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6214	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6214	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6214	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8
6214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6215		넥타이류	
6215	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6215	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6215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6216	00	장갑류	8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	10	부속품	13

6217	90	부분품	13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미

주:

1. 제 1 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

2. 제 1 절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56 류부터 제 62 류까지의 물품

   나. 제 6309 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3. 제 6309 호에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물품만을 적용한다.

   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

      1) 의류·의류부속품과 이들의 부분품

      2)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류

      3)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4) 실내용품[제 5701 호부터 제 5705 호까지에 해당하는 양탄자와 제 5805 호의 태피스트리(tapestry)는 제외한다]

나. 신발류와 모자류(어떠한 재질이라도 가능하며, 석면제품은 제외한다)

※ 위에 열거된 물품이 이 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2) 벌크·가마니·부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이어야 한다.

소호주:

1. 소호 제6304.20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로 만든 것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클로르페나피르(ISO)·델타메트린(INN, ISO)·람다-사이할로트린(ISO)·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제품이 포함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	10	전기모포	10
6301	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6301	3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6301	4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rug)	
6301	9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10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	10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3
6302	2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	21	면으로 만든 것	13
6302	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302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302	3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6302	31	면으로 만든 것	13
6302	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302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302	4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3
6302	5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	51	면으로 만든 것	13
6302	5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302	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302	6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6302	9	기타	
6302	91	면으로 만든 것	13
6302	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302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6303	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3	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303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303	9	기타	
6303	91	면으로 만든 것	13
6303	92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303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4	1	침대덮개	
6304	1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6304	19	기타	13
6304	20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13
6304	9	기타	
6304	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6304	92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6304	93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6304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	1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8
6305	20	면으로 만든 것	8
6305	3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5	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6305	33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6305	39	기타	8

6305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6306	1	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6306	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306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306	2	텐트	
6306	22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6306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6306	30	돛	13
6306	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13
6306	90	기타	13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	1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10
6307	2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10
6307	90	기타	10

제 2 절 세트

6308	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3
		제 3 절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9	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8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	10	선별한 것	8
6310	90	기타	8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 64 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
질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붙인 것은 제외한다](제 11 부)

다. 제 6309 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라. 석면제품(제 6812 호)

마. 정형외과용 신발이나 그 밖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 9021 호)

바. 완구용 신발·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
나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제 95 류)

2. 제 6406 호의 부분품에는 못·프로텍터(protector)·아일릿(eyelet)·훅(hook)·버클(buckle)
장신구·끈·레이스·폼폼(pompon)이나 그 밖의 트리밍(trimming)(각각 해당하는 호
분류한다)과 제 9606 호의 단추나 기타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류에서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
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죽"이란 제 4107 호, 제 4112 호부터 제 4114 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

4.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 3 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예

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바(bar)·못·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소호주:

1. 소호 제 6402.12 호·제 6402.19 호·제 6403.12 호·제 6403.19 호·제 6404.11 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	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8
6401	9	그 밖의 신발	

6401	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8
6401	99	기타	8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2	1	스포츠용 신발류	
6402	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13
6402	19	기타	13
6402	2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6402	9	그 밖의 신발	
6402	91	발목을 덮는 것	13
6402	99	기타	13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	1	스포츠용 신발류	
6403	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13
6403	19	기타	13
6403	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6403	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3
6403	5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	51	발목을 덮는 것	13
6403	59	기타	13
6403	9	그 밖의 신발류	
6403	91	발목을 덮는 것	13
6403	99	기타	13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	1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	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6404	19	기타	13
6404	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5	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3
6405	2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3

6405	90	기타	13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	1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8
6406	20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6406	90	기타	8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6309 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으로 만든 모자(제 6812 호)

   다. 제 95 류의 인형 모자·그 밖의 완구용 모자·카니발용품

2. 제 6502 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제외한다. 다만, 스트립(strip)을 ㄴ
   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포함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6501	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8
6502	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6504	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6505	00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	10	안전모자	8
6506	9	기타	
6506	9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6506	9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6507	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8

제 66 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자 겸용 지팡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 9017 호)

   나. 장총·장검·납을 박은 지팡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 93 류)

   다.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용 산류(傘類)]

2. 제 6603 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각종 재료로 만든 커버·술·가죽끈·산류(傘類)의 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하되, 이러한 물품들이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과 함께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	1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13

6601	9	기타	
6601	91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13
6601	99	기타	13
6602	00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6603	2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6603	90	기타	13

제 67 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濾過布)(제 5911 호)

   나. 레이스·자수천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꽃 모양의 모티프(moti
   (제 11 부)

   다. 신발류(제 64 류)

   라. 모자류나 헤어네트(hair-net)(제 65 류)

마. 완구·운동용구·카니발용품(제 95 류)

바.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화장용 분첩이나 털로 만든 체(제 96 류)

2. 제 6701 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깃털이나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물품(예: 제 9404 호의 침구)

나. 깃털이나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충전물로만 사용한 의류와 의류부속품

다. 제 6702 호의 인조 꽃이나 잎, 이들의 부분품이나 이들로 제조된 물품

3. 제 6702 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 70 류)

나. 도자기·돌·금속·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인조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스탬핑(stamping)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을 이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조립된 것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6701	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8
6702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6702	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6702	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6703	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8
6704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704	1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	11	전체가발	8
6704	19	기타	8
6704	2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8
6704	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제 13 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 68 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25 류의 물품

나. 제 4810 호 또는 제 4811 호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예: 운모 가
나 흑연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역청지와 역청 판지·아스팔트지와 아스팔트 판지

다. 제 56 류나 제 59 류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 운모 가
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역청직물·아스팔트직물)

라. 제 71 류의 물품

마. 제 82 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 8442 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 8546 호)나 제 8547 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burr)(제 9018 호)

자. 제 91 류의 물품(예: 시계와 시계 케이스)

차. 제 94 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카.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 9602 호의 물품으로서 제 96 류의 주 제 2 호나목의 재료로 된 물품, 제 9606 호
물품(예: 단추), 제 9609 호의 물품(예: 석필), 제 9610 호의 물품(예: 도화용 석판
제 9620 호의 물품(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파. 제 97 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제 6802 호의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에는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그 밖의 모든 자연석(예: 규석·수석·백운석·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6801	00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8
6802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6802	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8
6802	2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	21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8

6802	23	화강암	8
6802	29	그 밖의 돌	8
6802	9	기타	
6802	91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8
6802	92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6802	93	화강암	8
6802	99	그 밖의 돌	8
6803	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8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	1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8
6804	2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	21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8

6804	22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8
6804	23	천연석으로 만든 것	8
6804	30	수지석(手砥石)	8
680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	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6805	2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6805	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	10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8
6806	2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8
6806	90	기타	8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	10	롤 모양인 것	8
6807	90	기타	8
6808	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8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6809	1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	11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6809	19	기타	8
6809	90	그 밖의 제품	8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0	1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	11	건축용 블록과 벽돌	8
6810	19	기타	8
6810	9	그 밖의 제품	

6810	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공사용으로 한정한다)	8
6810	99	기타	8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	40	석면을 함유한 것	8
6811	8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	81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8
6811	82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8
6811	89	그 밖의 제품	8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 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와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	80	청석면의 것	8
6812	9	기타	
6812	91	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	8
6812	92	종이·표지용 판지·펠트(felt)	8
6812	93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8

6812	99	기타	8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	20	석면을 함유한 것	8
6813	8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	81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8
6813	89	기타	8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	1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6814	90	기타	8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	1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8
6815	20	이탄(泥炭)제품	8

6815	9	그 밖의 제품	
6815	91	마그네사이트·백운석·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6815	99	기타	8

제 69 류

도자제품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 6904 호부터 제 6914 호까지는 제 6901 호부터 제 6903 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2844 호의 물품

   나. 제 6804 호의 물품

   다. 제 71 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라. 제 8113 호의 서멧(cermet)

   마. 제 82 류의 물품

   바. 애자(제 8546 호)나 제 8547 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사. 의치(義齒)(제 9021 호)

아. 제 91 류의 물품(예: 시계와 시계 케이스)

자. 제 94 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차.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카. 제 9606 호의 물품(예: 단추)이나 제 9614 호의 물품(예: 흡연용 파이프)

타. 제 97 류의 물품(예: 예술품)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제 1 절 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6901	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8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	10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8
6902	20	알루미나·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8

6902	90	기타	8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	1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1. 레토르트(retort)	8
		2. 도가니	
		가.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3
		나. 기타	8
		3. 반응그릇	8
		4. 머플	8
		5. 노즐	8
		6. 플러그(plug)	8
		7. 관(管)	8
		8. 막대(bar, rod)	8
		9. 기타	8
6903	20	알루미나(Al_2O_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_2)의 혼합물이나	8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6903	90	기타	8
		제 2 절 그 밖의 도자제품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	10	건축용 벽돌	8
6904	90	기타	8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	10	기와(지붕타일)	8
6905	90	기타	8
6906	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8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6907	2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 6907.30 호 및 제 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	21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이하인 것	8
6907	22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초과 100 분의 10	8

		이하인 것	
6907	23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10 초과인 것	8
6907	30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소호 제 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6907	40	피니싱 세라믹	8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6909	1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	11	자기제의 것	8
6909	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6909	19	기타	8
6909	90	기타	8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	10	자기제의 것	8
6910	90	기타	8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6911	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8
6911	90	기타	8
6912	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8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	10	자기제의 것	8
6913	90	기타	8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	10	자기제의 것	8
6914	90	기타	8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3207 호의 물품[예: 법랑·유약·유리프리트(frit)와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인 그 밖의 유리]

   나. 제 71 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다. 제 8544 호의 광섬유 케이블, 애자(제 8546 호), 제 8547 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

용 물품

라. 제 90 류의 광섬유·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피하주사기·의안(義眼)·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

마. 제 9405 호의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고정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바. 제 95 류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기계장치를 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눈으로서 제 95 류의 인형이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제 96 류의 단추·장착된 진공 플라스크·향수용 분무기나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그 밖의 물품

2. 제 7003 호·제 7004 호·제 7005 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랭(徐冷)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sheet)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

3. 제 7006 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

4. 제 7019 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 6806 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을 말한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이나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5.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7013.22 호, 제 7013.33 호, 제 7013.41 호, 제 7013.91 호에서 “납 크리스탈”이란 산화납의 함유량이 최소한 전 중량의 100 분의 24 이상인 유리만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7001	00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塊)	
		1. 괴(塊)	5
		2.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깨진 유리	3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	10	구(球)	8
7002	20	막대(rod)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2. 기타	8
7002	3	관(管)	
7002	31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2. 기타	8
7002	3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7002	39	기타	8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	1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	12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8
7003	19	기타	8
7003	2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8
7003	30	프로파일(profile)	8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	

		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	2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8
7004	90	그 밖의 유리	8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	1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7005	2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	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8
7005	29	기타	
		1.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나.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다. 유기발광디스플레이 패널용	4
		라. 기타	8

		2.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나.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다. 유기발광디스플레이 패널용	4
		라. 기타	8
		3.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4.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6.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7.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7005	30	망입(網入) 유리	8
7006	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3. 유기발광디스플레이 패널용	4
		4. 기타	8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	1	강화 안전유리	
7007	11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8
7007	19	기타	8
7007	2	접합 안전유리	
7007	21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8
7007	29	기타	8
7008	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8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	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
7009	9	기타	
7009	91	틀이 붙지 않은 것	8
7009	92	틀이 붙은 것	8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	10	앰플	8
7010	2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8
7010	90	기타	8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	10	전등용	8
7011	20	음극선관용	8
7011	90	기타	8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	10	유리 도자제의 것	8
7013	2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	22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7013	28	기타	8

7013	3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	33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7013	37	기타	8
7013	4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	4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7013	4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8
7013	49	기타	8
7013	9	그 밖의 유리제품	
7013	9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7013	99	기타	8
7014	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8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	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7015	90	기타	8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	1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8
7016	90	기타	8
7017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	1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8
7017	2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7017	90	기타	8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	10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8
7018	20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8
7018	90	기타	8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7019	1	슬리버(sliver)·로빙(roving)·실·단연사	
7019	11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7019	12	로빙(roving)	8
7019	19	기타	8
7019	3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	31	매트(mat)	8
7019	32	얇은 시트(sheet)(보일)	8
7019	39	기타	8
7019	40	로빙(roving) 직물	8
7019	5	그 밖의 직물	
7019	51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7019	52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8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	59	기타	8
7019	90	기타	8
7020	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1. 공업용	
		가. 석영유리로 만든 것	
		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8
		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3
		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4) 기타	8
		나. 기타	8
		2. 기타	8

제 14 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 71 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주:

1. 물품의 전부나 일부가 다음 각 목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 6 부의 주 제 1 호가목과 이 류의 주 제 2 호부터 주 제 11 호까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른다.

   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2. 가. 제 7113 호·제 7114 호·제 7115 호에서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부착구나 장식[예: 두문자(頭文字)·테·외륜] 등과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주 제 1 호나목은 이러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 7116 호에서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를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유한 제품은 제외한다.

3.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과 콜로이드(colloid) 모양인 귀금속(제 2843 호)

   나. 제 30 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치과용 충전재나 그 밖의 물품

   다. 제 32 류의 물품[예: 러스터(lustre)]

   라. 서포트된(supported) 촉매(제 3815 호)

마. 제 42 류의 주 제 3 호나목의 제 4202 호나 제 4203 호의 물품

바. 제 4303 호나 제 4304 호의 물품

사. 제 11 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아. 제 64 류나 제 65 류의 신발류·모자류나 그 밖의 물품

자. 제 66 류의 산류(傘類)·지팡이나 그 밖의 물품

차. 제 6804 호나 제 6805 호, 제 82 류의 연마용품으로서 귀석·반귀석(천연의 것·합성
것)의 더스트(dust)나 가루를 함유한 것, 제 82 류의 물품으로서 귀석·반귀석(천연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 제 16 부의 기계류·기기류·전
용품이나 이들의 부분품. 다만, 이들 제품과 그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귀석·반귀
(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된 것은 이 류로 분류하되, 장착되지 않은 것으
서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제 8522 호)는 제외한다.

카. 제 90 류·제 91 류·제 92 류의 물품(정밀기기·시계·악기)

타. 무기나 이들의 부분품(제 93 류)

파. 제 95 류의 주 제 2 호의 물품

하. 제 96 류의 주 제 4 호에 따라 제 96 류로 분류되는 물품

거. 오리지널 조각이나 조상(제 9703 호)·수집품(제 9705 호)이나 제작 후 100 년이 초
된 골동품(제 9706 호). 다만,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은 제외한다.

4. 가. “귀금속”이란 은·금·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
(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

다. 귀석·반귀석에는 제 96 류의 주 제 2 호나목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
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
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
나 백금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6.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 5 호에 따른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
은 제외한다.

7.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란 금속을 기본으로 한 재료의 한 면 이상에 땜접·납
접·용접·열간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
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비금속(卑金屬)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 6 부의 주 제 1 호가목의 것을 제외하고 제 7112 호에 열거한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9. 제 7113 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
곗줄·펜던트(pendant)·타이핀(tie-pin)·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종교
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

나.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예: 시가나 궐련케이스·코담배박스·구중제갑(cachou box)이나 환약갑·화장갑·돈지갑·묵주]

이러한 물품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합성하거나 재생한 귀석·반귀석, 거북갑, 진주 모패(母貝)·상아(ivory)·천연 또는 재생 호박·흑옥·산호 등과 결합되어 있거나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제 7114 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사무용·종교용 물품이 포함된다.

11. 제 7117 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 9 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제 9606 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 제 9615 호의 빗·헤어슬라이드나 이와 유사한 것·헤어핀은 제외한다)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7106.10 호·제 7108.11 호·제 7110.11 호·제 7110.21 호·제 7110.31 호·제 7110.41 호에서 "가루"와 "가루 모양"이란 메시(mesh) 구경이 0.5 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2. 이 류의 주 제 4 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소호 제 7110.11 호와 제 7110.19 호에서 "백금"이란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제 7110 호의 소호에 합금을 분류하는 경우 각각의 합금은 플라티늄(platin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중 각각 다른 금속보다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제 1 절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1	10	천연진주	8
7101	2	양식진주	
7101	21	가공하지 않은 것	8
7101	22	가공한 것	8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	10	선별하지 않은 것	1
7102	2	공업용	
7102	2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7102	29	기타	5
7102	3	공업용이 아닌 것	
7102	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7102	39	기타	5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3	1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1
7103	9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	91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1. 공업용	5
		2. 기타	
		가. 루비	5
		나. 사파이어	5
		다. 에메랄드	5
7103	99	기타	
		1. 공업용	5
		2. 기타	
		가. 오팔	5
		나. 비취	5
		다. 옥수(玉髓)	5

		라. 수정	5
		마. 기타	5
7104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4	10	압전기용 석영	5
7104	20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1. 다이아몬드	5
		2. 기타	5
7104	90	기타	
		1. 공업용	
		가. 다이아몬드	5
		나. 인조수정	5
		다. 기타	5
		2. 기타	5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	10	다이아몬드의 것	
		1. 천연의 것	5
		2. 합성한 것	5
7105	90	기타	
		1. 석류석의 것	5
		2. 기타	5
		제 2 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	10	가루	3
7106	9	기타	
7106	91	가공하지 않은 것	
		1.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2. 기타	3
7106	92	반가공한 것	
		1.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2.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3

		3. 선	3
		4. 기타	3
7107	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2.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3
		3. 선	3
		4. 관(管)과 중공(中空)봉	3
		5. 기타	3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8	1	화폐용이 아닌 것	
7108	11	가루	3
7108	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 럼프(lump)·빌릿(billet)·알갱이	3
		2. 기타	3
7108	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 선	
		가. 반도체 제조용	3

		나. 기타	3
		2. 기타	
		가.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3
		다. 기타	3
7108	20	화폐용	무세
7109	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	1	플라티늄(platinum)	
7110	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7110	19	기타	3
7110	2	팔라듐(palladium)	
7110	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7110	29	기타	3
7110	3	로듐(rhodium)	
7110	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7110	39	기타	3
7110	4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7110	4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7110	49	기타	3
7111	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	3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2
7112	9	기타	
7112	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1. 잔재물의 것	2
		2. 기타	3
7112	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1. 잔재물의 것	2
		2. 기타	3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2
		2.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의 것	8
		3. 기타	3
		제 3 절 신변장식용품, 금 세공품·은 세공품과 그 밖의 제품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3	1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	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7113	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7113	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4	1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	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7114	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7114	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	1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7115	90	기타	8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7116	1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8
7116	2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8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7	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	11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8
7117	19	기타	8
7117	90	기타	8
7118		주화	
7118	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무세
7118	90	기타	
		1. 금화	무세

		2. 은화	무세
		3. 기타	무세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제페인트·잉크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flake)나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것(제 3207 호부터 제 3210 호까지·제 3212 호·제 3213 호·제 3215 호)

나. 페로세륨(ferro-cerium)이나 그 밖의 발화성 합금(제 3606 호)

다. 제 6506 호나 제 6507 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 6603 호의 산류(傘類)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마. 제 71 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모조 신변장식품]

바. 제 16 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사.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 8608 호)와 제 17 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

아. 제 18 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 9306 호)이나 제 19 부의 기타 물품(무기·총포

탄)

차. 제 94 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램프와 조명기구·조
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카. 제 95 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 96 류(잡품)의 수동식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
유사한 물품 또는 그 밖의 물품

파. 제 97 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 7307 호·제 7312 호·제 7315 호·제 7317 호·제 7318 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
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 9114 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
다)

다. 제 8301 호·제 8302 호·제 8308 호·제 8310 호의 물품과 제 8306 호의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 73 류부터 제 76 류까지와 제 78 류부터 제 82 류까지(제 7315 호는 제외한다)의 부분
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과 제 83 류의 주 제 1 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82 류나 제 83 류의
품은 제 72 류부터 제 76 류까지와 제 78 류부터 제 81 류까지에서 제외한다.

3.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
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
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탈륨을
한다.

4. 이 표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

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금속을 소결(燒結
한 금속카바이드(carbide)]를 포함한다.

5.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72 류와 제 74 류의 주에서 정의
한 합금철(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
이면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것과 용융(鎔融)으로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과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된다.

6. 이 표의 비금속(卑金屬)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 5 호에 따라 해당 비금
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
[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
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鋼)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 제 5 호에 따라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 8113 호의 서멧(cermet)은 단일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본다.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
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

나. 가루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 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제 72 류

철강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목·마목·바목은 이 호
의 전체에 적용한다).

가. 선철(銑鐵)

"선철(銑鐵)"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하지 않은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고, 다음에 열거한 하나 이상의 그 밖의 원소
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 분의 10
- 망간 100 분의 6
- 인 100 분의 3
- 규소 100 분의 8

-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 분의 10

나.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이란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초과 100 분의 30 이하인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은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다. 합금철(ferro-alloy)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 분의 10
- 망간 100 분의 30
- 인 100 분의 3
- 규소 100 분의 8
-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 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으로 한다)

라. 강(鋼)

“강(鋼)”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 7203 호의 철재는 제외한다. 다만, 크로뮴(chromium)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다.

마.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바. 그 밖의 합금강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알루미늄 100 분의 0.3
- 붕소 100 분의 0.0008
- 크로뮴 100 분의 0.3
- 코발트 100 분의 0.3
- 구리 100 분의 0.4
- 납 100 분의 0.4
- 망간 100 분의 1.65
- 몰리브데늄 100 분의 0.08
- 니켈 100 분의 0.3
- 니오븀 100 분의 0.06
- 규소 100 분의 0.6
- 티타늄 100 분의 0.05
- 텅스텐(월프람) 100 분의 0.3
- 바나듐 100 분의 0.1
- 지르코늄 100 분의 0.05

- 그 밖의 원소(황·인·탄소·질소는 제외한다) 각각 100 분의 0.1

사.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scrap ingot)”이란 잉곳(ingot) 모양[피더헤드(feeder-head)나 핫톱(hot top)이 없는 것]이나 피그(pig) 모양으로 거칠게 주조한 제품으로서 표면에 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합금철(ferro-alloy)의 화학적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 알갱이

“알갱이”란 메시(mesh) 구경이 1 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0 미만이고, 메시(mesh) 구경이 5 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자. 반제품

“반제품”이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熱間)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일차 열간(熱間)압연공정이나 단조(鍛造)에 따른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중공(中空)이 없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형강(形鋼)의 블랭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들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않다].

차. 평판압연제품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

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카.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봉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봉"이란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제품으로서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고,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이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다.

타. 그 밖의 봉

"그 밖의 봉"이란 자목·차목·카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

파. 형강(形鋼)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차목·카목·타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 72 류에는 제 7301 호나 제 7302 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 선(線)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 중공(中空)드릴봉

“중공(中空)드릴봉”이란 어느 횡단면에든 중공(中空)이 있는 봉으로서 드릴용에 적합하고, 횡단면 외측의 최대치수가 15 밀리미터를 초과하나 52 밀리미터 이하인 것이며, 내측의 최대치수가 외측 최대치수의 2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철강의 중공(中空)봉은 제 7304 호로 분류한다.

2. 성분이 다른 철금속을 입힌 철금속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전해법·압착주조법·소결법으로 제조된 철강제품은 그 형태·구성·외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열간(熱間)압연제품에 해당하는 이 류의 각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선철(alloy pig iron)

“합금선철(alloy pig iron)”이란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선철을 말한다.

- 크로뮴 100 분의 0.2
- 구리 100 분의 0.3
- 니켈 100 분의 0.3
- 알루미늄·몰리브데늄·티타늄·텅스텐(월프럼)·바나듐 중 어느 하나의 원소 100 분의

0.1

나. 비합금쾌삭강(non-alloy free-cutting steel)

“비합금쾌삭강(non-alloy free-cutting steel)”이란 다음에 열거한 중량비의 원소를 하나 이상 함유한 것을 말한다.

- 황 100 분의 0.08 이상
- 납 100 분의 0.1 이상
- 셀레늄 100 분의 0.05 초과
- 텔루륨 100 분의 0.01 초과
- 비스무트 100 분의 0.05 초과

다.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이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 100 분의 6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 합금강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100 분의 1 이하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고속도강(high speed steel)

“고속도강(high speed steel)”이란 그 밖의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나 몰리브데늄·텅스텐·바나듐의 세 가지 원소 중 적어도 두 가지 원소를 합한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 이상이고, 탄소가 100 분의 0.6 이상이며, 크로뮴(chromium)이 100 분의 3 이상 100 분의 6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마. 실리코망간강(silico manganese steel)

“실리코망간강(silico manganese steel)”이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의 합금강을 말한다.

- 탄소 100 분의 0.7 이하

- 망간 100 분의 0.5 이상 100 분의 1.9 이하

- 규소 100 분의 0.6 이상 100 분의 2.3 이하

그러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그 밖의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제 7202 호의 소호에서 합금철(ferro-alloy)의 분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 합금원소 중의 한 원소만이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금철(ferro-alloy)을 이원합금으로 보아 해당 소호에(해당 소호가 있는 경우) 분류하고, 위의 규정의 유추해석에 따라 두 가지나 세 가지의 합금원소가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삼원합금이나 사원합금으로 취급한다.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의 “그 밖의 원소”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함유량이 각각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야 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제 1 절 일차재료와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제품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	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물용	무세
		2. 제강용	무세
		3. 기타	무세
7201	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7201	5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2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1	페로망간	
7202	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
7202	19	기타	5
7202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2
7202	29	기타	
		1.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3
		2. 기타	3
7202	3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5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2
7202	49	기타	2
7202	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2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3
7202	7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3
7202	8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텅스텐(ferro-silico-tungsten)	3
7202	9	기타	
7202	91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3
7202	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3
7202	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3
7202	99	기타	
		1.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2. 기타	3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	

		[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	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무세
7203	90	기타	1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	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7204	2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	21	스테인리스강의 것	무세
7204	29	기타	무세
7204	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7204	4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	41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7204	49	기타	무세
7204	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무세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	10	알갱이	

		1. 숏(shot)	5
		2. 그릿(grit)	5
		3. 기타	5
7205	2	가루	
7205	21	합금강의 것	3
7205	29	기타	3
		제 2 절 철과 비합금강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	10	잉곳(ingot)	무세
7206	90	기타	무세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	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7207	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 블룸(bloom)	무세
		2. 빌릿(billet)	무세
7207	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1. 슬래브	무세
		2. 시트바(sheet bar)	무세
7207	19	기타	무세
7207	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1. 블룸(bloom)	무세
		2. 빌릿(billet)	무세
		3. 슬래브	무세
		4. 기타	무세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	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8
7208	2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	25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8
7208	26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8	27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8	3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	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7208	37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7208	38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8	39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8	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8
7208	5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	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7208	5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7208	5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8	5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8	90	기타	8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	1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	1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7209	1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9	1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7209	1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9	2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	2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7209	2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9	2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7209	2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09	90	기타	8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0	1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	11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7210	12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10	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8
7210	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0	4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	41	물결 모양의 것	8
7210	49	기타	8
7210	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0	6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	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0	69	기타	8
7210	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8
7210	90	기타	8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	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	13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7211	14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7211	19	기타	8
7211	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	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8

7211	29	기타	8
7211	90	기타	8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	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2	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2	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2	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8
7212	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2	60	클래드(clad)한 것	8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	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5
7213	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5
7213	9	기타	
7213	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5

		2. 기타	5
7213	99	기타	
		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5
		2. 기타	5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	10	단조(鍛造)한 것	8
7214	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8
7214	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8
7214	9	기타	
7214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8
7214	99	기타	8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	1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7215	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7215	90	기타	8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	1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7216	2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	21	엘(L)형강	8
7216	22	티(T)형강	8
7216	3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	31	유(U)형강	8
7216	32	아이(I)형강	8
7216	33	에이치(H)형강	8
7216	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7216	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8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	6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	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8
7216	69	기타	8
7216	9	기타	
7216	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8
7216	99	기타	8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	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7217	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7	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7	90	기타	8
		제 3 절 스테인리스강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	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1. 잉곳(ingot)	무세

		2. 기타	무세
7218	9	기타	
7218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1. 슬래브	무세
		2. 시트바(sheet bar)	무세
		3. 기타	무세
7218	99	기타	
		1. 블룸(bloom)	무세
		2. 빌릿(billet)	무세
		3. 기타	무세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	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	1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7219	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7219	1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19	1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19	2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	2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7219	2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7219	2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19	2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19	3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	3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7219	32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19	33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19	34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7219	35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19	90	기타	8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	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	1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7220	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7220	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8

7220	90	기타	8
7221	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2	1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	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8
7222	19	기타	8
7222	2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7222	30	그 밖의 봉	8
7222	40	형강(形鋼)	8
7223	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8
		제 4 절 그 밖의 합금강과 합금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	10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1. 잉곳(ingot)	무세

		2. 기타	무세
7224	90	기타	
		1. 블룸(bloom)	무세
		2. 빌릿(billet)	무세
		3. 슬래브	무세
		4. 시트바(sheet bar)	무세
		5. 기타	무세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5	1	규소전기강의 것	
7225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5
7225	19	기타	5
7225	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고속도강의 것	5
		2. 기타	8
7225	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고속도강의 것	5

		2. 기타	8
7225	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고속도강의 것	5
		2. 기타	8
7225	9	기타	
7225	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 고속도강의 것	5
		2. 기타	8
7225	92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 고속도강의 것	5
		2. 기타	8
7225	99	기타	
		1. 고속도강의 것	5
		2. 기타	8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	1	규소전기강의 것	

7226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5
7226	19	기타	5
7226	20	고속도강의 것	5
7226	9	기타	
7226	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8
7226	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8
7226	99	기타	8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	10	고속도강의 것	5
7227	20	실리코망간강의 것	5
7227	90	기타	
		1. 내열강의 것	5
		2. 기타	5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	10	고속도강의 봉	8
7228	20	실리코망간강의 봉	8

7228	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7228	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7228	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7228	60	그 밖의 봉	8
7228	70	형강(形鋼)	8
7228	80	중공(中空)드릴봉	8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	20	실리코망간강의 것	8
7229	90	기타	8

제 73 류

철강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주철(cast iron)”이란 주조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 72 류의 주 제 1 호라목에서 규정한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선(線)”이란 열간(熱間)이나 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	10	널말뚝(sheet piling)	8
7301	20	형강(形鋼)	8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쐐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	10	레일(rail)	8
7302	3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8
7302	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8
7302	90	기타	8

7303	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7304	1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4	1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7304	19	기타	8
7304	2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	
7304	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8
7304	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8
7304	24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7304	29	기타	8
7304	3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	3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8
7304	39	기타	8
7304	4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	4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8

7304	49	기타	8
7304	5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	5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8
7304	59	기타	8
7304	90	기타	8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5	1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	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8
7305	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8
7305	19	기타	8
7305	2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8
7305	3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	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8
7305	39	기타	8
7305	90	기타	8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7306	1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	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7306	19	기타	8
7306	2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	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7306	29	기타	8
7306	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7306	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7306	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7306	6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	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8
7306	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8
7306	90	기타	8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307	1	주조한 연결구류	
7307	11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7307	19	기타	8
7307	2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	21	플랜지(flange)	8
7307	2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8
7307	2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7307	29	기타	8
7307	9	기타	
7307	91	플랜지(flange)	8
7307	9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8
7307	93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8
7307	99	기타	8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	10	다리와 교량	8
7308	20	탑과 격자주(格子柱)	8
7308	3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7308	4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8
7308	90	기타	8
7309	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	1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8
7310	2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	21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8
7310	29	기타	8
7311	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8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	

		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	10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	8
7312	90	기타	8
7313	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대·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8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4	1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	12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7314	14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7314	19	기타	8
7314	20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7314	3	그 밖의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	3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314	39	기타	8
7314	4	그 밖의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7314	4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314	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8
7314	49	기타	8
7314	5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8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	1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	11	롤러체인(roller chain)	8
7315	12	그 밖의 체인	8
7315	19	부분품	8
7315	20	스키드체인(skid chain)	8
7315	8	그 밖의 체인	
7315	81	스터드링크(stud-link)	8
7315	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7315	89	기타	8
7315	90	그 밖의 부분품	8
7316	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8
7317	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8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	나선가공한 제품	
7318	11	코치 스크루(coach screw)	8
7318	12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8
7318	13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8
7318	14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8
7318	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8
7318	16	너트(nut)	8
7318	19	기타	8
7318	2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	21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8
7318	22	그 밖의 와셔(washer)	8
7318	23	리벳(rivet)	8

7318	24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8
7318	29	기타	8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	40	안전핀과 그 밖의 핀	8
7319	90	기타	8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	10	판상스프링과 그 판	8
7320	20	나선용 스프링	8
7320	90	기타	8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	1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	1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7321	12	액체연료용	8
7321	1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7321	8	그 밖의 기구	

7321	8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7321	82	액체연료용	8
7321	8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7321	90	부분품	8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2	1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	11	주철로 만든 것	8
7322	19	기타	8
7322	90	기타	8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	1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7323	9	기타	
7323	91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8

7323	92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7323	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7323	9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7323	99	기타	8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	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7324	2	목욕통	
7324	21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7324	29	기타	8
7324	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	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7325	9	기타	
7325	9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7325	99	기타	8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	1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	1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7326	19	기타	8
7326	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8
7326	90	기타	8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정제한 구리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은	0.25
비소	0.5
카드뮴	1.3
크로뮴	1.4

마그네슘	0.8
납	1.5
황	0.7
주석	0.8
텔루륨	0.8
아연	1
지르코늄	0.3
그 밖의 원소※는 각각	0.3

※그 밖의 원소의 예: 알루미늄·베릴륨·코발트·철·망간·니켈·규소

나. 구리합금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하는 것

다. 모합금(master alloy)

"모합금(master alloy)"이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고, 그 밖의 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그 밖의 합금을 제조할 때 첨가제나 비(非)철금속을 야금할 때 탈산제·탈황제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인동은 제 2853 호로 분류한다.

라.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 모양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

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
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
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
는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 관(管)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가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wire-bar)와 빌렛
(billet)은 제 7403 호의 구리의 괴(塊)로 본다.

마. 프로파일(profile)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
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
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바.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각
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
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 7403 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
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
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

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지
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고, 직
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
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 제 7409 호와 제 7410 호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아.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
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
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이
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
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원소
가 함유될 경우

-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으며,

- 니켈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이며[참조: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미만인 것[참조: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나.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 다만,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아연의 함유량이 주석의 함유량보다 초과될 수 있으나 100 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다.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구리-니켈 및 아연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니켈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다[참조: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라. 구리-니켈의 합금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7401	00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1. 구리의 매트(mat)	무세
		2. 시멘트동(침전동)	무세
7402	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1. 정제하지 않은 구리	무세
		2.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무세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3	1	정제한 구리	
7403	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7403	12	와이어바(wire-bar)	5
7403	13	빌릿(billet)	5
7403	19	기타	
		1. 슬래브	5
		2. 잉곳(ingot)	5
		3. 기타	5
7403	2	구리합금	
7403	2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5
7403	22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5
7403	29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	

		다]	
		1. 구리-니켈의 합금(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가.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5
		나.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2. 기타	5
7404	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7405	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5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	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8
7406	20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8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	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7407	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	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7407	29	기타	8
7408		구리의 선	
7408	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	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7408	19	기타	8
7408	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	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7408	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7408	29	기타	8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409	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	11	코일 모양	8
7409	19	기타	8
7409	2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	21	코일 모양	8
7409	29	기타	8
7409	3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	31	코일 모양	8
7409	39	기타	8

7409	4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7409	90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	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7410	1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7410	2	뒷면을 붙인 것	
7410	2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7410	2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	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7411	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	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7411	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7411	29	기타	8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412	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7412	2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7413	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8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	10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7415	2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	21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8
7415	29	기타	8
7415	3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	33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8
7415	39	기타	8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	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7418	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8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	10	체인과 그 부분품	8
7419	9	기타	
7419	91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7419	99	기타	8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봉

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
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
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
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프로파일(profile)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
트립·박(箔)·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
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
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
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 7502 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
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
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
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 7506 호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이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니켈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고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철	0.5
산소	0.4
그 밖의 원소, 각각	0.3

나. 니켈 합금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거나
2)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에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 7508.10 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다)에만 적용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7501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	10	니켈의 매트(mat)	무세

7501	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 생산물	
		1. 소결(燒結)한 산화니켈	
		가.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나. 기타	무세
		2. 기타	
		가.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나. 기타	무세
7502		니켈의 괴(塊)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1. 음극	3
		2. 기타	3
7502	20	니켈 합금	3
7503	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7504	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1. 가루	5
		2. 플레이크(flake)	5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7505	1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	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7505	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7505	2	선(線)	
7505	2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7505	2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7506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506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1. 판·시트(sheet)·스트립	3
		2. 박(箔)	5
7506	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1. 판·시트(sheet)·스트립	5
		2. 박(箔)	5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507	1	관(管)	
7507	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8
7507	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7507	20	관(管) 연결구류	8
7508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	
7508	1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8
7508	90	기타	
		1. 전기도금용 양극	8
		2. 니켈 폼(foam)	
		가.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나.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3. 기타	8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

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
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
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
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
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
다.

나. 프로파일(profile)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
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
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
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 7601 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
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
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

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 7606 호와 제 7607 호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 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

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철+규소	1
그 밖의 원소(1), 각각	0.1(2)

(1) 그 밖의 원소: 예를 들면 크로뮴·구리·마그네슘·망간·니켈·아연

(2) 구리는 100분의 0.1 초과 100분의 0.2 이하의 비율로 함유되어야 한다(크로뮴의 함유량과 망간의 함유량은 각각 100분의 0.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다)에만 적용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1	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1
7601	20	알루미늄 합금	
		1.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1
		2. 빌릿(billet)	3
		3. 기타	1
7602	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	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8
7603	20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8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	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7604	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	21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7604	29	기타	8
7605		알루미늄의 선	
7605	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	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7605	19	기타	8
7605	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5	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7605	29	기타	8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	1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	1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7606	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7606	9	기타	
7606	9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7606	9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	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8
7607	19	기타	8

7607	20	뒷면을 붙인 것	8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	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7608	2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7609	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8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	1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7610	90	기타	8
7611	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	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7612	90	기타	8

7613	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8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	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7614	90	기타	8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	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7615	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8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	1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7616	9	기타	
7616	91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8
7616	99	기타	8

제 77 류

(유　보)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의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프로파일(profile)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

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 7801 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 7804 호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아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
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
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이
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
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정제한 납”이란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은	0.02
비소	0.005
비스무트	0.05
칼슘	0.002
카드뮴	0.002
구리	0.08
철	0.002
황	0.002
안티모니	0.005
주석	0.005
아연	0.002
기타(예: 텔루륨), 각각	0.001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7801		납의 괴(塊)	
7801	10	정제한 납	
		1.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2. 기타	3
7801	9	기타	
7801	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3
7801	99	기타	
		1. 정제하지 않은 납	1
		2. 기타	
		가. 납-주석 합금	3
		나. 기타	3
7802	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7804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804	1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804	11	시트(sheet)·스트립·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8
7804	19	기타	8
7804	2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8
7806	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의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프로파일(profile)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제 7901 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 7905 호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

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하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
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
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이
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
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아연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나. 아연합금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그 밖의 원
   소의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 아연 더스트(dust)

   아연증기를 응축시켜 얻어지는 더스트(dust)로서 아연 가루보다 더 미세한 구(球) 모양
   인 미립자로 구성된다. 63 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의 메시(mesh)를 가진 체를 통과하
   미립자가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7901		아연의 괴(塊)	
7901	1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	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7901	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3
7901	20	아연 합금	
		1. 아연-알루미늄 합금	3
		2. 기타	3
7902	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플레이크(flake)	
7903	10	아연 더스트(dust)	8
7903	90	기타	8
7904	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8
7905	00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8
7907	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의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프로파일(profile)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 8001 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이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그 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주석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비스무트(bismuth)나 구리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 미만이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비스무트	0.1
구리	0.4

나. 주석합금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거나

2) 비스무트(bismuth)나 구리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001		주석의 괴(塊)	
8001	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
8001	20	주석 합금	3
8002	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8003	00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8
8007	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소호주:

1. 제 74 류의 주 제 1 호의 “봉”, “프로파일(profile)”, “선(線)”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의 규정은 이 류에 준용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	10	가루	3

8101	9	기타	
8101	94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8101	96	선(線)	8
8101	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8101	99	기타	8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	10	가루	3
8102	9	기타	
8102	94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8102	95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8
8102	96	선(線)	8
8102	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8102	99	기타	8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	2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1. 괴(塊)	3
		2. 가루	3
8103	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8103	90	기타	8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4	1	괴(塊)	
8104	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3
8104	19	기타	3
8104	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8104	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ming)·알갱이, 가루	8
8104	90	기타	8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	2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1. 괴(塊)	3

		2.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3
		3. 가루	2
8105	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8105	90	기타	3
8106	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1. 비스무트(bismuth)의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가. 괴(塊)	3
		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다. 가루	3
		2. 기타	3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	20	카드뮴의 괴(塊), 가루	
		1. 괴(塊)	3
		2. 가루	3
8107	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8107	90	기타	3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2
		2. 가루	3
8108	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8108	90	기타	8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	2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3
		2. 가루	3
8109	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8109	90	기타	
		1. 핵연료용기 제조용	
		가. 관(管)	무세
		나. 판·시트(sheet)·스트립	무세
		다. 봉	무세
		라. 기타	무세

		2. 기타	3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	1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3
8110	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8110	90	기타	3
8111	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	1	베릴륨	
8112	12	괴(塊), 가루	3
8112	13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8112	19	기타	3
8112	2	크로뮴	
8112	21	괴(塊), 가루	3
8112	2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8112	29	기타	3

8112	5	탈륨	
8112	51	괴(塊), 가루	3
8112	5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8112	59	기타	3
8112	9	기타	
8112	92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1. 게르마늄	3
		2. 바나듐	3
		3. 기타	3
8112	99	기타	
		1. 게르마늄	3
		2. 바나듐	3
		3. 기타	3
8113	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3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램프(blow lamp)·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제 820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재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 8466 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 15 부의 주 제 2 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나 전기이발기의 두부(頭部)·날·절삭판은 제 8510 호로 분류한다.

3. 제 8211 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 8215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 8215 호로 분류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8201	10	가래와 삽	8
8201	30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8
8201	4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8201	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8
8201	6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8201	90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수공구	8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	10	수동식 톱	8
8202	20	띠톱의 날	8
8202	3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	31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
8202	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8202	40	체인톱의 날	8

8202	9	그 밖의 톱날	
8202	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8
8202	99	기타	
		1.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5
		2. 기타	8
8203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	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8
8203	2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8
8203	3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8203	40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8204	1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8204	11	조절할 수 없는 것	8
8204	12	조절할 수 있는 것	8

8204	2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8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	10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8
8205	20	망치(hammer, sledge hammer)	8
8205	3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 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8205	4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8
8205	5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	51	가정용 공구	8
8205	59	기타	8
8205	60	블로램프(blow lamp)	8
8205	70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8
8205	9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8
8206	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8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	1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	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8207	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8207	20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8
8207	30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 공구	8
8207	40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8
8207	50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8
8207	60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8
8207	70	밀링(milling)용 공구	8
8207	80	터닝(turning)용 공구	8
8207	90	그 밖의 호환성 공구	8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	10	금속 가공용	8
8208	20	목재 가공용	8
8208	3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8
8208	40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8
8208	90	기타	8
8209	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8210	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	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8211	9	기타	
8211	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8211	92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
8211	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8211	94	칼날	8
8211	9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8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	10	면도기	8
8212	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
8212	90	그 밖의 부분품	8
8213	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8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	10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8
8214	2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
8214	90	기타	8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	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8
8215	2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8
8215	9	기타	

8215	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8215	99	기타	8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주:

1.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 7312 호·제 7315 호·제 7317 호·제 7318 호·제 7320 호의 철강으로 만든 물품 제 74 류부터 제 76 류까지와 제 78 류부터 제 81 류까지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제 8302 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 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	10	자물쇠	8

8301	2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
8301	3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8
8301	40	그 밖의 자물쇠	8
8301	5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8301	60	부분품	8
8301	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	10	경첩	8
8302	20	카스터(castor)	8
8302	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8302	4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	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8
8302	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8302	49	기타	8

8302	5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8302	60	자동도어 폐지기	8
8303	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
8304	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5	1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8
8305	2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8
8305	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	1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8
8306	2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	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8306	29	기타	8
8306	3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8
8307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	10	철강으로 만든 것	8
8307	9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8308	10	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	8
8308	2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8
8308	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8309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	1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8

8309	90	기타	8
8310	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	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8
8311	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8
8311	3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311	90	기타	8

제 16 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 39
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 4010 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부
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 4016 호)

나.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가죽제품·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제
4205 호)과 모피제품(제 4303 호)

다.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콘(cone)·코어(core)·릴(reel)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제 39 류·제 40 류·제 44 류·제 48 류나
제 15 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드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용 천공카드(예: 제 39 류·제 48 류나 제 15 부
에 해당하는 것)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 5910 호)
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 5911 호)

바. 제 7102 호부터 제 7104 호까지의 천연의 것이나 합성·재생한 귀석·반귀석이나 제
7116 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 바늘
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 8522
호).

사. 제 15 부의 주 제 2 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 15 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 39 류)

아. 드릴파이프(drill pipe)(제 7304 호)

자. 금속의 선이나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제 15 부)

차. 제 82 류나 제 83 류의 물품

카. 제 17 부의 물품

타. 제 90 류의 물품

파. 제 91 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하. 제 8207 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 9603 호)나 이의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 40 류·제 42 류·제 43 류·제 45 류·제 59 류·제 6804 호·제 6909 호).

거. 제 95 류의 물품

너.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스풀(spool)에 감긴 것인지 또는 카트리지 또는 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제 9612 호로 분류한다], 또는 제 9620 호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 8484 호·제 8544 호·제 8545 호·제 8546 호·제 8547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 1 호, 제 84 류의 주 제 1 호, 제 85 류의 주 제 1 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 84 류나 제 85 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 8409 호·제 8431 호·제 8448 호·제 8466 호·제 8473 호·제 8487 호·제 8503 호·제 8522 호·제 8529 호·제 8538 호·제 8548 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 8479 호나 제 8543 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 8409 호·제 8431 호·제 8448 호·제 8466 호·제 8473 호·제 8503 호·제 8522 호·제 8529 호·제 8538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 8517 호와 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 8517 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 8409 호·제 8431 호·제 8448 호·제 8466 호·제 8473 호·제 8503 호·제 8522 호·제 8529 호·제 8538 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8487 호나 제 8548 호로 분류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 84 류나 제 85 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 84 류나 제 85 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68 류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 그 밖의 물품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 69 류)

   다. 실험실용 유리제품(제 7017 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 7019 호나 제 7020 호)

   라. 제 7321 호나 제 7322 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 74 류부터 제 76 류까지나 제 78 류부터 제 81 류까지)

마.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

바. 제 8509 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 8525 호의 디지털 카메라

사. 제 17 부의 물품용 방열기

아.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제 9603 호)

2. 제 16 부의 주 제 3 호나 이 류의 주 제 9 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제 8401 호부터 제 8424 호까지와 제 8486 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
기가 동시에 제 8425 호부터 제 8480 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 8401 호부터 제 8424 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 8480
호로 분류하고, 제 8425 호부터 제 8480 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제 8419 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용 기기·부란기·양육기(제 8436 호)

나. 곡물 가습기(제 8437 호)

다. 당즙 추출용 침출기(제 8438 호)

라. 방직용 섬유사·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 8451 호)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설비·실험실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
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

제 8422 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자루나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 8452 호)

나. 제 8472 호의 사무용 기기

제 8424 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잉크젯방식 인쇄기(제 8443 호)

나. 워터제트 절단기(제 8456 호)

3. 제 845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 8457 호·제 8458 호·제 8459 호·제 8460 호·제 8461 호·제 8464 호·제 8465 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 8456 호로 분류한다.

4. 제 8457 호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가.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re)]

나.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닛헤드(unit head)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는 연속으로 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의 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다. 가공물을 서로 다른 유닛헤드(unit head)로 자동 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5. 가. 제 8471 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 8471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 8471 호로 분류한다.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 5 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 8471 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 확성기,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6. 공칭(公稱) 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 분의 1 이하이거나 0.05 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강구(鋼球)는 제 8482 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강구(鋼球)는 제 7326 호로 분류한다.

7.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 2 호나 제 16 부의 주 제 3 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 8479 호로 분류한다. 또한 제 8479 호에는 금속선·방직용 섬유사·그 밖의 재료나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된다[예: 스트랜딩(stranding)기, 트위스팅(twisting)기, 케이블링(cabling)기].

8. 제 8470 호에서 “포켓 사이즈”라는 용어는 크기가 170 밀리미터 × 100 밀리미터 × 45 밀리미터 이하인 기계에만 적용한다.

9. 가. 제 85 류의 주 제 9 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 8486 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 8486 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

나. 이 주와 제 8486 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 제조나 평판 모양인 인쇄회로 기판의 조립이나 그 밖의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 8486 호에는 다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1) 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蘘荷)

라. 제 16 부의 주 제 1 호와 제 84 류의 주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8486 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 8486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8465.20 호의 목적상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란 목재, 코르크, 뼈, 경질 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로서,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것에만 적용한다.

2. 소호 제 8471.49 호에서 "시스템"이란 제 84 류의 주 제 5 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 소호 제 8481.20 호에서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에너지 원천이 가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 또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특별히 "유체 동력"의 전송에 사용되는 밸브를 말한다. 이러한 밸브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예: 감압형, 체크(check)형]. 소호 제 8481.20 호는 제 8481 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4. 소호 제 8482.40 호는 지름이 5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지름의 세 배 이상인 원통 롤러를 갖춘 베어링에만 적용한다. 롤러의 양끝은 둥근 것일 수도 있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	10	원자로	무세

8401	2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무세
8401	3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	무세
8401	40	원자로의 부분품	무세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402	1	증기발생보일러	
8402	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8
8402	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8
8402	19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8
8402	2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
8402	90	부분품	8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	10	보일러	8
8403	90	부분품	8
8404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	10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8

8404	2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
8404	90	부분품	8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 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	1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 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8405	90	부분품	8
8406		증기터빈	
8406	10	선박추진용 터빈	8
8406	8	그 밖의 터빈	
8406	81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8
8406	82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8
8406	90	부분품	8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	10	항공기용 엔진	5
8407	2	선박추진용 엔진	
8407	21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

8407	29	기타	8
8407	3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	31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8
8407	32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것	8
8407	33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1,000 시시 이하인 것	8
8407	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
8407	90	그 밖의 엔진	8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	10	선박추진용 엔진	8
8408	2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8
8408	90	그 밖의 엔진	
		1. 철도차량용 내연기관	5
		2. 기타	
		가. 선박용 내연기관	8
		나. 발전용 내연기관	
		1) 출력이 400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 이나 1,800 인 것으로 한정한다]	4

		2) 기타	8
		다. 제 8429 호용 내연기관	8
		라. 기타	8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	10	항공기 엔진용	5
8409	9	기타	
8409	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8
8409	99	기타	
		1. 철도차량용	5
		2. 제 87 류의 차량용	8
		3. 선박용	8
		4. 기타	8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0	1	수력터빈과 수차	
8410	11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410	12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410	13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8410	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8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8411	1	터보제트	
8411	11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11	12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11	2	터보프로펠러	
8411	21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11	22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11	8	그 밖의 가스터빈	

8411	81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11	82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11	9	부분품	
8411	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11	99	기타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	10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1. 항공기용	5
		2. 기타	8

8412	2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	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
8412	29	기타	8
8412	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	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
8412	39	기타	8
8412	80	기타	8
8412	90	부분품	
		1. 항공기용	5
		2. 수력엔진의 것	8
		3. 기타	8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	1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	11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
8413	19	기타	8
8413	2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	8

		다)	
8413	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8
8413	40	콘크리트 펌프	8
8413	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8
8413	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8
8413	70	그 밖의 원심펌프	8
8413	8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	81	펌프	8
8413	82	액체엘리베이터	8
8413	9	부분품	
8413	91	펌프의 것	8
8413	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8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	10	진공펌프	
		1. 항공기용	8
		2. 기타	
		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8
		다. 기타	8
8414	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
8414	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8
8414	4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 압축기	8
8414	5	팬	
8414	51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8414	59	기타	8
8414	60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8414	80	기타	8
8414	90	부분품	8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	1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8
8415	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

8415	8	기타	
8415	81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
8415	82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8415	83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8
8415	90	부분품	8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	1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8
8416	20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8
8416	3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8416	90	부분품	8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	10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8
8417	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

8417	80	기타	8
8417	90	부분품	8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	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8418	2	가정형 냉장고	
8418	21	압축식	8
8418	29	기타	8
8418	3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8418	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8418	5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8
8418	6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8418	61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
8418	69	기타	8
8418	9	부분품	
8418	91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8

8418	99	기타	8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9	1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	11	가스식인 즉시식 물 가열기	8
8419	19	기타	8
8419	2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8
8419	3	건조기	
8419	31	농산물용	8
8419	32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8
8419	39	기타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3
		2. 기타	8
8419	40	증류기나 정류기	8
8419	50	열교환기	8

8419	60	기체 액화용 기기	8
8419	8	그 밖의 기기	
8419	81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
8419	89	기타	8
8419	90	부분품	8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	1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8
8420	9	부분품	
8420	91	실린더	8
8420	99	기타	8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	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	11	크림분리기	8
8421	12	의류 탈수기	8
8421	19	기타	8

8421	2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	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1. 가정형	8
		2. 기타	
		가.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8
		나.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3
		다. 기타	8
8421	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
8421	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8
8421	29	기타	8
8421	3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	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8
8421	39	기타	8
8421	9	부분품	
8421	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8421	99	기타	8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	

		(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422	1	접시세척기	
8422	11	가정형	8
8422	19	기타	8
8422	2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
8422	30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
8422	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8
8422	90	부분품	8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추	
8423	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8
8423	20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8
8423	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8
8423	8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	81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8423	82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8423	89	기타	8
8423	90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8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	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8424	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8
8424	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
8424	4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8424	41	휴대용 방제기	8
8424	49	기타	8
8424	8	그 밖의 기기	
8424	82	농업용이나 원예용	8
8424	89	기타	8
8424	90	부분품	8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8425	1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	11	전동식	8
8425	19	기타	8
8425	3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8425	31	전동식	8
8425	39	기타	8
8425	4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	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8
8425	42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8
8425	49	기타	8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6	1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	11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8
8426	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
8426	19	기타	8
8426	20	타워크레인(tower crane)	8
8426	3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8
8426	4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426	41	타이어가 달린 것	8
8426	49	기타	8
8426	9	그 밖의 기계	
8426	91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8
8426	99	기타	8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	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8
8427	20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8
8427	90	그 밖의 작업트럭	8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8428	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8
8428	2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
8428	3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	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8
8428	32	그 밖의 버켓형	8
8428	33	그 밖의 벨트형	8
8428	39	기타	8
8428	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8
8428	6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8
8428	90	그 밖의 기계	8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래퍼(scraper)·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8429	1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	
8429	11	무한 궤도식	8
8429	19	기타	8

8429	2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8
8429	30	스크래퍼(scraper)	8
8429	40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8
8429	5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	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8
8429	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8
8429	59	기타	8
8430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	1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8
8430	2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
8430	3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	31	자주식(自走式)	8
8430	39	기타	8
8430	4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	41	자주식(自走式)	8
8430	49	기타	8
8430	5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
8430	6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	61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8
8430	69	기타	8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	1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8
8431	2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8
8431	3	제 8428 호의 기계의 것	
8431	31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8
8431	39	기타	8
8431	4	제 8426 호·제 8429 호·제 8430 호의 기계의 것	
8431	41	버켓(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8
8431	42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8
8431	43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8

8431	49	기타	8
8432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	10	플라우(쟁기)	8
8432	2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8432	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8
8432	29	기타	8
8432	3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8432	31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8
8432	39	기타	8
8432	4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8432	41	퇴비 살포기	8
8432	42	비료 살포기	8
8432	80	그 밖의 기계	8
8432	90	부분품	8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8433	1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	11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8433	19	기타	8
8433	2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8
8433	3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8
8433	4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8
8433	5	그 밖의 수확기와 탈곡기	
8433	51	수확·탈곡 겸용기	8
8433	52	그 밖의 탈곡기	8
8433	53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8
8433	59	기타	8
8433	60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8
8433	90	부분품	8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	10	착유기	8
8434	20	낙농기계	8

8434	90	부분품	8
8435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	10	기계	8
8435	90	부분품	8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	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8
8436	2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	21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
8436	29	기타	8
8436	80	그 밖의 기계	8
8436	9	부분품	
8436	91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
8436	99	기타	8
8437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	10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8
8437	80	그 밖의 기계	8
8437	90	부분품	8
8438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	10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8
8438	2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8
8438	30	설탕 제조용 기계	8
8438	40	양조용 기계	8
8438	50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8
8438	6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8
8438	80	그 밖의 기계	8
8438	90	부분품	8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8439	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8
8439	20	종이·판지의 제조용 기계	8

8439	30	종이·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8
8439	9	부분품	
8439	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8439	99	기타	8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	10	기계	8
8440	90	부분품	8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	10	절단기	8
8441	20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8
8441	3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
8441	4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8
8441	80	그 밖의 기계	8
8441	90	부분품	8
8442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	30	기계류·장치·장비	8
8442	40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8
8442	5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	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	11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8
8443	12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443	13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
8443	14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8443	15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8443	16	곡면인쇄용 기계	8

8443	17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8
8443	19	기타	8
8443	3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	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8
8443	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8
8443	39	기타	8
8443	9	부분품과 부속품	
8443	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8443	99	기타	8
8444	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8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8445	1	방적준비기계	
8445	11	카드기(carding machine)	8

8445	12	코밍기(combing machine)	8
8445	13	연조기나 조방기	8
8445	19	기타	8
8445	20	방적기계	8
8445	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8
8445	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8
8445	90	기타	8
8446		직기(직조기)	
8446	1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 직기	8
8446	2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	21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8
8446	29	기타	8
8446	3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8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8447	1	원형 편기	

8447	11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8447	12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8447	20	횡(橫)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8
8447	90	기타	8
8448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8448	1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	11	도비(dobby)기·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조립용 기계	8
8448	19	기타	8
8448	20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
8448	3	제 8445 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	31	침포	8
8448	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1.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닛와이어(garnet wire)는	5

		제외한다]	
		2. 기타	8
8448	33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링트래블러	
		1. 스핀들 플라이어	5
		2. 기타	8
8448	39	기타	8
8448	4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	42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8
8448	49	기타	8
8448	5	제 8447 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	51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8
8448	59	기타	8
8449	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8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0	1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	11	완전자동 세탁기	8

8450	12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8450	19	기타	8
8450	20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
8450	90	부분품	8
8451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 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8451	10	드라이클리닝기	8
8451	2	건조기	
8451	21	1 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8451	29	기타	8
8451	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8
8451	40	세탁기·표백기·염색기	8

8451	5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8
8451	80	그 밖의 기계	8
8451	90	부분품	8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	10	가정형 재봉기	8
8452	2	그 밖의 재봉기	
8452	21	자동식	8
8452	29	기타	8
8452	30	재봉기용 바늘	8
8452	9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8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	10	원피·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8
8453	2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8
8453	80	그 밖의 기계	8

8453	90	부분품	8
8454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	10	전로	8
8454	2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8
8454	30	주조기	8
8454	90	부분품	8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	10	관 압연기	8
8455	2	그 밖의 압연기	
8455	21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8
8455	22	냉간(冷間) 압연기	8
8455	30	압연기용 롤	8
8455	90	그 밖의 부분품	8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8456	1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456	11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8

8456	12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
8456	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8456	3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8
8456	40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8
8456	50	워터제트 절단기	8
8456	90	기타	8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	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8
8457	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
8457	3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8	1	수평 선반	
8458	11	수치제어식	8
8458	19	기타	8

8458	9	그 밖의 선반	
8458	91	수치제어식	8
8458	99	기타	8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	1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8
8459	2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8459	21	수치제어식	8
8459	29	기타	8
8459	3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	31	수치제어식	8
8459	39	기타	8
8459	4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8459	41	수치제어식	8
8459	49	기타	8
8459	5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	51	수치제어식	8
8459	59	기타	8
8459	6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	61	수치제어식	8
8459	69	기타	8
8459	7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8
8460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8460	1	평면 연삭기	
8460	12	수치제어식	8
8460	19	기타	8
8460	2	그 밖의 연삭기	
8460	22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8460	23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8460	24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8460	29	기타	8
8460	3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	31	수치제어식	8
8460	39	기타	8
8460	4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8
8460	90	기타	8
8461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	2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8
8461	3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
8461	40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8
8461	50	톱기계나 절단기	8
8461	90	기타	8
8462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	

		(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	10	단조기(鍛造機)·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8
8462	2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	21	수치제어식	8
8462	29	기타	8
8462	3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	31	수치제어식	8
8462	39	기타	8
8462	4	펀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	41	수치제어식	8
8462	49	기타	8
8462	9	기타	
8462	91	액압 프레스	8
8462	99	기타	8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	1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463	20	나사 전조기	8
8463	30	선 가공기	8
8463	90	기타	8
8464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	
8464	10	톱기계	8
8464	20	연마기나 광택기	8
8464	90	기타	8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	10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465	2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8
8465	9	기타	

8465	91	톱 기계	8
8465	92	평삭기·밀링머신(milling machine)·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8
8465	93	연삭기·샌딩머신(sanding machine)·광택기	8
8465	94	굽힘기나 조립기	8
8465	95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8
8465	96	스플리팅(splitting)기·슬라이싱(slicing)기·박피기	8
8465	99	기타	8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	1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8
8466	20	가공용 홀더	8
8466	3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8
8466	9	기타	
8466	91	제 8464 호의 기계용	8

8466	92	제 8465 호의 기계용	8
8466	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8
8466	94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8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67	1	압축공기식의 것	
8467	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8467	19	기타	8
8467	2	전동기를 갖춘 것	
8467	21	각종 드릴	8
8467	22	톱	8
8467	29	기타	8
8467	8	그 밖의 공구	
8467	81	체인톱	8
8467	89	기타	8
8467	9	부분품	
8467	91	체인톱의 것	8

8467	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8467	99	기타	8
8468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	10	수지식 취관(吹管)	8
8468	2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8
8468	80	그 밖의 기기	8
8468	90	부분품	8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	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8
8470	2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	21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8
8470	29	기타	8
8470	30	그 밖의 계산기	8
8470	50	금전등록기	8

8470	90	기타	8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	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471	4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	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8471	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8
8471	5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8471	6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8471	70	기억장치	8
8471	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8
8471	90	기타	8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	10	등사기	8
8472	30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함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8
8472	90	기타	8
8473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	2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	21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의 것	8
8473	29	기타	8
8473	3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
8473	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
8473	50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	1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8
8474	20	파쇄기나 분쇄기	8
8474	3	혼합기나 반죽기	
8474	31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8
8474	32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8
8474	39	기타	8
8474	80	그 밖의 기계	8
8474	90	부분품	8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	1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8
8475	2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	21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8
8475	29	기타	8
8475	90	부분품	8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8476	2	음료 자동판매기	
8476	2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8476	29	기타	8
8476	8	그 밖의 기계	
8476	8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8476	89	기타	8
8476	90	부분품	8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	10	사출 성형기	8
8477	20	압출기	8
8477	30	취입 성형기	8
8477	40	진공 성형기와 그 밖의 열 성형기	8
8477	5	그 밖의 성형기	
8477	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
8477	59	기타	8
8477	80	그 밖의 기계	8

8477	90	부분품	8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	10	기계류	8
8478	90	부분품	8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	10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8
8479	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
8479	3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8
8479	4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
8479	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8479	60	증발식 에어쿨러	8
8479	7	탑승교	
8479	71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8
8479	79	기타	8
8479	8	그 밖의 기기	

8479	81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1. 금속세척기	8
		2. 금속도금기	
		가. 반도체 제조용	3
		나. 기타	8
		3. 권선기	8
		4.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8
		5. 기타	8
8479	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	8
8479	89	기타	8
8479	90	부분품	8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	10	금속 주조용 주형틀	8
8480	20	주형 베이스	8
8480	30	주형 제조용 모형	8
8480	4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	41	사출식이나 압축식	8
8480	49	기타	8
8480	50	유리 성형용 주형	8
8480	6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
8480	7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	71	사출식이나 압축식	8
8480	79	기타	8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	10	감압밸브	8
8481	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8481	30	체크(논리턴)밸브	8
8481	40	안전밸브	8
8481	80	그 밖의 기기	8
8481	90	부분품	8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	10	볼베어링(ball bearing)	
		1. 내경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2. 기타	8
8482	2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
8482	3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8482	4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8482	5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8482	8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8482	9	부분품	
8482	91	볼·니들·롤러	8
8482	99	기타	8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	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83	2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83	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483	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1. 항공기용	
		가. 롤러스크루(roller screw)	3
		나. 기타	3
		2. 기타	8
8483	5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8

		포함한다]	
8483	6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1. 항공기용	3
		2. 풍력발전기용	5
		3. 기타	8
8483	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1. 항공기용	3
		2. 풍력발전기용	5
		3. 기타	8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	1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8484	2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

8484	90	기타	8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	1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8
8486	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8
8486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건식 식각기	5
		2. 도포기	
		가.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나. 기타	8
		3.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증착기	
		가. 물리적 방식의 것	5
		나. 화학적 방식의 것	5
		다. 기타	8
		4. 기타	8
8486	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1.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3
		2. 기타	8
8486	90	부분품과 부속품	8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	1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8
8487	90	기타	8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 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나. 제 7011 호의 유리제품

   다. 제 8486 호의 기계와 기기

   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진공기기(제 9018 호)

마. 제 94 류의 전기가열식 가구

2. 제 8501 호부터 제 8504 호까지에서는 제 8511 호·제 8512 호·제 8540 호·제 8541 호·제 8542 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정류기(metal tank mercury arc)는 제 8504 호로 분류한다.

3. 제 8507 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 장치[예: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에 사용될 물품의 보호용 하우징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4. 제 8509 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 8414 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 8421 호), 접시세척기(제 8422 호), 가정용 세탁기(제 8450 호), 로울기(roller machine)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 8420 호나 제 8451 호), 재봉기(제 8452 호), 전기가위(제 8467 호), 전열기기(제 8516 호)는 제 8509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5. 제 8523 호에서

가.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2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저항기와 같은 수동(受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나. "스마트카드"란 하나 이상의 칩 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RAM)이나 롬(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스
트라이프(magnetic stripe)나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
이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6. 제 8534 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
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저항
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
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
정류·변조·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
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 저항기, 축전기나 인덕턴
스(inductance)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않은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
되는 박막회로(thin-film circuit)나 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는 제 8542 호로 분류한
다.

7. 제 8536 호에서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는 디지털통신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
은 신호의 증폭·재생·변조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8. 제 8537 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그 밖의 전기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 적외선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 8543 호).

9. 제 8541 호와 제 8542 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
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
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
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monolithic)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질
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 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이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frame)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른 능
동 회로소자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실리콘 기반 센서·엑추에이터(actuators)·오실레이터(oscillators)·공진자
(resonators)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 8532 호·제 8533 호·제 8541 호에 분류되
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 8504 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리드
볼·랜드·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
되기 위한 부품이다.

이 정의에서

가)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

나) “실리콘 기반”이란 실리콘 기판 위에 조립되었거나, 실리콘 재료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집적회로 다이(die) 위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하여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양”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실제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2) “실리콘 기반 엑추에이터(actuators)”는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

(3) “실리콘 기반 공진기(resonators)”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

(4) “실리콘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s)”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을 말한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 8541 호나 제 8542 호는, 제 852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10. 제 8548 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소호주:

1. 소호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카세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만을 분류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	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8501	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501	3	그 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발전기	
8501	31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8
8501	3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501	33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501	34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8501	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전동기	8
8501	5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전동기	
8501	51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8

8501	52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501	5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8501	6	교류발전기	
8501	6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1	6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1	6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1	64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	1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	1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2	1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2	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8502	2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8
8502	3	그 밖의 발전세트	
8502	31	풍력의 것	8

8502	39	기타	8
8502	40	회전변환기	8
8503	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동기의 것	8
		2. 발전기·발전세트의 것	
		가. 풍력발전기용	5
		나. 기타	8
		3. 회전변환기의 것	8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	10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8
8504	2	유입식 변압기	
8504	21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4	22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4	23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8504	3	그 밖의 변압기	
8504	31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4	32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4	33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8504	34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8504	40	정지형 변환기	8
8504	50	그 밖의 유도자	8
8504	90	부분품	8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	1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	11	금속으로 만든 것	8
8505	19	기타	8
8505	2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8
8505	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8506		일차전지	
8506	10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1. 망간건전지나 알칼리망간건전지	13

		2. 기타	8
8506	3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8
8506	4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
8506	50	리튬으로 만든 것	8
8506	60	에어징크로 만든 것	8
8506	80	그 밖의 일차전지	8
8506	90	부분품	8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	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
8507	2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
8507	30	니켈-카드뮴 축전지	8
8507	40	니켈-철 축전지	8
8507	5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
8507	60	리튬이온 축전지	8
8507	80	그 밖의 축전지	8
8507	90	부분품	8

8508		진공청소기	
8508	1	전동기를 갖춘 것	
8508	11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
8508	19	기타	8
8508	60	그 밖의 진공청소기	8
8508	70	부분품	8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	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8
8509	80	그 밖의 기기	8
8509	90	부분품	8
8510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	10	면도기	8
8510	20	이발기	8
8510	30	모발제거기	8
8510	90	부분품	8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	

		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	10	점화플러그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511	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511	30	배전기와 점화코일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511	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511	50	그 밖의 발전기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511	80	그 밖의 기기	
		1. 항공기용	3
		2. 기타	8
8511	90	부분품	
		1.항공기용	3
		2. 기타	8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	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
8512	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
8512	30	음향신호용 기구	8
8512	4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	8
8512	90	부분품	8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	10	전등	8

8513	90	부분품	8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	10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
8514	2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8
8514	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
8514	4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
8514	90	부분품	8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 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8515	1	땜질용이나 납땜용 기기	
8515	11	납땜용 인두와 건(gun)	8
8515	19	기타	8
8515	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	21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8

8515	29	기타	8
8515	3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	31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8
8515	39	기타	8
8515	80	그 밖의 기기	8
8515	90	부분품	8
8516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	1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
8516	2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516	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8516	29	기타	8
8516	3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8516	31	헤어드라이어	8
8516	32	그 밖의 이용기기	8

8516	33	손 건조기	8
8516	40	전기다리미	8
8516	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8
8516	60	그 밖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	8
8516	7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	71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8
8516	72	토스터	8
8516	79	기타	8
8516	80	전열용 저항체	8
8516	90	부분품	8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제 8527 호·제 8528 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	1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	11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517	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8
8517	18	기타	8
8517	6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	61	기지국	8
8517	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8
8517	69	기타	8
8517	70	부분품	8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 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8518	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8
8518	2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8	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8518	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8518	29	기타	8

8518	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8
8518	40	가청주파 증폭기	8
8518	50	음향 증폭세트	8
8518	90	부분품	8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	2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8
8519	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8
8519	50	전화응답기	8
8519	8	그 밖의 기기	
8519	81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8
8519	89	기타	8
8521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	10	마그네틱 테이프형	8
8521	90	기타	8
8522		제 8519 호나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	10	픽업 카트리지	8
8522	90	기타	8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	2	자기식 매체	
8523	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8523	29	기타	
		1. 기록이 안 된 매체	8
		2. 기록된 매체	
		가. 마그네틱 테이프(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1) 폭이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나) 기타	8
		2) 폭이 4 밀리미터 초과 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나) 기타	8
		3)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나) 기타	8
		나. 그 밖의 마그네틱테이프	
		1) 폭이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2) 폭이 4 밀리미터 초과 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가) 비디오 녹화된 것	20 원/ 표준속도 매분
		나) 기타	8
		다. 기타	
		1)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나) 기타	8
		2) 기타	8
8523	4	광학식 매체	

8523	41	기록이 안 된 것	8
8523	49	기타	
		1.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가.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2) 기타	8
		나.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
		다. 기타	8
		2. 기타	
		가.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2) 기타	8
		나. 기타	8
8523	5	반도체 매체	
8523	51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1. 기록이 안 된 매체	8
		2. 기록된 매체	

		가.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2) 기타	8
		나. 기타	8
8523	52	스마트카드	8
8523	59	기타	
		1. 기록이 안 된 매체	8
		2. 기록된 매체	
		가.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2) 기타	8
		나. 기타	8
		3.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8
8523	80	기타	
		1. 기록이 안 된 매체	8
		2. 기록된 매체	
		가. 축음기용 레코드판	8

		나.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무세
		2) 기타	8
		다. 기타	8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	50	송신기기	8
8525	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8
8525	8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1. 텔레비전 카메라	8
		2. 디지털 카메라	무세
		3.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무세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	
8526	10	레이더기기	8
8526	9	기타	
8526	91	항행용 무선기기	8
8526	92	무선 원격조절기기	8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7	1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	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
8527	13	그 밖의 기기(음성 기록기기나 음성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8527	19	기타	8
8527	2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	21	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8
8527	29	기타	8
8527	9	기타	
8527	91	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8
8527	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
8527	99	기타	8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	4	음극선관 모니터	

8528	42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8
8528	49	기타	8
8528	5	그 밖의 모니터	
8528	52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8
8528	59	기타	8
8528	6	프로젝터(projector)	
8528	62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8
8528	69	기타	8
8528	7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	71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8
8528	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8
8528	73	기타(단색)	8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	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
8529	90	기타	8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	1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8
8530	80	그 밖의 기기	8
8530	90	부분품	8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	1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
8531	2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8
8531	80	그 밖의 기기	8
8531	90	부분품	8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	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 전력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8
8532	2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	21	탄탈륨의 것	8

8532	22	알루미늄 전해의 것	8
8532	23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8
8532	24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8
8532	25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8
8532	29	기타	8
8532	3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8
8532	90	부분품	8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	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8
8533	2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	2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8
8533	29	기타	8
8533	3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	3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8
8533	39	기타	8
8533	4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	8

		(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	90	부분품	8
8534	00	인쇄회로	
		1.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8
		2.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무세
		3. 기타	8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	10	퓨즈	8
8535	2	자동차단기	
8535	21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8535	29	기타	8
8535	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8
8535	4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8
8535	90	기타	8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	

		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10	퓨즈	8
8536	20	자동차단기	8
8536	3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8
8536	4	계전기(繼電器)	
8536	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8
8536	49	기타	8
8536	50	그 밖의 개폐기	8
8536	6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8536	61	램프홀더	8
8536	69	기타	8
8536	7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
8536	90	그 밖의 기기	8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	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

8537	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8
8538		부분품(제 8535 호·제 8536 호·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	1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
8538	90	기타	8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	10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	8
8539	2	그 밖의 필라멘트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	21	텅스텐 할로겐의 것	8
8539	22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539	29	기타	8
8539	3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	31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8
8539	32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램프, 메탈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8
8539	39	기타	8

8539	4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	41	아크램프	8
8539	49	기타	
		1. 자외선램프	
		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나. 기타	8
		2. 적외선램프	8
8539	50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
8539	90	부분품	8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8540	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	11	천연색	8
8540	12	단색	8
8540	2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8
8540	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	8

		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0	60	그 밖의 음극선관	8
8540	7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	71	자전관(magnetron)	8
8540	79	기타	8
8540	8	그 밖의 관	
8540	81	수신관이나 증폭관	8
8540	89	기타	8
8540	9	부분품	
8540	91	음극선관의 것	8
8540	99	기타	8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8
8541	2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	21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8
8541	29	기타	8
8541	30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8
8541	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8
8541	50	그 밖의 반도체디바이스	8
8541	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
8541	90	부분품	8
8542		전자집적회로	
8542	3	전자집적회로	
8542	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8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8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무세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가.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무세
		나.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5
		다. 기타	8
8542	32	메모리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8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8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무세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가.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무세
		나.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5
		다. 기타	8
8542	33	증폭기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8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8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무세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가.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무세
		나.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5
		다. 기타	8
8542	39	기타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8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8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무세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가.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무세
		나.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5
		다. 기타	8
8542	90	부분품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의 것	8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것	8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것	무세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의 것	
		가.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무세
		나.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5
		다. 기타	8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	10	입자가속기	8
8543	20	신호발생기	8
8543	3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8
8543	70	그 밖의 기기	8
8543	90	부분품	8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	1	권선(捲線)용 전선	
8544	11	구리로 만든 것	8

8544	19	기타	8
8544	20	동축 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
8544	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
8544	4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	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8
8544	49	기타	8
8544	6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544	70	광섬유 케이블	8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	1	전극	
8545	11	노(爐)용	5
8545	19	기타	5
8545	20	브러시	8
8545	90	기타	8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6	10	유리로 만든 것	8

8546	20	도자제의 것	8
8546	90	기타	8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	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8547	2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
8547	90	기타	8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	1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1. 소호 제 3824.84 호부터 제 3824.88 호까지, 제 3824.91 호, 제 3824.99 호의 것	8
		2. 소호 제 7204.21 호, 제 7204.29 호, 제 7204.30 호, 제 7204.49 호의 것	무세
		3. 소호 제 7404.00 호의 것	무세
		4. 소호 제 7503.00 호, 제 7902.00 호의 것	무세

		5. 소호 제 7802.00 호의 것	무세
		6. 소호 제 8107.30 호, 제 8111.00 호의 것	3
		7. 소호 제 8506.10 호, 제 8506.30 호, 제 8506.40 호, 제 8506.50 호, 제 8506.60 호, 제 8506.80 호의 것	8
		8. 기타	8
8548	90	기타	8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1. 이 부에서 제 9503 호나 제 9508 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 9506 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 8484 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 4016 호)

   나. 제 15 부의 주 제 2 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 15 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 39 류)

   다. 제 82 류의 물품(공구)

라. 제 8306 호의 물품

마. 제 8401 호부터 제 8479 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 8481 호나 제 8482 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 8483 호의 물품

바. 전기기기(제 85 류)

사. 제 90 류의 물품

아. 제 91 류의 물품

자. 무기(제 93 류)

차. 제 9405 호의 램프나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 9603 호)

3. 제 86 류부터 제 88 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은 제 87 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수륙양용 자동차는 제 87 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제 88 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 86 류[호버트레인(hovertrain)]

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 87 류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 89 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에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목재나 콘크리트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받침목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가이드트랙섹션(guide-track section)(제 4406 호나 제 6810 호)

나. 제 7302 호의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건설용 재료

다. 제 8530 호의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용 기기

2. 제 8607 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포함된다.

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금속으로 만든 바퀴·외륜(hoop)·윤심(hub)과 그 부
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frame)·언더프레임(underframe)·보기(bogie)[대차(臺車)]·비셀보기
(bissel-bogie)

다. 차축함과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훅과 그 밖의 연결기와 통로연결기

마. 차체

3. 제 8608 호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포함하되, 주 제 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조립된 선로·전차대(轉車臺)·플랫폼용 완충기·로딩게이지(loading gauge)

나. 완목(腕木)신호기, 기계식 신호판, 건널목용·신호용·전철용(轉轍用) 제어기, 그 밖의
철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
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전등을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1	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8601	2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2	10	디젤 전기기관차	5
8602	90	기타	5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	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1. 객차	5
		2. 화차	5
8603	90	기타	
		1. 객차	5
		2. 화차	5
8604	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궤도검사차]	
		1. 궤도검사차	5
		2. 기타	5
8605	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1. 객차	5
		2. 수하물차	5
		3. 기타	5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	1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5
8606	3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8606	9	기타	
8606	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5
8606	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8606	99	기타	5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8607	1	보기(bogie)·비셀보기(bissel-bogie)·차축·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	11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8607	12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8607	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1. 차축	5

		2. 차륜	5
		3. 윤축(輪軸)	5
		4. 기타	5
8607	2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	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8607	29	기타	5
8607	30	훅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1. 훅	5
		2. 연결장치	5
		3. 완충장치	5
		4. 기타	5
8607	9	기타	
8607	91	기관차용	5
8607	99	기타	5
8608	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8
8609	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액체 운반용	무세
		2. 압축가스 운반용	무세
		3. 일반화물 운반용	무세
		4.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무세
		5. 냉동용과 냉장용	무세
		6. 기타	무세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류에는 궤도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철도용이나 궤도용 차량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트랙터”란 주로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 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호환성 장치로서 제 8701 호의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와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들이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는 제 8706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 8702 호부터 제 8704 호까지로 분류한다.

4. 제 8712 호에는 각종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 9503 호로 분류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	1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8
8701	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
8701	30	무한궤도식 트랙터	8
8701	9	기타(엔진동력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8701	91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701	92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초과 37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701	93	엔진의 동력이 37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701	94	엔진의 동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13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701	95	엔진의 동력이 13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	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10
8702	2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10
8702	30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10
8702	40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10
8702	90	기타	10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	10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10
8703	2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	21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10
8703	22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1,500 시시 이하인 것	10
8703	23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3,000 시시 이하인 것	10
8703	24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10

8703	3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	31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10
8703	32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2,500 시시 이하인 것	10
8703	33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10
8703	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0
8703	5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0
8703	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8703	7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8703	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10
8703	90	기타	10
8704		화물자동차	

8704	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8704	2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	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0
8704	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10
8704	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10
8704	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	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0
8704	32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10
8704	90	기타	10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5	10	기중기차(crane lorry)	8
8705	2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8
8705	30	소방차	8
8705	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8705	90	기타	8
8706	00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	10	제 8703 호의 차량용	8
8707	90	기타	8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	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8708	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	21	안전벨트	8
8708	29	기타	8
8708	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
8708	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
8708	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8
8708	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
8708	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

8708	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	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8708	92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8
8708	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8708	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
8708	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8
8708	99	기타	8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	1	차량	
8709	11	전기식의 것	8
8709	19	기타	8
8709	90	부분품	8
8710	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1. 전차	무세
		2. 그 밖의 장갑차량	무세

		3. 부분품	무세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	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
8711	2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
8711	3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
8711	4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
8711	5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
8711	60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8
8711	90	기타	8
8712	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8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	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8
8713	90	기타	8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	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8
8714	2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8
8714	9	기타	
8714	91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
8714	92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8
8714	93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휠(sprocket-wheel)	8
8714	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8
8714	95	안장	8
8714	96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8
8714	99	기타	8
8715	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5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	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8

8716	2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8716	3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	31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
8716	39	기타	8
8716	4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8716	80	그 밖의 차량	8
8716	90	부분품	8

제 88 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소호주:

1. 소호 제 8802.11 호부터 제 8802.40 호까지에서 “자체 중량”이란 정상비행 상태에서의 기체(機體) 중량을 말한다[승무원·연료·장비(영구 장착된 장비는 제외한다)의 중량은 제외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801	00	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1.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무세
		2. 기타	
		가. 기구와 비행선	8
		나. 기타	무세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2	1	헬리콥터	
8802	11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1. 군용	무세
		2. 기타	무세
8802	12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 군용	무세
		2. 기타	무세
8802	2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 프로펠러식	무세
		2. 터보프로펠러식	무세

		3. 터보제트식	무세
		4. 기타	무세
8802	3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초과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 프로펠러식	무세
		2. 터보프로펠러식	무세
		3. 터보제트식	무세
		4. 기타	무세
8802	4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 프로펠러식	무세
		2. 터보프로펠러식	무세
		3. 터보제트식	무세
		4. 기타	무세
8802	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1. 우주선	
		가. 인공위성	무세
		나. 기타	무세

		2. 우주선 운반로켓	무세
		3. 서보비틀(suborbital)	무세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	1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무세
8803	2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무세
8803	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 비행기의 것	무세
		2. 헬리콥터의 것	무세
8803	90	기타	
		1.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무세
		2.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무세
		3. 기타	무세
8804	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8
		2. 로토슈트(rotochute)	무세

		3. 부분품과 부속품	
		가.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8
		나. 로토슈트(rotochute)의 것	무세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	10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1. 항공기 발진장치	
		가. 군용·경찰용	무세
		나. 기타	5
		2.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가. 군용·경찰용	무세
		나. 기타	5
		3. 부분품	
		가. 군용·경찰용	무세
		나. 기타	5
8805	2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	21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1. 모의공중전장치	
		가. 군용·경찰용	무세
		나. 기타	5
		2. 부분품	
		가. 군용·경찰용	무세
		나. 기타	5
8805	29	기타	
		1. 그 밖의 지상비행 훈련장치	
		가. 군용·경찰용	무세
		나. 기타	5
		2. 부분품	
		가. 군용·경찰용	무세
		나. 기타	5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주:

1. 선체, 미완성·불완전 선박(조립·미조립·분해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완성된 선박(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 8906 호로 분류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	1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무세
8901	20	탱커(tanker)	무세
8901	3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8901	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1. 화물선	무세
		2. 화객선	무세
8902	00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1. 어선	
		가. 철강선	무세
		나. 에프알피(FRP)선	무세

		다. 목조선	무세
		라. 기타	무세
		2.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가.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무세
		나. 기타	무세
8903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	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8
8903	9	기타	
8903	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8903	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8
8903	99	기타	8
8904	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1. 예인선	5
		2.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5
		3. 기타	5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	10	준설선	5
8905	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8905	90	기타	
		1. 조명선	5
		2. 소방선	5
		3. 기중기선	5
		4. 해난구조선	5
		5. 시추선	5
		6. 부선거(艀船渠)	5
		7. 기타	5
8906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	10	군함	무세
8906	90	기타	무세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8907	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5
8907	90	기타	

		1. 부교(소호 제 8907.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2. 탱크	5
		3. 코퍼댐(coffer-dam)	5
		4. 부잔교(landing stage)	5
		5. 부표	5
		6. 수로부표	5
		7. 기타	5
8908	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1. 해체용 선박	무세
		2. 기타	무세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 4016 호),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제 4205 호), 방직용 섬유제품(제 5911 호)

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어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 11 부)

다. 제 6903 호의 내화제품과 제 6909 호의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라. 제 7009 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광학소자를 제외한 비금속(卑金屬)이나 귀금속으로 만든 거울(제 8306 호나 제 71 류)

마. 제 7007 호·제 7008 호·제 7011 호·제 7014 호·제 7015 호·제 7017 호의 물품

바. 제 15 부의 주 제 2 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 15 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 39 류)

사. 제 8413 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 계수기·검사기나 따로 분리하여 제시되는 저울용 추(제 8423 호),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제 8425 호부터 제 8428 호까지), 각종 종이나 판지의 절단기(제 8441 호), 제 8466 호의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가공물이나 공구 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식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은 제외한다), 계산기(제 8470 호), 제 8481 호의 밸브나 그 밖

의 기기, 제 8486 호의 기계와 기기[고감도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drawing)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아. 사이클용·자동차용 서치라이트(searchlight)나 스포트라이트(spotlight)(제 8512 호), 제 8513 호의 전기식 휴대용 램프, 영화용인 음성의 기록용·재생용·재기록용 기기(제 8519 호), 사운드헤드(sound-head)(제 8522 호)·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 8525 호),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제 8526 호),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제 8536 호), 수치제어기기(제 8537 호),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제 8539 호), 광섬유 케이블(제 8544 호)

자. 제 9405 호의 서치라이트(searchlight)와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차. 제 95 류의 물품

카. 제 9620 호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용적 측정구(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파. 스풀(spool)·릴(reel)이나 이와 유사한 지지구(支持具)[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 3923 호나 제 15 부)]

2. 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 84 류·제 85 류·제 90 류·제 91 류 중의 어느 호(제 8487 호·제 8548 호·제 9033 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 9010 호·제 9013 호·제 9031 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 9033 호로 분류한다.

3. 제 16 부의 주 제 3 호와 제 4 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4. 제 9005 호에서는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수함용이나 전차용 잠망경과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용 망원경은 제외하며, 이러한 망원조준기, 잠망경과 망원경은 제 9013 호로 분류한다.

5. 제 9013 호와 제 9031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 9031 호로 분류한다.

6. 제 9021 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하는 기기

7. 제 9032 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내주:

1. 소호 제 9006.51 호·제 9006.52 호·제 9006.53 호·제 9006.59 호에서 "특수용도 사진기"란 현미경용·반도체소자 촬영용과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사진기를 말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	10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8
9001	2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8
9001	30	콘택트렌즈	8
9001	4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8
9001	5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8
9001	90	기타	8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2	1	대물렌즈	
9002	11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8

9002	19	기타	8
9002	20	필터	8
9002	90	기타	
		1. 사진기용	8
		2. 기타	
		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나. 기타	8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9003	1	테와 장착구	
9003	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9003	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9003	90	부분품	8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	10	선글라스	8
9004	90	기타	8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	

		다)	
9005	10	쌍안경	8
9005	80	그 밖의 기기	8
9005	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	3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8
9006	40	즉석인화 사진기	8
9006	5	그 밖의 사진기	
9006	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1. 특수용도 사진기	8
		2. 기타	8
9006	52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1. 특수용도 사진기	8
		2. 기타	8
9006	53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1. 특수용도 사진기	8
		2. 기타	8
9006	59	기타	
		1. 특수용도 사진기	8
		2. 기타	8
9006	6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	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9006	69	기타	8
9006	9	부분품과 부속품	
9006	91	카메라용	8
9006	99	기타	8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7	10	촬영기	8
9007	20	영사기	8
9007	9	부분품과 부속품	
9007	91	촬영기용	8
9007	92	영사기용	8

9008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	50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8
9008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	10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8
9010	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8
9010	60	영사용 스크린	8
9010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	10	입체현미경	8
9011	2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8
9011	80	그 밖의 현미경	8
9011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	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8
9012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	1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8
9013	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8
9013	80	그 밖의 기기	8
9013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	1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8
9014	2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8
9014	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8
9014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	
9015	10	거리측정기	8
9015	2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8
9015	30	수준기(水準器)	8
9015	40	사진측량기기	8
9015	80	그 밖의 기기	8
9015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16	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8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	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
9017	20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	8
9017	3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8
9017	80	그 밖의 기기	8
9017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	

		(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	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	11	심전계	8
9018	12	초음파 영상진단기	8
9018	13	자기공명 촬영기기	8
9018	14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8
9018	19	기타	8
9018	2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8
9018	3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	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9018	32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8
9018	39	기타	8
9018	4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	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9018	49	기타	8
9018	5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8

9018	90	그 밖의 기기	8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	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8
9019	20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8
9020	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8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	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 치료용 기기	8
9021	2	의치와 치과용품	
9021	21	의치	8
9021	29	기타	8
9021	3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	31	인조관절	8
9021	39	기타	8
9021	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8

9021	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8
9021	90	기타	8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	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	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8
9022	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8
9022	14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8
9022	19	그 밖의 용도의 것	8
9022	2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	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8
9022	29	그 밖의 용도의 것	8
9022	30	엑스선관	8
9022	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8
9023	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	8

		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	10	금속재료 시험기기	8
9024	80	그 밖의 기기	8
9024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5	1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	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8
9025	19	기타	8
9025	80	그 밖의 기기	8
9025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제 9032 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	1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8

9026	20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8
9026	80	그 밖의 기기	8
9026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	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8
9027	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8
9027	30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9027	50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9027	80	그 밖의 기기	8
9027	90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9028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	10	기체용 계기	8
9028	20	액체용 계기	8
9028	30	전기용 계기	8

9028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	10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8
9029	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8
9029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	1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8
9030	2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8
9030	3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	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8
9030	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
9030	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9030	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9030	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8
9030	8	그 밖의 기기	
9030	82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8
9030	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9030	89	기타	8
9030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	10	균형시험기	8
9031	20	테스트벤치(test bench)	8
9031	4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	41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8
9031	49	기타	8
9031	80	그 밖의 기기	8
9031	90	부분품과 부속품	8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	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1. 가변식	
		가. 냉장고용	8
		나. 항공기용	5
		다. 기타	8
		2. 고정식	8
9032	20	매노우스타트(manostat)	8
9032	8	그 밖의 기기	
9032	81	액압식이나 공기식	
		1. 액면 자동조정기와 조절기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2.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2) 기타	8

		3. 기타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9032	89	기타	
		1. 습도 자동조정기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2. 전압 자동조정기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3. 그 밖의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정기기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4. 기타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9032	90	부분품과 부속품	

		1. 항공기용	5
		2. 기타	8
9033	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시계 유리와 추(이들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휴대용 시계의 체인(경우에 따라 제 7113 호나 제 7117 호로 분류한다)

다. 제 15 부의 주 제 2 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 15 부
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 39 류),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
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물품(일반적으로 제 7115 호로 분류한다). 다만, 시계 스프
링은 시계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 9114 호).

라. 베어링볼(bearing ball)(경우에 따라 제 7326 호나 제 8482 호로 분류한다)

마. 제 8412 호의 물품[탈진기(escapement)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바. 볼베어링(ball bearing)(제 8482 호)

사. 제 85 류의 물품. 다만, 물품 상호간이나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나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의 부분품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 85 류).

2. 제 9101 호에는 케이스 전부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 7101 호부터 제 7104 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위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제 9102 호로 분류한다.

3. 이 류에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란 밸런스휠(balance-wheel)·헤어스프링(hairspring)·수정진동자나 그 밖의 시간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로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는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길이·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주 제 1 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

국내주:

1. 소호 제 9102.11 호·제 9102.21 호·제 9102.29 호·제 9111.90 호·제 9113.10 호에서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이란 이 류의 주 제 2 호 본문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 7101 호부터 제 7104 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등을 위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의 주 제 2 호 단서의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소호 제 9102.11 호·제 9102.21 호·제 9102.29 호 중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1	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	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9101	19	기타	8
9101	2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	21	자동권(自動捲)식	8
9101	29	기타	8
9101	9	기타	
9101	91	전기구동식	8
9101	99	기타	8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2	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	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1. 시각장애인용	8
		2.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3. 기타	8
9102	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9102	19	기타	8
9102	2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	21	자동권(自動捲)식	
		1. 시각장애인용	8
		2.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3. 기타	8
9102	29	기타	
		1. 시각장애인용	8
		2.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3. 기타	8
9102	9	기타	

9102	91	전기구동식	8
9102	99	기타	8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	10	전기구동식	8
9103	90	기타	8
9104	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8
9105		그 밖의 클록(clock)	
9105	1	자명종시계	
9105	11	전기구동식	8
9105	19	기타	8
9105	2	벽시계	
9105	21	전기구동식	8
9105	29	기타	8
9105	9	기타	
9105	91	전기구동식	8
9105	99	기타	8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	1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 recorder)	8
9106	90	기타	8
9107	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8	1	전기구동식	
9108	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9108	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9108	19	기타	5
9108	20	자동권(自動捲)식	5
9108	90	기타	5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	10	전기구동식	8

9109	90	기타	8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9110	1	휴대용 시계의 것	
9110	11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8
9110	12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8
9110	19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8
9110	90	기타	8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	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9111	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9111	80	그 밖의 케이스	8
9111	90	부분품	
		1.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2. 기타	8

9112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	20	케이스	8
9112	90	부분품	8
9113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	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9113	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9113	90	기타	8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	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
9114	30	문자판	8
9114	40	지판과 브리지(bridge)	8
9114	90	기타	8

제 92 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15 부의 주 제 2 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 15 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 39 류)

나. 제 85 류나 제 90 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나 그 밖의 부속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닛 속에 결합되거나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다. 완구용품(제 9503 호)

라. 악기 소제용 브러시(제 9603 호),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9620 호)

마. 수집품이나 골동품(제 9705 호·제 9706 호)

2. 제 9202 호·제 9206 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채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적정한 수량의 범위 안에서 악기와 함께 제시되며, 명백히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해당 악기와 같은 호로 분류한다. 다만, 악기와 함께 제시되는 제 9209 호의 카드·디스크·롤은 해당 악기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며, 그 악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	1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8
9201	20	그랜드 피아노	8
9201	90	기타	8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	10	활을 사용하는 것	8
9202	90	기타	8
9205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5	10	금관악기	8
9205	90	기타	8
9206	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8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	10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8
9207	90	기타	8
9208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	10	뮤지컬박스	8
9208	90	기타	8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	30	악기용 현	8
9209	9	기타	
9209	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9209	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9209	94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9209	99	기타	8

제 19 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3 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36 류의 물품(예: 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나. 제 15 부의 주 제 2 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 15 부
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 39 류)

다. 장갑차량(제 8710 호)

라.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나 그 밖의 광학기기(화기에 장착된 것이나 장착
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제 90 류)

마. 활·화살·펜싱용 칼·완구(제 95 류)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 9705 호·제 9706 호)

2. 제 9306 호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제 8526 호의 무선기기나 레이더기기를 포함하지 않
는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	10	포병 무기(예: 평사포·곡사포·박격포)	
		1. 자주식(自走式)	무세

		2. 기타	무세
9301	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무세
9301	90	기타	
		1. 완전자동 산탄총	무세
		2. 라이플(rifle)	
		가. 노리쇠작동	무세
		나. 반자동	무세
		다. 완전자동	무세
		라. 기타	무세
		3. 기관총	무세
		4. 기관단총	
		가.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무세
		나. 기타	무세
		5. 기타	무세
9302	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호·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1. 군용	

		가. 리볼버(revolver)	무세
		나. 피스톨(pistol)(단열 총열)	
		1) 반자동	무세
		2) 기타	무세
		다. 피스톨(pistol)(다열 총열)	무세
		라. 기타	무세
		2. 기타	
		가. 리볼버(revolver)	무세
		나. 피스톨(pistol)(단열 총열)	
		1) 반자동	무세
		2) 기타	무세
		다. 피스톨(pistol)(다열 총열)	무세
		라. 기타	무세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	10	총구장전 화기	8

9303	2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9303	3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8
9303	90	기타	8
9304	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	10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1. 제 9302 호의 것	
		가. 격발장치	무세
		나. 프레임과 총몸	무세
		다. 총열	무세
		라.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무세
		마. 탄알집과 그 부분품	무세
		바. 소음기와 그 부분품	무세
		사. 개머리판·손잡이·플레이트	무세
		아.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무세

		자. 기타	무세
		2. 기타	8
9305	20	산탄총과 라이플(rifle)의 것(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9305	9	기타	
9305	91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1. 산탄총·라이플(rifle)·기관총·기관단총의 것	
		가. 격발장치	무세
		나. 프레임과 총몸	무세
		다. 총열	무세
		라.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무세
		마. 탄알집과 그 부분품	무세
		바. 소음기와 그 부분품	무세
		사. 소염기와 그 부분품	무세
		아. 브리치(breech)·노리쇠와 노리쇠집	무세
		자. 기타	무세
		2. 기타	무세
9305	99	기타	8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9306	2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	21	탄약	무세
9306	29	기타	무세
9306	30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무세
9306	90	기타	무세
9307	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무세

제 20 부

잡품

제 94 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39 류·제 40 류·제 63 류의 매트리스·베개·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나. 제 7009 호의 거울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체경(體鏡)

다. 제 71 류의 물품

라. 제 15 부의 주 제 2 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 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 39 류)과 제 8303 호의 금고

마. 제 8418 호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와 재봉기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 8452 호)

바. 제 85 류의 램프·조명기구

사. 제 8518 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 8518 호), 제 8519 호·제 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 8522 호)나 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 8529 호)

아. 제 8714 호의 물품

자. 제 9018 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나 치과용 타구(제 9018 호)

차. 제 91 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램프나 조명기구(제 9503 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 9504 호),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전기식 가랜드(garland)는 제외한다](제 9505 호)

타.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9620 호)

2. 제 9401 호부터 제 9403 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

나. 의자와 침대

3. 가. 제 9401 호부터 제 9403 호까지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로 만들거나(거울을 포함한다), 제 68 류·제 69 류의 대리석·그 밖의 돌이나 각종 재료로 만든 시트(sheet)나 슬래브(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으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제 9404 호의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 9401 호·제 9402 호·제 9403 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4. 제 9406 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	10	항공기용 의자	8
9401	20	차량용 의자	8

9401	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9401	40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8
9401	5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	52	대나무로 만든 것	8
9401	53	등나무로 만든 것	8
9401	59	기타	8
9401	6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	6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8
9401	69	기타	8
9401	7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	7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8
9401	79	기타	8
9401	80	그 밖의 의자	8
9401	90	부분품	8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	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8
9402	90	기타	8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	1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8
9403	2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8
9403	30	사무실용 목제가구	8
9403	40	주방용 목제가구	8
9403	50	침실용 목제가구	8
9403	60	그 밖의 목제가구	8
9403	7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8
9403	8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	82	대나무로 만든 것	8
9403	83	등나무로 만든 것	8
9403	89	기타	8
9403	90	부분품	8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	1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8
9404	2	매트리스	
9404	21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9404	2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9404	30	침낭(sleeping bag)	8
9404	90	기타	8
9405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	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8
9405	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8
9405	3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8
9405	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8

9405	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9405	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9405	9	부분품	
9405	91	유리로 만든 것	8
9405	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9405	99	기타	8
9406		조립식 건축물	
9406	10	나무로 만든 것	8
9406	90	기타	8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양초(제 3406 호)

나. 제 3604 호의 불꽃이나 기타의 화공품

다. 제 39 류·제 4206 호·제 11 부의 낚시용 실·모노필라멘트·끈(cord)·거트(gut)나 이

유사한 물품(길이에 따라 절단하였으나 낚싯줄로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라. 제 4202 호·제 4303 호·제 4304 호의 운동용 백이나 그 밖의 용기

마. 제 61 류나 제 62 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가장복(fancy dress), 제 61 류나 제 62 류
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운동용 의류 및 특수복(팔꿈치·무릎 또는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 또는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예: 펜싱복 또는 축구 골키퍼의 저지)

바. 제 63 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깃발류나 보트용·세일보드용·랜드크라프트(land
craft)용 돛

사. 제 64 류의 운동용 신발류(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
는 제외한다)나 제 65 류의 운동용 헤드기어

아. 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 6602 호)과 이들의 부분품(제
6603 호)

자. 제 7018 호의 인형이나 그 밖의 완구용인 유리로 만든 안구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차. 제 15 부의 주 제 2 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 15
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 39 류)

카. 제 8306 호의 벨·징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액체펌프(제 8413 호),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청정기(제 8421 호), 전동기(제
8501 호), 변압기(제 8504 호), 디스크·테이프·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
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기타의 매체(기
록이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 8523 호), 무선 원격조절기기(제 8526 호), 무선 주
외선 원격제어장치(제 8543 호)

파. 제 17 부의 경기용 차량(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제 8712 호)

거. 카누·스키프(skiff)와 같은 운동용 크라프트(craft)(제 89 류)나 이들의 추진용구(노 제품은 제 44 류)

너. 운동용이나 옥외게임용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 9004 호)

더. 데코이 콜(decoy call)이나 휘슬(제 9208 호)

러. 제 93 류의 무기나 그 밖의 물품

머. 각종 전기식 가랜드(garland)(제 9405 호)

버.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9620 호)

서. 라켓용 줄, 텐트와 그 밖의 캠프용품, 장갑·벙어리장갑(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어. 식탁용품·주방용품·화장용품·카페트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의류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과 실용상의 기능을 가진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

3. 주 제 1 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4. 주 제 1 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 9503 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 3 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5. 제 9503 호는 그 디자인·외형·구성 재료로 볼 때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물품(예: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제외한다(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 9504.50 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

이 소호에서는 코인·은행권·은행 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다른 지급수단에 의하여 작동
되는 비디오게임 콘솔이나 비디오게임기는 제외한다(소호 제 9504.30 호).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503	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8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	20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8
9504	3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	8

		외한다)	
9504	40	오락용 카드	8
9504	5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 9504.30 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8
9504	90	기타	8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	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9505	90	기타	8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9506	1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	11	스키	8
9506	12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9506	19	기타	8
9506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	21	세일보드(sailboard)	8
9506	29	기타	8

9506	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	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9506	32	골프공	8
9506	39	기타	8
9506	40	탁구용구	8
9506	5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	51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8
9506	59	기타	8
9506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	61	론테니스(lawn-tennis) 공	8
9506	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8
9506	69	기타	8
9506	7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9506	9	기타	
9506	9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9506	99	기타	8

9507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 9208 호나 제 97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7	10	낚싯대	8
9507	2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9507	30	낚시 릴	8
9507	90	기타	8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	
9508	1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8
9508	90	기타	8

제 96 류

잡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장용 연필(제 33 류)

나. 제 66 류의 물품[예: 산류(傘類)나 지팡이의 부분품]

다. 모조 신변장식용품(제 7117 호)

라. 제 15 부의 주 제 2 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 15
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 39 류)

마. 제 82 류의 칼붙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조각용이나 성형용 재료로 만든 자루와 그
밖의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 9601 호나 제 9602 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자루나 부
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바. 제 90 류의 물품[예: 안경테(제 9003 호), 제도용 펜(제 9017 호), 내과용·외과용·수의
과용 특수 브러시(제 9018 호)]

사. 제 91 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아. 악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제 92 류)

자. 제 93 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차. 제 94 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 95 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 97 류)

2. 제 9602 호에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堅果)·근경(根莖)·껍질·너트(nut)와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 상아야자와 돔(dom)]

나. 호박·해포석(meerschaum)·응결시킨 호박과 응결시킨 해포석(meerschaum)·흑옥과
광물성 흑옥 대용품

3. 제 9603 호에서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이란 동물의 털·식물성 섬유나 그 밖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 비나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끝 부분에
리밍(trimming)과 같은 추가적인 단순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제 9601 호부터 제 9606 호까지나 제 9615 호는 제외한 이 류의 물품은 그 전부나 일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생한 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 96 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 9601 호
터 제 9606 호까지와 제 9615 호에는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재생한 것)·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	1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8
9601	90	기타	
		1. 패각(貝殼)으로 만든 것	
		가. 진주 양식용 핵	무세
		나. 기타	8
		2. 뿔로 된 것	8
		3. 기타	

		가. 진주 양식용 핵	무세
		나. 기타	8
9602	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8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	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9603	2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	21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8
9603	29	기타	8
9603	3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8
9603	40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	8

		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9603	5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9603	90	기타	8
9604	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8
9605	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8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	1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8
9606	2	단추	
9606	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9606	2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9606	29	기타	8
9606	3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8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9607	1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	11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9607	19	기타	8
9607	20	부분품	8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	10	볼펜	8
9608	2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8
9608	30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8
9608	4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8
9608	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9608	6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9608	9	기타	

9608	91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8
9608	99	기타	8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	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8
9609	2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9609	90	기타	8
9610	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9611	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8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	10	리본	8
9612	20	잉크 패드	8
9613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	1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9613	2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9613	80	그 밖의 라이터	8
9613	90	부분품	8
9614	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8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5	1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	11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9615	19	기타	8
9615	90	기타	8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	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8
9616	20	화장용 분첩과 패드	8

9617	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8
9618	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8
9619	00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1. 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 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8
		2.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8
		3.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3
		4.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 제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0
		5. 기타	8
9620	0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4907 호의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제 5907 호). 다만, 제 9706 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제 7101 호부터 제 7103 호까지)

2. 제 9702 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사용 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제 9703 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 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

4.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 1 호부터 주 제 3 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

   나. 제 9706 호는 이 류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collage)나 이와 유사한 장식판·판화·인쇄화·석판화 등의 틀은 이들 작품과 같이 분류한다(이들의 틀은 위의 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여야 한다). 이 주에서 언급된 작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지 않은 틀은 별도로 분류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701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	10	회화·데생·파스텔	
		1. 회화	무세
		2. 데생	무세
		3. 파스텔	무세
9701	90	기타	무세
9702	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1. 판화	무세
		2. 인쇄화	무세
		3. 석판화	무세
9703	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1. 조각	무세
		2. 조상(彫像)	무세

9704	00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1. 우표	무세
		2. 기타	무세
9705	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9706	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1. 도자기류	무세
		2. 악기류	무세
		3. 기타	무세

별표 2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별표 간이세율표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2. 1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품 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55
나.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라. 삭제 <2017. 3. 27.>	
2. 삭제 <2019. 2. 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25
다. 녹용	3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20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